MINI 연구총서 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이 쇄 2007년 12월 30일 2007년 12월 30일 행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발 행 인 평화기획연구실 편 집 인

발 행 처

제2-02361호 (97.4.23)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화 (대표) 900-4300 전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능품 (2275-5326)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2265-1141)

가 격 10,000위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 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cm. -- (연구총서;07-08)

권말부록수록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9-1 93340 : #10,000

349.9-KDC4 327.174-DDC21 CIP2007004047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Ι.	문제제기	· 1
	1. 연구목적	3
	2. 평화프로세스 개념	. 5
	3. 평화프로세스 목표 및 전략기조	16
	4. 평화프로세스 원칙	23
	5. 평화협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26
${\rm I\hspace{1em}I}$.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33
	1. 남한	35
	2. 북한	40
	3. 미국	49
	4. 중국	51
	5. 일본 ····	55
	6. 러시아	58
Ⅱ.	한반도 비핵화	67
	1. 실태	69
	2. 쟁점	71
	3. 해결저럌	74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	83
	1. 종전선언/평화협정	85
	2. 한·미동맹	112
v.	동북아 협력체제	123
	1. 안보협력	125
	2. 경제협력	132
VI.	남북관계 발전	137
	1. 정치적 관계개선	139
	2. 군사적 신뢰구축	144
	3. 경제공동체 형성	149
	4.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157
	5. 북한인권	163
	6. 인도적 지원	170
νπ	대내조치	181
۷Щ.	1. 남한 ······	183
	1. 남안 2. 북한······	
	4. 국인	188

목차

WII.	상황별 시나리오	199
	1. 전면개선	201
	2. 선 부분타결, 후 지지부진	203
	3. 급변사태 발생	204
IX.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	209
	1. 양자협상	211
	2. 다자협상	224
Χ.	맺음말	249
참고	1문헌	258
부톡	<u>-</u>	261
최근	¹ 박가자료 아내	303

표목차 / 그림목차

<표 I-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 ······ 14
<표 Ⅱ-1> 남한의 평화체제 제의 변화과정 40
<표 Ⅱ-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 입장 61
<표 Ⅱ-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62
<표 Ⅱ-4> 한반도 주변국가의 국가이익 64
<표 Ⅱ-5> 의제별 한반도 주변국 국가이익 현황 65
<표 IV-1> 북한의 평화협정안 변화과정 ····· 86
<표 IV-2> 남북한의 평화개념 ····· 89
<표 VII-1> 통일연구원 평화프로세스 로드맵 ······ 196
<표 IX-1> CBM/CSBM 체제의 발전 ····· 238
<그림 I-1>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 10
<그림 I-2> 미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 11
<그림 I-3>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 12
<그림 VI-1> 연도별 대북 무상지원 현황 ······ 172
<그림 IX-1> 안보협력의 구분 ······ 241

부록목차

<부록 1>	북핵일지	261
<부록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 2007.10.4) ····································	273
<부록 3>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10·3합의, 2007.10.3) ····································	278
<부록 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2007.8.5)	285
<부록 5>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2007.2.13) ····································	287
<부록 6>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2005.9.19) ·······	296

문제제기

1. 연구목적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다시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었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2007.9.27~30,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10.3)가합의되었다.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3개 핵시설(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불능화 완료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정확한 신고를 하고, 이에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 개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과정진전을 약속하였다. 일본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관계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10.2~4, 평양)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8개 본항과 2개 별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년 남북정상선언」)(10.4)에 합의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이 같은 국제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적 문제이자, 동시에 미·일·중·러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원의 수레바퀴와 국제적차원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한 기회가 우리에게

1

П

- -

VI

VIII

IX

X

는 세 번 있었다. 1994년 김영삼-김일성 불발의 정상회담에서는 10 월 북·미 제네바 합의가 타결됨으로써 국제적 수레바퀴는 잘 돌아 갔으나,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민족적 수레바퀴가 돌지 못함으로써 한반도문제는 풀리지 못했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는 6·15공동선언이 도출되어 민족적 수레바퀴는 잘 돌아갔으나, 2001년 1월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네오콘 중심의 부시행정부가 출 범하면서 국제적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지 못하자, 한반도문제는 다시 정체하기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7.5)와 핵 실험(10.9)으로 더욱 나빠졌다. 그런데 이번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 상회담에서는 「10·3합의」라 할 수 있는 북핵불능화를 위한 제2단계조 치 합의로 국제적 수레바퀴가 잘 돌기 시작했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 으로 인해 민족적 수레바퀴가 더욱 잘 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 도문제를 풀기 위한 호기를 맞이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한반 도 및 동북아 질서가 바뀌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이 준 충격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아태·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주도의 동· 북아질서 재편도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차분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자회담과 남북협력의 병행추진 기조아래,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에서 도출된 10·3합의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성사된 '2007 년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의 일정한 진전에 조응하여 다층적(국제·남북·국내)인 평화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 황이다. 국민화합을 토대로 남북협력과 6자회담의 선순환적 구조 위에 서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핵동결·봉인 단계를 넘어 핵불능화 단계로 들어선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 폐기로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이를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계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하여 국제적 차원과 남북한관계 차원을 함께 아우르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기(2007년 6월: 핵동결), 중기(2007년 말: 불능화), 장기(2~5년이상: 폐기와 폐기이후)적대책을 모두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통일방안 중 화해·협력단계의 완성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과 미국 양쪽의 관점에서 보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2. 평화프로세스 개념

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념

(1) 평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Peace Process)는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국가 간에 혹은 지역차원에서 평화를 형성·유지·발전시키려는 일련의 행위과정이다. 평화프로세스의 지향점이 레짐(Regime)의 형성이다. 다시 말해 평화프로세스의 산출물 또는 결과가 레짐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레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의존적 행위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구체적으로 "복수 국가들의 이해가 동시에 관계되는 문제, 개개의 국가가 타국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는 충분히 혹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행위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1

Ш

V

71

VII

TV/

X

정비"를 의미한다. 국제레짐은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s) 또는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s)로서 국가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협정으로 형성되는 권리와 규칙의 집합으로 형성된다. 레짐은 기대의 단순한 수렴을 제시하는 규범 및 관습과는 구별이 되며, 명시적인 행위조정을 통해 성립된다. 단지 일회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단순한 협정과는 구별이 되며, 수많은 거래들에 관계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의도적 지속성과 실제적 지속성은 구분이 되나, 의도된 지속성이 레짐의 적용유무에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국제정치에 있어 레짐연구의 대상은 "스스로 외에 어떠한 공통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에서 어떻게 국가들이 행위를 조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의 상호의존을 다루어 나가는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협력적인 결과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그리고 협력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을 적절한 제도적 조치의 창조를 통해 제거할 수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둔다.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① 평화의 회복, ② 평화의 유지는 물론, ③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공식·비공식적인 제도적 틀을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레짐으로 진전되는 전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① 한반도 평화의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 ② 한반도 평화의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③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프로세스를 포괄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포함되는 구체적 추진의제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 남북관계 발전, 대내 조치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체적·동태적 개념규정

(1)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일반적으로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행위라 할수 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난 50여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분단 62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우리로서는 평화체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만 삼을 수는 없다. 평화체제는 분단고착적 평화체제와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다시 외세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비록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을지라도 남북한이 중심에 서서 평화를 회복·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할 뿐아니라,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¹

V

VII

TV

V

¹⁻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유지하고, 통일을 지향·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전 과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반통일적일 수 있고, '평화협정 체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구성 문건: 비핵화협정·남북합의서·한반도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제는 4가지 수준에서 볼 수 있다. 먼저국제적 수준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북·일관계 개선과 정상화이다. 남북관계 수준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다. 남북한 국내수준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북한로동당 규약전문 및 형법과 같은 냉전적 제도의 개혁이다. 남북한 주민 개인수준에서는 냉전의식의 평화의식으로의 전환이다. 이것을 구성문건 관점에서 재규정해보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주도할 경우, 크게 3가지 문건, 평화협정·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선언에 의해 틀 지워 지는 것으로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미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면 되는 것이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준수되면 되는 것이다. 오직 평화협정만 새로 체결되면 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행을 강조하고 주변국의 이에 대한 보장과 관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새로 구축해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강화하면 된다. 기왕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과 고농축우라 늄핵개발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주변4국도 포함하여 새로운 한반도비핵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합의도 중요하나 기왕에 합의된 문건들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Ш

VI

VIII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4대 남북합의문건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을 종결지으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법적장치로서 한반도평화협정을 민족주도적 원칙과 주변국협력 원칙 위에서 체결하도록 한다.

(3) 특성: 과정성·이중성·과도기성

한반도 평화체제는 또한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과정(Process)적 특성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북한 및 주변4국이 함께 제반 긴장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일시적 문서합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성(Duality)의 특성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의 민족문제일 뿐 아니라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제문제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내부적 문제와 핵·미사일·인권·위조지폐·납치 등과 같은 북·미/북·일간 안보현안인 국제적문제들이 뒤섞여 있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한평화정착에의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도기(Transition)의 특성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뤄졌던 보편적인 평화체제는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남북한 민족통일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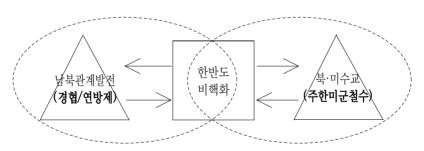
북한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남북연합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4)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가 쉽게 구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록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 동의하나,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그 추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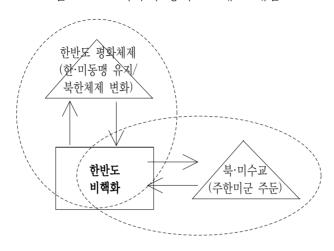
먼저 북한은 핵개발을 활용하여 체제안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화조건으로 대미관계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 책 포기, 북·미 평화협정체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남관계에서는 남북(민족)경협 확대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를 강조할 것이다. 이 같은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그림 I-1>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강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변환을 목표로 하면서 대북 대화·압박 병행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입장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그림 I-2> 미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그 외 중국은 미국과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역내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북핵문제의 최소비용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당사자 위상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 평화적해결원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북아 지역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아베정권에서 후쿠다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다소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문제와 납치문제의 선행적 해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한 당장의 통일보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구현 하는 점진적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정책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입 장은 다음 정권에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및 미국과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정을 보다 복합적으로 추진해 1

Ш

V

<u>___</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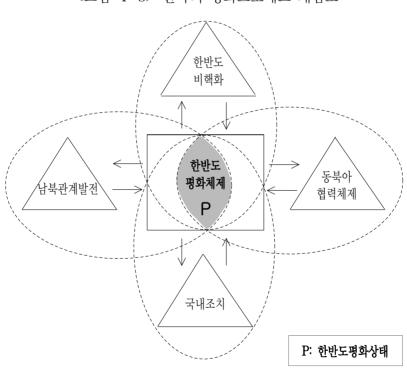
VII

VIII

ΙX

X

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발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 북핵폐기, (2) 남북관계 개선,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 동북아협력체제 구축 (5) 국내 통일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폐기 과정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직접적·단선적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5대 과정의 유기적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12 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5) 시기 : 협력적 공존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있어 어느 단계 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 한반도 정세는 갈등적 공존 → 경쟁적 공존 → 협력적 공존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갈등적 공존(Conflictive Coexistence)은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 하려는 의도 하에 이념,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전 차원에서 벌이는 상호 전면적 대결로 나타난다.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란 상호 불가침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표시를 하 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보장 에 의해 공존관계는 이뤄지나, 적극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는 제한적 교류·협 력이 이뤄지나 정치・군사・이념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협력적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은 독립적 정치체제를 갖춘 두 개의 국가가 서로의 번영을 위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존관계 를 의미한다. 체제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 에서의 전면적 교류·협력과 더불어 정치·군사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통일의 실현과정으로서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의 남북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과 당국자들의 완전한 신뢰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민족의 숙원인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도 평화적으로 탄생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협력적 공존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의 관계를 도표화하면 <표 I-1>과 같다.

1

Ш

V

7T

VII

VIII

1/\

 $\langle \text{H} \text{I} - \text{I} \rangle$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 2

평호	라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국제차원 평화유지기 (소극적 평화)		평화 ⁻ (적극적	구축기 † 평화)	평화공고기 (평화제도화)	평화완성기		
주요 의제				북핵문: 불능화 (종전선언)	제 해결 폐 기 (평화협정)		
남북관계차원		갈등적 공존	경쟁적 공존	협력적	공존	남북연합	통일한국
분	상위정치	이념 × 정치 × 군사 ×	이념 × 정치 × 군사 ×	이념 × 정치 △ 군사 △	이념 × 정치 ○ 군사 ○	이념 △ 정치 ◎ 군사 ◎	1 민족 1 국가
Oŧ	하위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	경제 ○ 사회 ○ 문화 ○	경제 ○ 사회 ○ 문화 ○	경제 ◎ 사회 ◎ 문화 ◎	경제 ◎ 사회 ◎ 문화 ◎	1 정부
규정문건		정전협정	남북기본 합의서	평화	 협정	민 족공동 체 헌장	통일헌법
체계적 특징		정전체제계	기본합의서 체제	평화	체제	사실상의 통일체제	통일체제

x: 단절, △: 제한적 협력, ○: 협력, ◎: 협력심화, ◎: 공동체 구축

 ²⁻ 손기응, "KPP 진전구도와 CSCE/OSCE의 시사점," 통일연구원 KPP 간담회 발표 문(2007.3.7); 손기응,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평화한국 세미나 발표문 (2007.10.10); 허문영, 『한반도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정 책방향』연구총서 99-26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9~11 참조.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상호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갈등적 공존"의 시기로 개념지울 수 있다.

한편 국가간 교류·협력관계 형성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념, 정치, 군사적 분야를 상위정치(high politics)분야로,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를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대결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공존"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리고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는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의 심화와 더불어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공존"의 단계로 급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화공존의 상황에서 남북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1민족 1국가 1체제"로 향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남북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나 2차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는 협력적 공존(평화공존)에서 다시 경쟁적 공존(적대적 협력)의 단계로 퇴보하고 말았다. 따라서현 단계의 남북관계는 경쟁적 공존의 심화단계로 규정지울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차원에서 현 단계의 국가적 과제는 남북관계를 협력

절목 남국전세사전에서 연 단계의 목가적 과제는 남국전계를 업목적 공존(평화공존), 나아가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전시키는 일이다.

1

V

77

VII

TV

V

<동북아 차워>

"한반도 평화"의 특성상 평화프로세스가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 남북관계차원에서의 경쟁적 공존 → 협력적 공존 → 남북연합이 다음과 같은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제1단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경쟁적 공존 → 협력적 공존 의 화해기)에서는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초래된 평화의 부재 상태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의 회복", 즉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프로세스를 말한다. 이와 병행하여 북핵문제의 동결 그리고 불능화 및 신고 단계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제2단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협력적 공존의 화해기 → 협력적 공존의 협력기)는 지역차원에서의 "평화의 회복"과 "평화의 유지·관리"를 이룩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프로세스를 말하고, 그과정에서 북핵이 검증단계를 거쳐 완전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제3단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협력적 공존의 협력기 → 남북연합)에서는 "평화의 회복"과 "평화의 유지·관리"가 "통일여건조성 및 통일 달성"과 맞물려 추진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시기동북아국가들이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인권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형성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3. 평화프로세스 목표 및 전략기조

남북한 관계, 남북한 국내적 차원,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나감으로써 제도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구조화해나가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안보협력, 국내 통 일기반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이다. 평화프로세스는 적극적 의미에서 평화를 구조화해가는 과정 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안 보협력, 국내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5대 목표가 상호 조율 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

9·19공동성명에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 핵문제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은 북한 핵문제라는 점에서 비핵화 실현이 중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동 선언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은 핵을폐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등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등 남북한과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나와 있는 원칙과 방안들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I

V

V

v 1 ЛТ

VIII

IX

X

한다. 그리고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듯이 북한은 모든 핵무기·핵물질 및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하게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핵의 이전으로 인해 장애가 조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해 핵을 포기하기로약속하였으므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조치에 복귀하여야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통해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대화·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하도록 한다. 이는 당군과 채찍을 병행하여 북한의 합 의이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북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을 연계하여 추진함을 의미한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전쟁상태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평화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적 차원의 일반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제도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한다. 구조적 요인의 제거를 통한 평화의 구조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내용들이 조화롭게 병행하여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전략적 기조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내포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되 국제적 협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하였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국제적인 지지와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국제적 여건의 조성으로서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는 적극적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넘어 양자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는 상응전략(Tit for Tat)과 무시전략을 구사하도록 한다. 상응전략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경과 온건 정책을 병행하여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남북대화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이다. 무시전략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북한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연관된 주장을 전개할 시 이를 철저히 무시함을 의미한다.

다.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

한반도에서 구조화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문

Ш

. \

VT

VII

IX

X

제이자 국제적 사안'으로서 평화체제를 구축해간다는 관점에서 접 근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은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구조적 제반 요인들의 근본적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냉전구조의 한 축이었던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지역에서도 궁극적으로 안 보협력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전 략으로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추진해나가되,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선순환적 관점에서 접근 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2·13합의에 따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외무장관회담' 제도화를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을 활용하여 역내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형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북아 협력체제 추진전략으로는 양자 및 다자접근을 함께 진행하는 병행전략을 구사하도록 한다. 북한이 미국·일본과 국교를 정상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국가간 영토문제와 이념대립에 기초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관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 협력체제는 장기간에 걸친 6개국협력과정을 기초로 하여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라. 남북관계 발전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여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구조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및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회 복을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남북간 보완 발전 을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평화와 번 영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신뢰가 본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사이에 평화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수용하여 변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개방에 따른체제위협을 우려하여 단기적으로 통제된 형태로 점진적 개방을 실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개방에 의해 소극적이라고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체제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되, 북한 핵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속도와 병행해서 점진적·단계적·탄력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 추진전략으로는 상징전략·유인전략·파급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진전략은 선도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 Ι

V

V

VII

TT 7

77

으로 발전시켜 타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냄을 의미한다. 유인전략은 비핵화 진전정도와 연계해서 단계별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종합적 유인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함을 뜻한다. 동시에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파급전략은 6대분야(정치·군사·경제·사회·인권·지원)별성과를 연관분야로 최대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략이다.

마. 국내 통일기반 구축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역사적 대세와 상호인정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은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야당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화해협력정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지라도 그 방향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좁은 시각에서 서로 갈등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통일미래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통일 미래상 구현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세력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 여전히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사고와 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 전히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 가야 한다. 국내통일기반 구축전략으로는 최소 합의전략을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최소합의전략은 제 사회세력들로 하여금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양 극단의 배제, 법치주의 존중 등 최소한의 규범준수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공청회를 통한 국론수렴, 제 세력간 합의도출과 공동성명발표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평화프로세스 원칙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균형, 병행, 창의, 신축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다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분야별 추진속도와 발전의 폭을 고려해서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운다.

가. 균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과정에서 달성해야 될 (1) 한반도 비핵화 실현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 (4) 남북관계 발전 (5) 국내 통일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균형원칙은 5대 목표의 달성을위한 추진이 모두 과정상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설정한 것이다. 북핵폐기 과정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직접적·단선적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5대 과정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균형추진의 기준은 북한변화의 속도와 폭으로

설정하며, 북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의 편입노력,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군비 감축노력, 경제적 개혁·개방 노력 등을 평가하여 단계 별로 균형있게 진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병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은 남북한 국내(정치·경제·사회), 남북관계(정치·경제·군사), 국제적 환경(경제·안보·문화) 등 3가지 차원의 상황변화를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첫째, 남한의 정치적 변화는 민주주의의 심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의 경제적 발전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에 부응하는 평화프로세스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제된 개방과 제한적 경제개혁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것이므로, 북한의 변화된상황에 응대할 수 있는 평화프로세스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남북관계는 경협 면에서는 지속적 발전이 있겠으나, 안보협력은 더디게 진전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 면에서의 발전이 안보 면에서의 협력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북아의 국제적 환경은 주변4국의 경제·안보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협력도 진전될 것이므로, 6자회담의 진전과 병행하는 평화 프로세스 추진 로드맵의 설정이 중요하다.

한국은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 국익신장을 우선시하는 원 칙하에 상기 3가지 차원에서의 상황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국 내적으로 국민적 합의도출에 기초한 보다 투명한 대북정책 및 대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북한사회의 질적 변화와 남북 군사대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국제환경 변화가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선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 3가지 차원의 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병행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된 로드맵은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상시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다. 창의

비록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서 다소 의의가 축소되었지만, 우리의 외교·통일·안보 일꾼들이 그동안 제시한 '북핵 해결의 평화적 원칙', '중대제안',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북핵 불능화와 균등분담원칙' 등은 대표적인 창의적 대안 제시라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이 같은 창의적 노력과 대안이계속 제시되어야 한다. 일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요당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4-2안, 미국의 3(1+2)안, 중국의 4국안을넘어서는 우리의 2+2+2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 전략적 신축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한 및 동북아 정책과 북한의 대외·대남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집행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과 북한의 전략 및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상 핵심적 행위자인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 2차적 영향력 행사 잠재국인 일본과러시아 등 6개국의 전략 및 정책변화는 상호 교환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자간 협력 및 협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정하

여 운용하되, 국제적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 용하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점진적 수행 원칙하에 추진하되, 북한의 급변사태 및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위기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돌발사태시 신속 대응하는 동시에, 기본 프로세스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5. 평화협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전쟁은 국가간 전쟁(interstate war), 식민지 전쟁과 같은 체제외적 전쟁(extra-systemic war), 내전(civil war)의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협상, 무조건 항복, 퇴각, 흡수, 일방의 멸망에 의해끝났다. 교전당사국들은 전쟁이 끝나면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국가간 전쟁의 경우 대부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평화조약은 평화정착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지위를 상실했으며, 2차세계대전 후 많은 전쟁은 평화조약 없이 끝나기도하였다. 예컨대, 1991년 걸프전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국전쟁과 같이 평화협정 없이 휴전조약에 의해 전쟁이 종료되기도 하였다. 많은 어떤 전쟁은 법적해결 없이 흐지부지 끝나면서 평화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평화체제 효용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은 몇가지 주요한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직접교전국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은 평화조약에 참여하는 문제를 포 함해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승전국은 패전국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평화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평화조약의 체결 후이의 준수는 어떻게 보장하는가? 궁극적으로 평화조약은 필요한가?

가.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종전 후 응징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에서의 본질적 문제였다. 서로마제국의 붕괴 후 중세 암흑기 동안 기독교의 반전 감정은 매우 미미하였다. 샤를르마뉴 대제는 비기독교 게르만 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으며, 교황은 이를 장려하였다. 당시 승자는 패자가 다시는 힘을 복구하지 못하게 완전히 파괴함으로써(살육, 부녀자 납치, 방화), 복수를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완전치 못한파괴는 적으로 하여금 늘 복수를 하도록 하였다. 중세 국제질서가 성립되어 가면서 정치인들은 점차 전후 승리를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전후 처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중세에는 '정의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 데, 이 개념에 따르면 모든 전쟁에는 정의로운 교전국과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이 있었다.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은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 권리가 부정되었으며, 평화조약에서 전쟁책임은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에게 돌아갔으며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믿었다. 왕과 신하가 전쟁을 할 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일종의 반역행위였으며 패전한 신하는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쟁이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하였다.

 $^{^3}$ - Philip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Negotiations and Debates 1815 ~ 1973* (London: Routledge, 2000), p. 3.

15세기 평화조약에 제3자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제3자는 조약당사국의 동맹국인 경우가 많았는 데, 조약당사국은 동맹국을 평화조약에 참가시킴으로써 평화조약이 동맹국에 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또한 제3국은 평화조약에 참가함으로써 양자간체결된 국제관계의 법적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전유럽국가들이 평화조약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나. 용서를 통한 평화: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르네상스 시기 이후 전쟁은 기독교 사회에서 죄악과 탐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근대 들어서 중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쟁 후 체결되는 평화조약이 과거 죄에 대한 고백의 장이 되었으며, 사면과 용서에 대한 조항이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6세기부터 보다 빈번해졌으며 17세기 들어서 거의 모든 조약에서 발견되었다. 평화조약의 목표는 원래 하나인 기독교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라 믿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국제관계의 틀이 형성된 것은 1643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성사시킨 평화회의였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은 주권, 국가간 형평성, 종교적 중립성, 세력균형과 같은 국가들의 근대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6세기 중반까지 중세유럽질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지 못하였으나, 웨스트팔리아조약을 계기로 근대유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을 전환점으로 평화조약에서는 중세시대와 다른 많은 변화가 발견된다. ⁴ 군주는 여전히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의 위임하에서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조

П

Ш

. V

VI

VII

IX

X

약을 맺었지만, 군주의 생명과 함께 조약의 효력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17, 18세기의 조약은 군주의 생명과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것으로 후계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평화조약은 누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망각 속에 모든 것을 묻어두고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 전쟁의참화에 대한 장황한 참회가 있었으며,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언약이 뒤따랐다. 5 평화조약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전쟁기간 자행된모든 행동에 대하여 사면을 선언하였다.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군대에 의해 자행된 공포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면이 없다면, 적대감이 계속되고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기독교사회의 보편적인 평화 (Christian and Universal Peace),' '항구적이고 진정한 우정 (perpetual, true, and sincere Amity),' '영 원한 망각, 사면 (perpetual Oblivion, Amnesty, or Pardon)' 과 같 은 키워드는 새로운 수식어로 이후의 평화조약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1659년의 프랑스-스페인간 Pyrenees 조약, 1668년 프랑스-스페인간 Aix la Chapelle 조약, 1713년 영국-스페인간 Utrecht 조약 등은 평화와 우정에 대한 미사여구로 가득차 있다.

⁴- Heinz Duchhardt, "Peace treaties from Westphailia to the Revolutionary Era,"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47~50.

⁵- Philip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p. 4~5.

다. 응징을 통한 평화: 나폴레옹 전쟁 이후

한편,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간의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취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와 종교가 다른 타국가와의 전쟁시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주의 체제의정착과 함께 전후 처리는 과거 절대군주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서가아니라 국민들의 견해가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19세기 들어서 이전 시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와 달리 용서가 아닌 응징에 의해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였다. 17~18세기에 일반적이었던 사면조항이 19세기 들어 유럽의 평화조약에서 사라졌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 이후 체결된 1815년 파리평화조약에서 일반사면이 사라지고 패전국인 프랑스에게 7억 프랑이 배상금으로 부과되었다. 프랑스의 Ney 원수가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다. 이는 훗날 뉘른베르크와 동경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1871년 보불전쟁의 처리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평화협정에서 무려 50억 프랑의 배상금이 패전국인 프랑스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점령군의 철수와 연계되어 보장되었다. 6 영토할양은 승전국의 권리로 간주되었으며, 프랑스는 알사스·로렌지방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보다 명백한 근거에 의한 배상은 1919년의 베르사이유 평 화조약에서 처음으로 요구되었다.⁷ 베르사이유조약 231조는 독일

^{6- 1970}년 7월 19일 시작된 보불전쟁은 1871년 1월 28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2월 28일 예비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브러셀에서 평화조약을 위한 협정이 시작되었으나 지지부진하자 비스마르크는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소집하였고 4일만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⁷⁻ 응징에 의한 평화가 1815년이 아니라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리스퍼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중세 이후 주권국가

이 모든 손실과 피해의 근원이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전쟁배상금 부과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라.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현실정치

나폴레옹전쟁 이후 계속된 응징의 전통은 2차세계대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으나, 냉전이라는 현실정치의 벽은 원칙 없는 전후처 리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은 타협에 의한 종전을 거부하고 응징을 위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1940년 프랑스 점령 후 히틀러가 휴전을 제의하였지만, 영국의 처칠 수상은 독일이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루즈벨트 미대통령 역시 1943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단언하였다.

2차세계대전 후 전쟁법정은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 범죄'를 재판 에 붙여, 전범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법정에서 전쟁 중에 일어난 잔혹행위에 대하여 독일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책 임을 물었다. 전쟁에 대하여 집단적 책임이 아닌 개인적 책임을 물 은 것은 뉘른베르크 법정이 역사상 처음이었다.

뉘른베르크와 동경 전범재판의 정신은 이후 냉전이라는 현실정치에 눌려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뉘른베르크 전범처리는 많은 유산을

Ш

V

V

VII

V III

177

간 최초의 응징의 평화(punitive peace)로서, 주권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Randall Leasffer, "Introduction,"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p. 4.

남겨놓았다. 침략전쟁은 범죄라는 뉘른베르크의 원칙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이 채택되고, 인권재판소(Court of Human Rights, Strasbourg)가 설치되었다. 뉘른베르크의 정신은 냉전이 끝난 후국제사회가 전범처리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8 전쟁범죄에 대하여 지리적 사법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제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국민에 대한 범죄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로 간주되었다.

1993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잔혹행위의 재판을 위해 임시 국제형 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가 설립되고, 1994년 르완다에서 집단학살(genocide)과 반인 도 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해 임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 었다. 2003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어, 국제인권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 하여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8- Benjamin Ferencz, "Nuremberg: A Prosecutor's Perspective,"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 35.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1. 남한 : 남북한 평화협정

가. 과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에 의해 최초 제의된 방안은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간 상 호불가침협정안, 이다. 박대통령은 무력침범 절대불가 약속, 상호 내정간섭 중단, 현행 휴전협정 효력존속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 다. 남한의 평화체제 제의가 1970년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남한의 대북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의 구사력과 경제력이 북한보다 열세였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통일정책도 수세적이고 대외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 와 경제성장을 토대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으나, 군사적 열세가 현저했으므로 평화정착을 목표의 상한으로 하는 소극적 태도를 견 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통해 북한 공산정권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통일정책 기조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평화공존의 정신을 천명한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 책 선언」⁹과 함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8.15)¹⁰으로 발전 되어 종전의 '선 건설·후 통일'에서 '선 평화·후 통일'로 정책을 전화 케 하고, 평화통일을 공식 통일방식으로 정착케 하였다.

⁹⁻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 경주, ②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 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③ 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 계속, ④ 북한의 국제기 구 참여 불반대, 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⑥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 책의 추진

¹⁰⁻ 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②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 남북대화와 다각적 교류·협력 진행, ③ 공정 선거관리와 감시하 토착인구비례 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통일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6년 5월 13일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을 통해 '남북한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한 정전협정 대체방안 모색용의'가 있음을 발표하였다.¹¹ 그리고 1979년 7월 1일 서울서 개최된 박정희·지미 카터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 및미국이 참여하는 3당국회담'으로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이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거부하고, 북·미간 양자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미국과 유엔 등국제사회에 제기한 데 대한 반박 논리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상대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1988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1990년 8월 15일 광복절 45주년 경축사를 통해「남북평화협정」을 제의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기시작하였고, 군사적 열세도 만회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기 시작하자 1980년대 말에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인정책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88년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9.11)에 반영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추진하여 1990년에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이뤄내고, 북한을 남북대화 석상으로 이끌어내 「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로 규정하고,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을

[&]quot;- 허문영 외, 『한반도평화체제: 자료와 해제』(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63.

초해서 4자회담을 추진하였다. 12 그리고 주변국가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 증가와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불안정성 증대 상황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협력'원칙을 강조(1996.8.15 경축사)하여 민족주체적 통일준비와 평화통일의 기조를 강화하였다. 13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변화하고 있는 무장한 형제' 14로 간주하고, 1999년 5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5대 추진과제(남북간 화해협력,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북한의대외개방 환경조성, 비핵화 및 재래식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와 5대 추진원칙(당면현안과 근본문제 해결 병행,일관성, 포괄적 접근, 단계적 접근, 한·미·일 공조와 대중·러 협력)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런 대북·통일정책 기조의 연

제시하였다. 3원칙은 ① 남북당사자 해결, ② 기존남북합의서 존중, ③ 관련국 협조와 뒷받침으로 구성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에 기

장선상에서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¹²⁻ 기본목표: 남북대화재개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유도, 남북한 주도하 휴전체 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미국·중국에 의한 실효성있는 보장장치 강구; 기본원칙: ① 장기·종합적 추진방안, ② 남북한협상 우선원칙, ③ 남북간 기존합의 존 중원칙, ④ 평화체제 수립시까지 현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 ⑤ 관련국 협조 중시.

¹³⁻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방향 (① 무력포기, ② 상호존중, ③ 신뢰구축, ④ 상호협력)과 남북협력에 관한 4가 지 방향(① 식량난 해결협력, ② 남북대화, ③ 국제사회 진출지원, ④ 북한의 자세변화)을 제시하였다.

¹⁴⁻ 임동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1998.9.10). 북한은 ① 실패한 체제, ② 반체 제세력 부재와 주변국 현상유지 정책으로 조기붕괴가능성 높지 않음, ③ 자발적 개혁·개방이 아닌 상황에 의해 강요된 조정적 변화 시작됨,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노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 현황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대통령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제시하였다. 15 당장의 통일보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구현하는 평화·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점진적 통일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군사신뢰가 구축되면서 평화제도화가 이뤄지는 장기과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선 평화증진(화해협력·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후 평화협정 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시기를 총괄적으로 볼 때, 남한은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과리하면서 경제·사회·무화 등 가 분야 교론·현려은 통해 사항적대

지난 시기를 공괄적으로 폴 때, 남안은 문단상태를 평와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적대 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가공적 국가체제의 조립보다 '민족공 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전망

한편 노무현 정부의 핵해결 우선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핵문 제는 남한이 주도해서 해결할 민족적 비중이 큰 문제가 아니라, 국 제사회와 함께 풀어야할 국제적 비중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15- 1}단계: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단계: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참여정부의 평화번 영정책』(통일부, 2003.3);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국가안전보장회의, 2004.3.1.).

그러므로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은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과잉 의욕적 정책기조였다.¹⁶ 또한 북핵문제 해결(단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중·장기)의 단계적 연계전략도 자승자박이 되었다.

2·13합의 이후 북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자 노무현정부는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노무현정부는 평화협정과 분리된 개념으로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공론화하면서, 불능화 이후 조기 종전선언을 주장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조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향후 한국정부는 의제를 구분하는 지혜와 더불어 핵과 남북관계 개선·평화체제 구축 연계전략에서 병행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층위의 병행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평화번영체제 구성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영역의 병행 차원에서 남북 안보·경제·문화 공동체 구성노력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¹⁶-『통일백서』(통일부, 2007), pp. 19∼27.

<표 Ⅱ-1> 남한의 평화체제 제의 변화과정

구분 시기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당사자	남북 불가침 협정(746) 3당국 (남북·미) 회담(79.7)		남북평화협정 ('90.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 ('95.8) 남북당사자 해결	한반도냉전 구조 해체방안 ('99.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 (*03.2)
조건 또는 기타 사항	해결원칙에 입각	정전협정유지하에 군비경쟁 및 대치 상태 해소 ('82.1)		남북합의서 존중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	① 남북화해협력, ②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③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④ 비핵화 및 재래식 군비통제,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의 전환	

2. 북한 : 북·미 평화협정

가. 과거

(1) 남북 평화협정

북한의 평화협정안은 정전협정(1953.7.27)체결 직후에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의 남일 북한외상 연설(1954.6.15)에서 시작되었다. 북한 은 "외국군대의 철수와 남북군대의 축소"를 조건으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협정을 남북 정부가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55년 8·15 경축사에서 김일성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해 '외국군대 철수와 남북군대 축소'와 더불어 '조선의 평화적 방도를 강구하기 위한 극동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한국 전쟁이후 전후복구가 최우선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북한정권으로서는 내부체제 강화를 위해 방어적·선전적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군(미군)철수와 남북 군대 축소는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제의에서 각각 대미관계와 대남관계에서의 핵심목표로 꾸준하게 제시되었다.

19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은 내 각수상 김일성 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미국군대 철수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무력 감축(각각10만명 이하)'이 '연방제 통일'에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남한에서 4·19학생혁명(1960)과 5·16군사혁명(1961)이 발생하자,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4차 전당대회(1961.9)를 통해 3단계 통일방식¹⁷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족해방 투쟁'과 '반동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남북한의 '인민정권'이 '합작(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남북평화협정 체결은 이 같은 남한의 정치적 상황변화를 공산화통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통일 전선전술의 일확으로 제안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quot;- 북한은 제1단계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1974년 3월 이후부터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의 순서/1988년 이후부터는 신뢰구축 → 북남무력감축 → 주한미군 철수 → 평화협정 체결)를, 제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60년대 '통혁당'같은 전위당 구축과 통일전선체 형성 → 남조선혁명 → '인민정권'출범의 순서를, 제3단계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치협상회의」개최를 통한 연방제 통일의 순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해 왔다. 허문영,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31~172.

(2) 북·미 평화협정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북한은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미 평화협정'¹⁸ 체결을 제안하였다. 당시 닉슨 독트린과 파리협상으로 주월미군 완전철수 (1973.3.19)와 베트남 공산화통일(1975.4.30)이 가시화되자, 이에 고무된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남한으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키려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찬반 동수인 48:48의 지지를 얻었고, 19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51:38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북한은 대미평화협정체결 → 유엔사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 남한정권 타도 → 한반도공산화 통일의 수수을 적극 모색하였다.

(3)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 불가침선언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북한은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의 병행체결'의 '3자회담'¹⁹을 제안하였다.

¹⁸⁻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은 ① 상호불가침서약 및 직접 무력충돌 위험제거,②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③ 한국주둔 외국군으로부터 유엔군 모자 제거 및 완전철수,④ 외국군에 의한 조선의 군사기지화 및 작전기지화 방지 등이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제3차 회의(1974.3.25)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허문영 외,『한반도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pp. 252~254.

^{19- 3}자회담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중앙인민 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 허문영 외, 위의 책, pp. 239~240.

이는 당시 3개월 전에 한국대통령의 암살을 기도했던 버마 랭구운 테러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한·미가 제의했던 3당국회담(1979.9.1)과 남북불가침협정(1974.6.18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응하는 모습으로 국제적 비난을 모면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파리협상을 준용하여 주당사자인 미국과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평화협정을, 종속적 당사자인 한국과는 남북 군비축소를이루기 위한 불가침선언을 다룬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통해 북한은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²⁰ 그주요 내용은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91년말까지 3단계 철수완료), 남북한 불가침선언과 남북간 무력축감('91말까지 3단계 군축, '92년이후 병력은 각각 10만명 유지)으로 제시되었다. 당시북한은 1985년에 등장한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동구공산국가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붕괴(1989.11.9), 몰타(Molta)냉전종식 선언(1989.12.25), 동서독 통일(1990.10.3) 등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국제정세와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북한은 발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조정 차원만으로는 대세를 거역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총리급회담에응할 수밖에 없었고, 1991년 9월 30일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 및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엔과 북한간의 비정상관계 청산 차원에서 정전체

²⁰-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평양: 평양출판사, 2001), p. 174.; 심병철, 『조국 통일문제 100문 100답』(평양: 평양출판사, 2003), pp. 95~97.

제의 평화체제 전환 및 유엔사 해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4)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 북·미 잠정협정

한편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UNC)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이 임명된 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가 전혀 이 뤄지지 않자,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체코대표부 철수(93.4),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북한대표단 철수(94.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94.5), 군정위 중국대표단 철수 (94.12), 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철수(95.2), 판문점 중감위 건물 폐쇄 조치 발표(95.5) 등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켜 나갔다. 이 와 중인 1994년 4월 28일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정전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 미협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년 뒤 1996년 2월 22일 외교부대변 인 담화를 통해 '북·미 잠정협정'²¹체결을 제의하였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임무 포기'를 선언하였다. 북한이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북·미 잠 정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및 남북 군사공동 위원회 발족과 병행하여 북·미 잠정협정 체결 및 북·미 군사공동기 구 구성을 이뤄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탈냉 전기 대미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돌파전략에 기초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²¹- 잠정협정의 주요내용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 충돌과 돌발사 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정위를 대신하는 조미 공동군사기구 구성 등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당사자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있는 데,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남한으로부 터의 자유화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결속에 주력하려는 의도도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황 : 북·미 불가침조약과 평화체제 수립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은 3가지 제안을 보여주었다.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특사 방미시 합의·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통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4자회담 유용성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다. 22 그리고 2005년 7월 2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한(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주장하였다. 23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인 4자회담에도 동의한 것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북한이 대북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제의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기다리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미국 켈리 특사가 방북(10.3~5)하여 고농축우라늄(HEU)핵무기개발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강경 정책을 전달하자, 위협감을 느낀 가운데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

²²⁻ 조선외무성대변인 담화,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조선중앙방송』, 2002년 10월 25일.

²³- 조선외무성대변인 담화, "미국이 정전유지정책을 평화체제수립에로 전환할 것," 『조선중앙통신』, 2005년 7월 22일; 허문영 외, 『한반도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pp. 183~184.

다. 당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 채택(7.1)으로 대내 경제개혁과 특구 확대지정(신의주 9.12, 금강산 10.23, 개성 11.13)으로 대외 경제개방 그리고 대러 정상회담(8.20~24), 대일 정상회담(9.17),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0.19~22) 등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제안인 2005년 7월 2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한 북한의 대미 평화체제수립 제의는 좀 더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실현에로 이어지게될 것이다"고 수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로정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먼저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그다음 북·미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이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 전망

지난 시기 북한은 공산화통일과 체제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나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²⁴ 다만 그형식과 내용상에는 변화가 있었다.

첫째,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은 체결방식과 관련해서 양자(남북/

 $^{^{24}}$ -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평양: 평양출판사, 2006), pp. $4{\sim}5$.

⁴⁶ 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북·미)· 3자(북·미·남:2+1)· 4자(북·미·중·남:4-2)· 6자(북·미·중·남· 리·일: 6-4)회담 등 국내·외 정세에 따라 융통성있게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74년 3월 이후부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미간 직접해결」차원에서 북·미 양자협정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둘째, 내용면에서는 초기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대남전략에서 점차 '북·미간 한반도 문제 직접해결과 관계정상화'에 중점을 둔대미전략의 차원으로 바뀌었다. 60년대에는 대남 적화통일 전략의연장선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은 주장하였다. 70년대 초에는 데탕뜨, 베트남 평화협정 등으로 북한의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진영 붕괴, 경제난 심화 등에 따라 생존전략 차원에서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 체제보장 및 실리확보를 도모하였다. 최근 북한은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거쳐야 할 노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문제²⁵는 북한의 대미정책 중 전 시기를 거쳐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조국통일의 근본적 장애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²⁶ 예컨대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 대상으로,

^{25- &}quot;미군의 남조선 강점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재난의 화근이며 자주적 지향과 통일을 가로막는 암초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930호, 『조선중앙방송』, 2007년 5월 5일.

²⁶⁻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7~48.

한국전쟁 이후에는 6개월이내 철수 대상으로, 70년대에는 평화협정체결 이후 철수 대상으로, 80년대 후반(1987)에는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단계적·점진적 철수의 대상으로, 90년대 초반(1990)에는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의 단계적 철수 대상으로, 90년대초·중반(1992)이후부터는 통일 전까지 철수의사 표명·통일이후단계적 철수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은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경시, 주문을 용인할수 있음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러나 공식 담론에서는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가 조국통일의 선차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주한미군을 북한체제에 위협을 주는 제1차적 군사· 안보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70년대 중반에 '조·미 평화협정」 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80년대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과 '다국적 군축협상」,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 였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 등을, 2002 년에는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안보상의 두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분단 이후 북한은 남한과 남한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와 '반동·괴뢰정권'으로 각각 규정해 왔음과 '민족해방투쟁'과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기초한 '합작(평화)통일'이라는 기본틀 아래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객관적 편성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주관적 인식과 의지에 따라 그 동안 다양한 '평화통일안' 또는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음도 알 수 있다. 향후 북한은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 유엔사 해체 및 한·미동맹관계 변화 →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변화 →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안보대화'라는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여기에서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군축 문제 등을 협상하면서 한·미 군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미국

가. 현황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 및 2000년 10월 미·북 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완성과 미·북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병행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미국은 비(반)확산 및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으며 양자 협상 불가, '선 북핵 폐기 후 관계 개선' 입장을 유지했으나, 2기 행정부에 들어서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서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한 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 문제가 예상한 것처럼 잘 진전되지 않고 이란문제 또한 발목을 잡 음에 따라서 2006년 하반기부터 대북정책을 전환하였고,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하였다.

2005년 7월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평화체제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수 있다

1

Ш

V

VI

VII

TY

고 언급하였고, 2006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후 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문제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06년 9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합의하였다. 2006년 11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달기는 했으나북한과 한국전 '종전선언'(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베를린 양자회동을 진행하여 BDA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2007년 1월 베이징 북·미 양자회동을 거쳐 2·13합의에서 9·19공동성명 속에 포함된 '관련 당사국간 별도 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등 5개의 W/G 가동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구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9월 7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전을 종식시킬 수있다고 말하였다.

나. 전망

부시 행정부는 임기 종료 이전 북핵 폐기문제를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시 1기 행정부 시기 시도했던 강압 우선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우선 정책의실패를 인식, 비핵화,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 여러 현안을동시 병행적으로 다루는 외교적 방식을 선택·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되, 페리보고서의 대북 포괄적접근 및 부시 행정부의 대북 포괄적인 대북접근에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핵문제, 평화체제 구축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정부가 조기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2006년 하노이와 2007년 시드니에서 한 부시대통령의 평화협정 관련 발언을 명백히 하였다.

4. 중국

가. 과거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한반도비핵화 노선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미·북 협상을 통한 해결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에 대해 직접대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수교 협상이 진행되기를 촉구하여 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방식에 근거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

Ι

П

V

V

VII

ΙΧ

X

경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만일에 있을 북한의 대남 선제 도발적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자국이 중·북 우호조약에 의거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밝혀 왔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냉전의 산물이기는 하나 이를 대체하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여 왔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에 대한 협의에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4자회담에 참여한 바 있었다. 즉 중국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였으며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의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 았다.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 로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촉구해 왔다.

나. 현황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도 중국은 미국과 같이 북한의 핵보유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 및 외교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고 2·13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6자회담 내에서도 미·북 직접대화 및 협상과 미·북 정상화 협의가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압력은 구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정전협정 유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참여하여야 함을 표방하여 한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만이 참여하여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부시 미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중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는 상관없이 미·북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

다. 전망

중국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약속이행을 위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할 것이며 2·13합의 내용을 충실히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합의 달성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합의 내용을 제 시간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관련국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미·북 수교협상 진행 과정을 주

Ι

П

V

V

VII

VIII

시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북한의 경수로 지원 요구를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밝히고 있는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여야만 북한에 경수로 건설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달라 중국은 미국의입장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2·13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 및 군사협력을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북 간에 이견이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대남 선제 무력도발에 대한한·미 양국의 개입시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표명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 혹은 남북한만의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한·미 양국이 중국의 참여를 촉구할경우 북한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선언 참여를 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폐지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체결하는 평화협정은 실제적으로는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이 참여할 경우 자국도 참여하여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북한 군축과 군비통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을 강조하나 구체적인 자신의 안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북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3자 또는 4자'로 규정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5. 일본

가. 과거

일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토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명확히 밝힌 바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 등을 통해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냉전 이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안보관도 상당하게 변화해왔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과 더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일본의 안보 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건너 발사한 것, 2006년 북한의 핵 실험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촉진하고 보다 적극적 군사태세의 발전 경향을 크게 촉진했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응과 적극적 안보 역할 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변환경에 큰 영향 변수로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966년 안보가이드라인 개정 이래, 미·일동맹을 동북아 지역 동맹으로 바꾸어 오고 있고, 일본이 한반도를포함한 '주변 유사'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오고 있다.

2001년 부시 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2002년 9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과 회 담하는 등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후 납치문 제가 국내 정치 문제화하고, 2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점차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편승하는 '대화와 압박' 전략으로 선회 하였다.

나. 현황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일관계는 2006년 7월과 10월에 있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무기 실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은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 결의 1718의 통과를 주도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2006년 12월 베를린 회동, 2007년 2월 13일의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의 가동중지라는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의 선해결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2007년 7월에 개최되었던 6차 6자회담 이후, 북·일관계도 경색 완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극적인 돌파는 없었다. 9월 몽 고 울란바토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역시 9월 일본적십자사는 북한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10월에는 강경 대북 노선을 주도하던 아베 수상이 사임하고 후쿠다 신임 수상이 취임하였다. 그는 10월 3일의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문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평가와 함께 승인했다. 후쿠다 총리는 '대화와 압력'의 기조하에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 노선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은 과거와 마 찬가지로 미래에도 그에 대해 직접적 견해를 피력하지는 않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당면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납치문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 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특히 일본의 관심은 일본 열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 사일 개발 문제 처리의 향방,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위상 변화 및 감축여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일본 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 만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며,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유 지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미 국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미국을 통해 자국의 관심 사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투영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 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북한의 일본에 대한 위협 능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일본 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1

Ш

V

V

VII

VIII

X

ζ.

6. 러시아

가. 과거

1990년대에 러시아는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러시아는 평화협정이 남북한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1996년 4월 16일 한·미 양국의 4자회담(남북·미·중) 제의 시, 옐 친 대통령 하의 러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90년대 말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4자회담 발표 시,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과전후시대에 한반도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왔었고 현재에도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강력한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배제된 4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특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논의에 러시아를 배제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되자 "러시아는 4자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회담의 참여국들이 남북한에 수용 가능한 실질적인 결과들을 이루어 낸다면 모스크바는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부터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한반도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 비핵화와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한 반도문제에 중요한 이해 당사국이라는 점, 셋째, 미국과의 대화만 을 고집하는 북한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1999년 12월 31일 집권한 푸틴 대통령 지도하의 러시아 정부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자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보다 남북대화의 지속을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남북한 평화공존의 첫 단계를 열고 있고 통일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통일은 단지 먼 미래에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의 고립정책이나 북한정권 붕괴는 필연적으로 평양의 또 다른 군사도발, 주민들의 새로운 고통, 한국 자신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 간 평화조약이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기는 해도, 핵심문제는 정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련 당사국인 5개국이 함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합의해내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함 수 있는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현황

9·19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5개국과 함께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이다"(4항)라는 데에 합의하였고, 이는 2007년 2·13 북핵 합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동북아 안보상황 개선에 이바지할 것인 바, 이는 국경지대에 우호적인

Ш

V

. 71

VII

V 1111

77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도 상응한다. 셋째,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남북한·러 3각 경협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활성화에 만족하고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 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과 러 시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 전망

북핵문제가 진전되어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문제가 제기될 것인 바,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접경국인 자국도 포함된 다자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할 것이다. 둘째, 일부에서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중·북한 3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경우,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과 한반도문제의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평화협정 논의 및 체결이 무의미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러시아는 평화협정 내용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의 비무장화, 일본의대북 보상 문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한과 미·중 4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일·러가 보장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러시아는 처음에는 크게 반발할 것 이나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표 Ⅱ-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 입장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관심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높음	보통
당사자	남한, 북한	북한, 미국	남북, 북한, 미국, 중국	미국·한국 입장 존중, 일본의 역할 모색	러시아 포함된 다자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조 건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비핵화	일본납치 문제 해결,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절 차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선 북미수교 후 조선반도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u>Ι</u>

П

V

VT

VII

VIII

IX

X

<표 Ⅱ-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한국		중국
과거	교류·협력을 통한 적대감과 불신 해소, 민족공동체형성에 주력하는 평화프로세스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1995.8) (남북당사자 해결, 기존 남북합의서 존중, 관련국협조와 뒷받침)	남북평화협정 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평화목표 핵심요소로 인식 1970년대 전반기까지 남북간 평화협정체결 의도를 밝혀왔음 1970년대 중반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요구 시작,현재 지속	 미·북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대량살상무기 감축에 대해 언급 회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언급 자제 정전협정 유효 지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반대
현황	당장의 통일보다 평화공 존과 공동번영을 구현하는 평화·점진적 통일 추구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 (2003.2) (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 토대마련, 평화체제 구축조치 추진, 평화체제 제도화:평화협정 체결)	 상황에 따른 북·미간 평화 협정체결 또는 북·미 불가 침협정체결 요구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는 입장 고수 	북한의 핵보유 지위 불인정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정전협정 대체시 중국의 참여 표방
전망	 핵·남북관계·평화체제 연 계전략에서 병행전략으로 전환 필요 층위의 병행 영역의 병행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및 한·미동맹관계 변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주한미군 철수를 그들의 '평화프로세스'로 인식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북핵관련 UN 안보리 결의 지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언급 자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선호 와 중국과 미국의 지지

일본	러시아	미국
• 핵심현안인 핵·미사일 문 제, 납치문제로 갈등 노출 및 대북 압박	● 4자회담에 반대 입장 - 후에 기정사실로 수용	● 북핵 해결 우선 ● 4자회담 통한 평화체제 전환 추진
•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 한의 대일 극심한 감정적 불신 및 갈등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동북아정책 기조 에 상응 TSR-TKR 연결, 남북한 러 3각경협 등 경제실익 도 모 가능성 	●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 북핵문제, 북·미관계, 평화 체제 전환 등 핵·안보·정치· 경제관계 동시 병행 추진
• 북·미관계의 진전 추이를 고려하면서, 북·일 실무그 룹과 병행하여 전략적 교섭 전개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포럼 에서 논의 희망 그러나 4자회담 수용 가능성 	● 북핵문제, 북·미관계, 평화 체제 전환 등 핵·안보·정치· 경제관계 동시 병행 추진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과정에 따른 동북아 다자안 보체제 추진

<표 Ⅱ-4> 한반도 주변국가의 국가이익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존망의 이익	●북의 남침	●남의 북침	●중·미전쟁	●북한의 일 본열도에 대한 미사 일 공격	• 미국과 군 사적 대결	본토방어적대적 패 권국가 등 장 방지
핵심적 이익	남북평화 통일민주체제 유지독도수호	체제유지남조선공산화	고도경제 성장대만통합	● 아시아·태 평양지역 에서의 강 대국 지위 확보	● 경제회복· 발전	● 국제테러 방지 ● 대량살상 무기 생산 국가 등장 방지 ● 한반도 비핵화 ● 동맹유지 ● 항해 확보
중요한 이익	 수출증대 복지국가 형성 균형외교 동북아공 동체 한반도 비핵화 	 동맹관계 복원 식량확보 핵무장 추진 평화조약 체결 	● 중·북관계 발전 ● 동북 아평 화유지 ● 한반도 비핵화	● 미·일동맹 의 강화 ● 한반도 비핵화	미 견제 • 에너지외교 활용 • 한반도 비	권위주의 국가의 다 원주의로 체제 전환 자유무역 유지 • 동북아역
지엽적 이익	(다수의 공통적 사안 및 각 국가들의 선언한 개별적 사안이 있음)					

<표 Ⅱ-5> 의제별 한반도 주변국 국가이익 현황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비핵화	•	•	•	•	•	•
미사일 문제	•	0	•	•	•	•
탈북자 문제	•	•	•	•	•	•
한반도 평화체제	•	•	•	•	•	•
남북관계 발전	•	•	•	•	•	•
한반도 통일	•	•	0	•	•	•
동북아 협력체제	•	•	•	•	•	•

높음 **● ● ① ○ ○** 낮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연동된다는 것과 남한의 비핵화는 이미 달성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보유한핵무기의 폐기를 핵심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그 과정에서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추진목표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① 북한의 핵보유 불용
- ② 북핵 폐기 과정과 남북대화의 병행
- ③ 한국의 확고한 비핵정책 견지
- ④ 핵무기 없는 평화통일 지향

1. 실태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으로 가파르게 상향곡선을 그리던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일단 주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13합의의 내용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단계 조치: 3월 13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5개 실무그룹의 가동을 개시함.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북·미관계 정상화, ③ 북· 일관계 정상화, ④ 경제·에너지 협력, ⑤ 동북아 평화·안보체 제. 4월 13일 이전까지 북한은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관의 감시·검 증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하며, 핵포기 대상으로서 신고해야

Iπ

 \bigvee

VI ----

TX

Χ

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협의를 개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5만 톤을 제공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를 개시함.

- 다음단계 조치: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완료하고,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현존하는 모든 핵시 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95 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실시함.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북핵 폐기의 초기 조치에 해당하는 2·13합의가 만들어진 지 8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이행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찾아오는 것같이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카오의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의 송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 부시행정부가 미국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뉴욕의 연방은행까지 동원해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자금을 러시아를 경유에서 보내줌으로써, 2·13합의는 이행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송금이 완료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북한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IAEA 전문가팀의 방북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허용했다. 뒤이어 북한은 7월 6일 외무성대변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지되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7월 중순 IAEA 사찰관의 봉인과 검증 조치를 수용했다. 2·13합의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5MWe 원자로의 폐쇄와 봉인 조치가 거의 100여일이나 지연된 것이다. 2007년 10월 3일 발표된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 합의문에서는 2·13합의의 제2단계 조치인 불능화와 신고

에 곧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 말까지 영변의 핵심 시설 세 곳(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도 이뤄지게 되었다.

2. 쟁점

2·13합의가 어렵사리 이행단계에 진입했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폐쇄라는 말 대신에 가동중지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7월 6일자 외무성대변인의 발언도 "핵시설 가동중지 과정에 실제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이다. 폐쇄가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에 가동중지는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표현이다. 5MWe 원자로가 노후화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폐쇄라는 용어가 북한 당국의 핵폐기의사를 보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제네바 기본합의 때와 같이 IAEA 사찰관이 영변 핵단지에 상주하지도 못하고 있다. 금년 6월 IAEA 사찰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AEA 전문가팀이 영변을 방문해서 북한과 합의한 문서에도 사찰관이 상주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이는 현 단계에서 영변 핵단지 내에서 사람과 기계에 의한 모든 핵활동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군축회담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불능화"(Disablement)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동결"(Freeze)은 시설을 그대로 놔 둔 채 가동만 하지 않는 상

П

V

Л

VII

ΙX

Χ

태를 말하고, "폐기"(Dismantlement)와 "해체"(Disassembly)는 시설을 파괴하거나 해체해서 재가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불능화는 동결과 폐기·해체의 중간단계로서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파악된다. 불능화가 생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불능화의 범위와 심도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당초 한·미 양국은 거의불가역적인 수준의 불능화를 염두에 두었지만, 북한의 반발 때문에크게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의 핵심 시설 세 곳에서 핵심 장비를분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데1년 정도 소요되는 수준의 불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능화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한·미 당국은 2008 년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불능화의 수준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2008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핵폐기는 2·13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며, 핵폐기 협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 2·13합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 단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결과를 보도한 2월 13일 자『조선신보』도 이번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무력증 강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은 핵폐기 협 상과 연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보장 조약 체결 금지 등 '북한식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즉 6자회담 본회담과 비핵화 실무그룹을 북·미 핵 군축 회담의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과 불능화의 대가로 2·13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선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7월 6일 핵시설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후에도 약속된정치·경제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핵활동의 재개는 합법성을 띠게 된다고 경고했다. 7월 15일자 발언에서는 2·13합의의 완전한이행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고해야 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쩌면 핵시설 폐쇄·봉인보다 중요한 2·13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플루토늄 프로그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핵무기 및 핵실험 시설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영변 핵시설에서 "군사용"이라는 이유로 제네바 합의당시 사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두 개의 시설도 이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6자 수석대표회담을 끝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7월 21일 핵무기의 신고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존 핵계획, 다시 말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경수로가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관의 발언은 불능화·신고의 범위를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면서 HEU와 핵무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이 기대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 모두 국제 법상 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계관의 주장은 사실상 억지와 다를 바 없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 규정상, 핵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보유국이 된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인도와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3월 5일 뉴욕에서 있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인도처럼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10·3합의에서 2007년 말까지 북한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국이 백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하는 데 합의하였다. 10·3합의를 전후해, 북한은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신고가 완료된 후,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중유제공도 2008년 5월까지 완료되는 것을 이해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실한 불능화 이행 여부, 핵프로그램 신고시 UEP 문제 등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대시리아 핵기술 이전 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일본의 반대 입장이 변수로 남아있다.

3. 해결전략

가. 기본방향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의 중요한성과인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토대로 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동시에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 ① 2·13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확고한 비핵화 기반 구축
- ② 9·19공동성명의 실천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③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북한의 합의이행 유도
- ④ 대북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의무이행 연계
- ⑤ 비핵화의 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보
- ⑥ 확보된 역할에 상응하는 경제·기술적 비용 부담

비핵화 과정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핵시설 폐쇄·봉인
- ②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③ 핵무기 폐기
- ④ 핵무기 폐기 이후

나. 세부추진방안

(1) 핵시설 폐쇄·봉인

(가) 핵시설 폐쇄

지금까지 플루토늄 생산에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플루토늄 생산에 즉각 사용될 수 있는 다음 3개 핵심 시설을 폐쇄한다. 모두 영변에 존재하는 시설들이다.

- ① 5MWe 원자로

 $\frac{I}{I}$

17.7

V

VII

VIII

IX

Χ

- ② 방사화학실험실
- ③ 핵연료봉 제조시설

건설이 완료되면 플루토늄 생산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음 2개 시설의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한다.

- ① 영변 소재 50MWe 원자로
- ② 태천 소재 200MWe 원자로

(나) 봉인·검증

상기 5개 핵심 시설이 재가동되거나 재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AEA 사찰관이 감시·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미 가동되었던 시설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부분에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카메라 등 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07년 사찰이 재개된 이후 봉인장치와 감시장비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검증방법은 IAEA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시하는 것이다. 북한이 IAEA의 상주 감시를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나 상주감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가) 핵시설 불능화

폐쇄 대상인 핵심 5개 시설(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을 재가동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불능화시킨다.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유사시 재가동이 가능한 여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시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능화의 기본취지와 개념은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불능화의 기술적인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비핵화 실무그룹의 소관사항이다. 2007년 9월 초 미·중·러의 핵전문가들이 영변을 방문, 북한 당국자들과 불능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 2007년 10월 3일 발표된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 합의문에 따라서, 11월 1일 미국의핵전문가팀이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의 핵심 시설 세 곳에 대한 불능화에 착수했고, 이 작업은 200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그 목적이 평화적이든 군사적이든 관계없이, 북한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 합의문에 따라서, 2007년 말까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초보적인 신고도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그동안 영변의 핵활동을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고 동시에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핵프로그램을 평화적 프로그램과 군사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평화적 프로그램>

우라늄 원광석의 채취와 정련에서부터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핵연료주기과정의 연구와 개발 및 핵물질 생산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북한이 IAEA 에 재가입해서 IAEA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7

VΙ

VIII

IX

X

<군사적 프로그램>

북한이 평화적 프로그램에서 생산한 핵물질 가운데 핵무기 제조에 전용된 실태와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은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대상에서 핵무기 관련 사항을 제외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북한의 경우 평화적 프로그램에서 생산된 핵물질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평화적 프로그램의 신고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물론 군사 분야의 특성상, 핵프로그램의 신고단계에서 핵무기 보유현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불능화 및 신고에 대한 검증

불능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와 모든 핵프로 그램으로 신고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임시 사찰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북 한의 핵개발 실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과 동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주요 핵시설과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관들의 현지 방 문 및 관련자 면담 등이 허용되어야 하는 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특히 핵물질에 대한 사찰은 단순한 육안확인만으로 불가능하며 사찰을 위해 특수기계장비를 제작하거나 과학적 실험을 실시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임시사찰을 완료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핵을 포 기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한 남아공의 경우 사찰준비에서부터 완료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불능화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면서 모든 핵프로그램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한 임시사찰이 완료되면, 2·13합의의 이행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다음 5개 실무그룹은 9·19공동성명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2·13합의 완료시점에서 달성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 ① 한반도 비핵화
- ② 북·미관계 정상화
- ③ 북·일관계 정상화
- ④ 경제·에너지 협력
- 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3) 핵무기 폐기

(가) 핵폐기 협상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2·13합의에는 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핵무기 폐기를 개시하기까지의 절차와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2·13합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핵무기 폐기를 위한 별도의 협상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폐기 협상을 미국과의 양자 핵군축 실현의 장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시도는 평화체제 구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핵폐기 협상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П

TV/

V

VI

VIII

77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이 북핵폐기의 기본원칙을 담은 9·19공동성 명을 만들어내는데 2년 1개월이 소요되었고, 소위 핵폐기의 '초기조치'를 담고 있는 '2·13합의'에 합의하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핵폐기 이행

핵폐기 협상에서 합의된 절차와 방식 및 시간표에 따라서 실제로 핵단두를 해체하고 관련 물질과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 절차와 방식만 완전하게 합의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은 거의 기계적이고 실무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핵무기의 폐기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중심 역할을 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지역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폐기의 전 과정에서 한국의 참관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5개 핵보유국 가운데 희망하는 나라로 반출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 핵폐기 검증

핵폐기의 시작과 동시에 감시와 검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폐기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검증 방식과 절차도 함께 합의되어야 한다. 핵폐기의 검증은 핵무기가 제조된 시설뿐만 아니 라 배치되었던 군부대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련자 조사도 수반되는 극도의 민감한 군사적 사안이다. 따라서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사 소한 의견마찰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핵폐기 합의문을 이견의 소지나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분명 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핵무기 폐기 이후

상기 세 단계를 통해 확보된 북한의 비핵화 상태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과 점검 차원의 사찰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핵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했던 인력 이 평화적 목적의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 의 지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은 비핵국가로서 NPT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NPT의 정상적인 회원국으로 받게 되는 IAEA의 정기사찰은 감시 지속 단계가 일정기간 이행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NPT를 위반한 핵개발 국가로서의 오명을 씻고 정상국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핵개발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신뢰가뿌리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I

П

V

V

VI

VIII

IX

X

IV

한반도 평화체제

1. 종전선언/평화협정

가. 실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은 비록 선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분단이후 지금까지 각종 제의를 상호 제시해왔다. 분단직후부터 60년대 말까지는 군사·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체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남한 또한 1970년대 들어와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74.6.18)를 시작으로 꾸준히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의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1년 소련붕괴이후 탈냉전적 국제정세가 들어서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도출된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국에 의해 합의 도출된 '9·19공동성명」(2005.9.19)과 '2·13합의」(2007.2.13)는 모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힐 차관보의 방북(6.21~22)과 6차 6자 수석대 표회담(7.18~20,베이징) 개최이후, 9월 한·미정상회담, 10월 남북 정상회담, 11월 남북·미 종전선언 채택, 12월 북핵 불능화 및 핵프로 그램 신고와 북·미 평화협상 시작 등의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다.

П

IV

71

VII

VIII

IX

<표 IV-1> 북한의 평화협정안 변화과정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3~83	1984~91	1992~2001	2002~현재
당사자	남·북 평화협정 (1954.6.15)	남·북 평화협정 ('62.10.23)	북·미 평화협정 ('74.3.25)	남북 불가침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병행 체결 ('88.11.7)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대체 북·미 잠정협정 ('96.2)	
방식	양자회담	양자회담	양자회담	3자내 양자회담 (북·미·남: 2+1)		(북미·중라남·
전제 조건	先 외국군대 철수 남북군대 축소	先 주한미군 철수	後 주한미군 철수	先 주한미군 철수 - 단계적 철수 - 북남무력 단계적 감축	명목상 先 주한미군 철수 (실제 주둔용인 의사 표명, - 2000년 남북정 상 회담 이후)	
기타제의			유엔사 해체와 유엔군 철수 ('74)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경 요구 ('92)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94. 4. 28)	('05. 7. 22) - 북·미 평화공존 - 남북 평화통일

나. 쟁점

(1) 평화관

남한은 평화를 전쟁 또는 전복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고,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통일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7 평화통일이 남한헌법의 이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은 평화통일의 실현이 남한의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남한 정부는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공동체통일방안 28을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의 '부르죠아 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²⁹ 또한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

²⁷⁻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前文)할 것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제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도 제시하고 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참조.

^{28- &#}x27;공동체통일 방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으로 시작되어「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을 거쳐「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으로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

^{29- &}quot;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68), p. 521; "부르죠아평화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며,³⁰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³¹이 그 기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되는 한(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관을 정리해 볼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남북한 은 공통적 인식과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³² 이를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인식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적 충돌이나 군사적 행동이 없고, 한반도 평화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 있다."『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63.

^{30- &}quot;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 써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침략자들을 단매에 소멸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유지와 그 공고성은 담보된다. 평화를 전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 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관하여," p. 31.

^{31- &}quot;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미제국 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15.

^{32- &#}x27;자주'의 개념과 관련, 남한은 통일이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에서 미제가 나가도록 하는 것 입니다(1990.8)'라는 김일성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안보동맹체 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13; 강승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p. 39~5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0~11.

를 교란할 수 있는 비평화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진 상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무력적 충돌의 소멸이란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평화적 요소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IV-2> 남북한의 평화개념

	남 한	북 한		
소극적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이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 회가 평온한 상태	굴종적 평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 군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행동이 중지된 평화상태	
적극적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이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 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적화통 일 전략·전술을 포기한 상태	진정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 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 어진 상태	

(2) 평화구축방안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과 '평화상태가 이 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 준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북한에 의해 군사정전협정 준수는 위반되었다. 또한 공고한 평화상태가 무엇인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누가(당사자), 언제(시기), 무엇을(대체협정의 성격), 어떻게(대체방법), 어떤 식(보장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남북한은한반도 평화구축 방법론과 관련하여, 상이한 접근 방식과 구축 틀 그리고 당사자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화구축 방식: 과정적 접근 대 제도적 접근

남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하나의 긴 '과정(process)'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규범과 절차, 제도를 채 택하고 점진·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화구축 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조성 및 유지·증진 노력을 통해 불안한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을 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 정전협정으로는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적대적 대결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나) 평화구축틀 : 평화체제(peace regime) 대 평화보장체계 (peace arrangement)

남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새로운 체제형성(regime building) 과정으로 인식한다. 33 남한은 평화의지 확인,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포함), 본격적인 경협, 남북이산 가족 상봉,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를 이뤄 실질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new peace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⁴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무엇을 의미하

³³- 국제정치학에서 체제(regime)라는 개념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설치된 기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 규범, 절차와 규칙을 의미한다. Joseph Nye, Jr., "Nuclear and U.S. 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1987), p. 391.

³⁴_ "조선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는지 명확하게 천명한 적이 없다. 그 동안 북한이 발표한 성명이나고위 당국자의 발언 등을 정리해 볼 때,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해체와 새로운 평화감시(보장)기구설치와 같이 협정 체결과 기구 마련을 그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⁵ 그리고 2006년에 평양에서 출판된 평화체제관련 책자를 통해 북한은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의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방위조약 해체, 국가보안법해체'를 주요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³⁶ 따라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핵심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으며,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

이에 대해 남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는 남북한이 해결할 과제이고, 후자는 한·미양국이 협의할 문제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결과적으로 한반도 불안정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평화체제론자들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통권 제154호, p. 246.

³⁵⁻ 제성호 교수는 북한식 평화구상의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기구(조선인민군 판 문점대표부 등), 한반도 평화협상을 위한 북·미간의 상설적인 협의체(장성급 고위군사접촉 채널 등), 북한식 평화의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북·미 평 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군축 및 불가침을 이행 감시하는 장치, 유엔군사 령부 해체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 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pp. 109~146.

³⁶⁻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pp. 4~5.

정한다. 다만 평화체제 수립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북한의 평화공 존의지가 확인되고 한반도 대내외 여건이 성숙됨으로써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된 후, 이와 같은 평화상태를 확인 선언하 는 차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평화구축틀과 관련하여 남한은 실질적 접근의 평화조성중심주의 로, 북한은 제도적 접근의 협정·기구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평화구축 당사자 : 남한·북한 대 북한·미국

평화구축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남북한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한 입장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의 막대한 군사력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남북한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남북이 직접 협상하지 않는 어떠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도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자 논리와 주한미군 주둔실태에 근거하여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중국은 북한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가 이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군의 남한주둔을 강조하면서, 남한 정부는 '미제국주의자의 괴뢰'로서 자율성이 없고, 남한은 국군에 대해 작전지

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괴뢰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⁷

이에 대해 남한은 미국만이 조약당사자라는 북한측 주장은 조약서명자(Signatory)와 조약당사자(Party)를 혼동, 자의적으로 해석한데서 연유한 것이라 반박하고,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의당사자는 남북한이라고 강조한다. 38 또한 남한은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및 남북화해분야 부속합의서제19조의 정전체제의 남북한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항 즉 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모두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협정체제'라는 단어가 그 실례이다. 평화협정과 달리 평화체제는 일종의 바구니(Basket)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틀이라 할 수 있다. 평화체제는 하나의 평화협정에 의해서 성립될 수도 있으나, 복수의 평화협정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남북한은 양자에 의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자 및 다자에 의한 복수의 (평화)협정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다.

^{37- &}quot;…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미국이다.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인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 이렇게 놓고 보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더 론의할 여지도 없다." 『로동신문』, 1995년 3월 3일; 1997년 6월 25일.

³⁸⁻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현안 자료집』(1998), pp. 148~150.

(라) 평화협정 내용 : 보편적 내용 대 불분명

남한은 전쟁의 법적 종결, 불가침 및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체제존중 및 불간섭, 기존합의서 준수이행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당사자 문제에 대한 우선적 논의를 주장하며, 평화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불가침, 주한미군 지위문제, 남한의 군사기지화반대 등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관련 사안을 개괄적으로 언급하며, 전쟁책임 및 손해배상은 제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³⁹

(마) 평화협정 체결시기: 선 신뢰구축(비핵화)·후평화협정 체결 대 선 평화협정 체결·후 신뢰구축(비핵화)

남한의 평화체제구축 추진방법은 ① 정전체제 유지 \rightarrow ② 교류·협력 증대 \rightarrow ③ 신뢰구축 형성 \rightarrow ④ (남북)평화협정 체결 \rightarrow ⑤ 자유민주 주의 통일의 단계를 모색한다.

북한의 추진방법은 ① 정전협정 폐기 \rightarrow ② 북·미 평화협정 체결 \rightarrow ③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rightarrow ④ 남북연방제 실시 \rightarrow ⑤ 사회주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한편 미국 부시행정부는 ① 핵시설 폐쇄·봉인 완료 및 불능화 개시 \rightarrow ② 연락사무소 개설 및 비정부간 접촉 증대 \rightarrow ③ 일정한 양의 무역 거래 개시 \rightarrow ④ 핵시설 불능화 완료 \rightarrow ⑤ 테러지원국 명단에 서 삭제 \rightarrow ⑥ 종전선언 \rightarrow ⑦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rightarrow ⑧ 북핵

³⁹⁻ 북한 외교부 비망록, 1994.4.30.

⁴⁰⁻ 송대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2000년대 초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 59.

폐기 완료 → ⑨ 수교 → ⑩ 평화협정 체결 수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전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소수이지만, 북핵폐기 심지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전에 수교와 대사관 개설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⁴¹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비핵화협정·남북합의서·한반도평화협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문건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비핵화협정,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남북간의 합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결지으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법적장치로서 평화협정을 들 수 있다. 기왕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플루토늄핵무기 개발과 고농축우라늄 핵개발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효성을상실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비핵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남북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새로운 합의도 중요하나 기왕에합의된 문건들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은 3대 남북합의문건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평화협정은 아래와 같이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핵동결 완료시 종전선언, 북핵 불능화 완료시 평화협정을 논의하도록 한다. 한반

⁴¹⁻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0.

도 종전선언은 북핵 동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북핵 동결이 완료될 때 합의된 선언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신뢰를 이끌어 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핵 불능화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북핵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행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한·미군사관계의 전반적 조정시기(2012) 이전에 평화체제 전환조건(한반도비핵화 완성 및 평화협정 체결)이 달성되도록⁴² 한·미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북한이 핵시설 폐쇄·봉인을 수용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해서 남북평화선언을 발표하도록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빠르게 가고 있는 동북아 시간에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시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6 자회담(9·19, 2·13, 10·3)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회담을 통해 속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6·15공동선언에 기초해서 진행해 오던 남북관계가 더 이상 발전 못하고,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도약 기반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정상회담

⁴²⁻ 전경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KPP 제6차 회의 발표문, 2007.3.29.), p. 9.

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물고를 전환시켰다면, 2007년 정상회담은 화해협력의 초기단계를 이행과 완성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도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6·15 체제에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 체제로 이행해서, 남북관계를한 단계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북핵으로 바로 지칭하지 못해 아쉬운 바는 있지만,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미 특사교환을 통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함으로써,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4국 외무장관 회담과 종전선언

4국(남북·미·중)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발표한다.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은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단호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를 목전에 둔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고려해 중·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민감한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자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공개 한·중회의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체결에 일원이 되어야 함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⁴³

⁴³⁻ 한중 워크숍(베이징, 2006.2), 한중 워크숍(서울, 2007.5).

따라서 중국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일원으로 참석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현 한반도 정세를 평화상태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뿐만아니라, 향후 한반도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배후국가일 뿐 아니라 향후 통일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는 나라인 중국을 배제하면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종전선언 발표는 북핵 불능화와 연계한다.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 출발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4국(남북·미·중)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발표를 추진하도록 한다. 그 시기는 북핵불능화 이행시기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불능화과정 완료시기에 4국정상 또는 외무장관이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시하도록 한다. 북·미간에는 상 주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하도록 한다. 별도로 북·미 간 인권문제 회담을 개최하도록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 에 북한의 합의 이행 지속과 이탈 방지를 유인하기 위하여 유엔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사실상 철폐도 적극 검토한다.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이 완료에 가까워 졌을 때, 2·13합의에 따른 별도의 한반도 4자 평화포럼을 개시한다. 이 때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완화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신뢰와 국제사회로의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안)

제1조 (전쟁상태의 종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조 (불가침)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전쟁과 상호적대행위를 반대하며 상호간에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 공격,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 (평화상태의 정착 노력)

참가국은 한반도의 평화상태가 완전한 평화상태가 아닌 잠정적 상태임을 인정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제4조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

참가국은 이 선언이 서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국 대표자 동수로 구성되는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유영에 관한 사항은 참가국의 합의로 정한다.

제5조 (정전체제의 소멸)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가 설립되는 날부터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소멸한다.

제6조 (한반도 통일의 지지)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미합중국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I П

V

VI

VIII

IX

Χ

(다) 핵무기 폐기: 6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폐기와 연계한다. 북핵 폐기의 검증과정이 시작되면 한반도 평화협정(1+3) 체결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한반 도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핵 폐기 검증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북핵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체결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행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 다. 이 기간 북한의 대미·일 수교협상도 병행 시작할 수 있도록 추 진한다. 그리고 한·미군사관계의 전반적 조정시기(2012)이전에 평 화체제 전환조건(한반도 비핵화 완성 및 평화협정 체결)이 달성되 도록⁴⁴ 한·미간에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점에서 남 한과 미국의 새정권으로 교체되는 향후 2년 사이에 한·미관계를 상호 신뢰성에 기반하여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평화협정 주체는 2+2+UN안보리가 되도록 한다. 평화 협정 체결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존 남북기본 합의서 이햇·싴처. ② 전통적 평화협정 체곀. ③ 남북평화협정 체결 (양자), ④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다자 접근)이 그것이다. 전통적 평 화협정은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시에 다자적 접근에 대해 서도 우리 민족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서도 우리 민족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족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변형된 한반도 평화협정(양자와 다자 병행)체결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⁴⁴⁻ 전경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고려사항," p. 9.

한편 평화협정 당사자안에 대해 각국은 국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2자안은 남한(남북)과 북한(북·미)이, 3자안은 미국(남북·미)이 선호할 것이다. 4자안은 중국(남북·중·미)이, 5자은 러시아(남북·리·미·중)가, 6자안은 일본(남북·일·미·중·러)에 의해 제안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남북이 주체적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도록 해 야 한다. 다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변국의 국제적 보장과 한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의 길을 열어놓도록 한다. 다시 말해 동심원적 접근과 포함의 원칙으로 주체를 확정하 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주체는 남북한임을 분명히 하 되, 그 실효성 보장 차원에서 핵심 유관국과 주변 유관국 순으로 정리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단계적으로 열어주도록 한다. 그 방식은 2(체결국)+2(보장국)+2(지원국)+ UN안보리가 될 것이 다. 남북한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체결국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한 국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 남북한과 각각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평화협정의 안보적 보장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국으로 한반도평화협정의 경제적 지 원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제기구인 유엔안보리에 추인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상징적 보장을 받도록 하고, 이후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평화협정 구성문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1개 기본협정+3개 부속협정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한반도평화협정은 크게 기본협정과 부속협정으로 구성된다. 기본협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Ш

. V

VI

VIII

ΙX

이 한반도문제 당사국인 남북한과 유관국인 미·중·일·러 4개국이 참석하여 합의·도출하도록 한다. 부속협정은 그 동안 남한이 주장하던 남북 평화협정을 받아 남북 부속협정으로, 북한이 주장하던 북·미 평화협정을 받아 북·미 부속협정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또한 한중간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한·중 부속협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한반도평화 기본협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지향적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천명, 불행한 과거사 정리와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다짐, 군사분계선 및 NLL을 평화경계선으로 획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적대행위 금지 및 무력불사용), 남북주도하에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보장관리기구 구성·운영, 기존 3대 남북합의문과 2007 남북정상선언(10·4선언)을 포함한 남북합의사항의 실천, 다른 조약과의 관계, 국제적 보장, 북핵폐기 확인후 발효조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되, 상호용서 및 화해 차원에서 한국전쟁에 따른 책임문제와 피해보상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45

그리고 남북 부속협정에는 남북평화공존 및 평화통일 의지 천명, 상주대표부 교환설치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합의 사항의 이 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미 부속협정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무력불사용, 적대행위 금지), 국교정상 화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중 부속협정에는 한반도 평화통 일 지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노

⁴⁵-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통일연구원 KPP 제5차 회의 발표문, 2007.3.22.), pp. 6~10.

력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반도평화협정 관리기구로서는 4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다음과 같이 대체·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이 중심이 되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와 미·중이 보장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로 대체한다. 또한 한반도번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소외되는 주변국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남북·미·일·중·러 모두 참여하는 「한반도번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행하던 감시기구 기능은 「유엔평화감시단」을 만들어 이어받도록 한다.

한반도평화기본협정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 무력사용, 공격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장을 소망하며,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형성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전쟁의 종결 및 평화 유지

- 제1조 (전쟁의 종결) 당사국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 태를 완전히 종결한다.
- 제2조 (정전상태의 종식) 당사국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된 한반 도의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한다.
- 제3조 (평화의 유지) 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를 회복하고 항구적으로 유지시킨다.

제2장 일반원칙

- 제4조 (체제인정 및 내정 불간섭)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무력사용금지) 당사국은 한반도에서 일체의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남북합의사항의 이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쌍방이 선언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쌍방간의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및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제7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8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제3장 평화지대 및 평화관리기구

- 제9조 (평화지대의 설치)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 평화지대는 1953년 7월 27일 합의된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다.
- 제10조 (무력배치 및 군사훈련 금지) 평화지대에는 일체의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 제11조 (남북군사통제위원회) 평화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군사통제 위원회를 설치한다. 남북군사통제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대표 동수로 구성한다. 정전협정상의 군사정전위원 회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소멸한다.
- 제12조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합중 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참여국들의 협의로 정한다.

제4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 및 외국군대의 주둔

- 제13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본 협정은 당사국이 제3자와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4조 (외국 군대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대의 주둔은 본 협정의 정신 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5장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

- 제15조 (국제연합평화감시단) 이 협정의 모든 참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평화감시단 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16조 (한반도번영위원회)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이 협정의 모든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번영위원 회를 설치한다. 한반도번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참여국들의 협 의로 정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_ 105

Ι

111

7

VI

VII

IX

- 제17조 (부속협정의 체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속협정을 체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기 별도의 부속협정을 체결한다.
- 제17조 (하기 서명) 본 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는 본 평화협정에 하기서명(下記署名)한다.

제6장 종결조항

- 제18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완전한 핵폐기를 확인하고 당사국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9조 (국제연합 사무국에의 등록) 본 협정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 제20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제21조 (개정) 본 협정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2조 (정본) 본 협정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기재된 문서를 정본으로 한다. 정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제23조 (부속협정과의 관계) 본 협정과 함께 체결될 부속협정들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본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하기 서명

미합중국 대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일본 대표 러시아 대표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협정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협정이 평화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및 불가침

- 제1조 (상호 인정 및 불가침)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문제에 가섭하지 아니한다.
- 제2조 (무력사용 금지)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하지 아니한다.
-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 제3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과 북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2장 경계선 및 관할구역

- 제4조 (육상경계) 남과 북의 지상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5조 (해상경계) 해상 경계선과 구역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과 구역은 앞으로 계속 혐의한다.
- 제6조 (공중경계) 남과 북의 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3장 군사적 신뢰구축

제7조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비통제)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쌍방간의 국방장관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_ 107 -

제8조 (군비통제 담당) 남과 북 사이의 상호불가침 및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문제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가 이행하며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가 이를 보장한다. 단 동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남과 북은 합의 하에, 또는 단독으로 한반도번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군비통제

- 제9조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배비(配備), 사용, 수출을 하지 않으며, 또한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수출을 하지 않는다.
- 제10조 (핵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 담당) 남과 북의 핵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사항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1조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통제의 담당) 대량살상무기와 중거리미사일
- 제11조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통제의 담당) 대량살상무기와 숭거리 통제에 관한 사항은 남북군사통제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12조 (국제기구의 감시, 감독, 사찰) 남과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에 관한 제반 조치들은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연합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적절한 감시, 감독 또는 사찰을 받도록 한다.

제5장 전쟁상태 종결에 따른 전후 처리

- 제13조 (화해)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전쟁을 거치고,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상호 이해와 화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다.
- 제14조 (인도주의 문제)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체제 상태에서 발생한 인도 주의적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상호 합의 하에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 (거주이전 자유를 위한 노력) 남과 북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쌍방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장 다른 조약 및 법률과의 관계

- 제16조 (군사동맹 가담 금지)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 군사동맹,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제17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본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다른 국제법 주체와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 제18조 (국내 법령의 개정)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개정노력은 내정 불간섭의 범위 내에서 각기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19조 (외국 군대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대의 주둔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다.

제7장 통일을 위한 기구 설치와 정상회담의 정례화

- 제20조 (상주대표부)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 제21조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 남과 북은 본 협정으로 조성될 평화상태를 남북 사이의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22조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준수와 남북 사이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제8장 종결조항

- 제23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4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제25조 (개정) 본 협정은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 _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부속협정

- 제1조 (불가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이용한 공격, 위협,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한반도 비핵화) 미합중국은 본 협정 체결 이전에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합의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미합중국이 한반도에 핵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 으로도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배비(配備), 사용,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제3조 (평화공존)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 대방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한반도 통일의 지지) 미합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 제5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방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하여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 제6조 (국교정상화) 쌍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제7조 (연락사무소) 쌍방은 본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교환한다.
- 제8조 (주한미군)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의 활동을 한반 도의 평화 유지에 한정한다.
- 제9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쌍방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화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 (정본) 본 협정은 한국어, 영어로 된 문서를 정본으로 한다. 정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년 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협정

- 제1조 (불가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이용한 공격, 위협,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평화공존) 쌍방은 상대방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 제3조 (한반도 통일의 지지)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 제4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방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하여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 제5조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쌍방은 동아시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6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쌍방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화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7조 (정본) 본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로 된 문서를 정본으로 한다. 정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 _ 111 -

(라) 핵폐기 이후 : 한반도 군축 시작

첫째, 북·미 양자 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및 경제개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북한에 적용하도록 한다. 셋째, 한반도 군비통제/군축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2. 한·미동맹

가. 실태

한국과 미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맹관계 아래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왔다. 1990년대 초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북아 국제질서도 변하면서 한·미 동맹관계도 재조정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1990년대 초 3단계 철군계획을 추진,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가 철수되었으나 북핵 문제의 등장으로 동 계획의 추가 진행은 중단되었다. 이후 1995~2002년 기간 중 양국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한·미 양국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공동연구·혐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무현 정부 등장이후 동맹관계 재조정은 속도를 받기 시작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에 시작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주한미군 일부 감축 등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2월부터 시작된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서는 동맹조정 3단계 공동연구 등을 수했하였다.

2005년 10월 한·미 양국은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문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했고, 2007년 2월 24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동시에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며, 한국방위에서 '한국군 주도, 주한미군 지원'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한·미 국방 당국 간의 전략대화체제(SCM과 MC)는 존속되며양국 협력기구로 가칭 '군사협조본부'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군사동맹구조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07.1.19)을 맺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UNC 정전관리책임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2007년 10월 제39차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이행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 까지 주한미군 부대 감축 및 군사능력 향상에 110억 달러가 투자되고, 10대 군사임무 한국군 인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제기·결정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등의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한국 사회 내의 갈등을 유발한바 있다.

나. 쟁점

(1) 주한미군 문제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4자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강력 하게 제기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밖의 비공식적 기 $\frac{\mathrm{I}}{\mathrm{II}}$

Ш

VI

VIII

ΙX

회에 북한 측이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의 공식적 입장으로 확인되 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2·13합의 도출 과정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로서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연관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이다. 향후 남북간에 평화문제가 논의되어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 진다면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논의할 사안이다.

현재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합의·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 안정화,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서추가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할 수 있다.

(2) 유엔사 문제

그 동안 북한은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간섭도구이므로 해체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하게 해체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향후 2·13합의에 따른 북핵문제 및 미·북 관계 개선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또는 그 과정에서북한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사 해체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유엔사의 해체와 정전협정의 존속 여부 판단, 정치·군사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 해체시기, 유엔사 해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미치는 영향, 유엔사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인식·전망의 상이성 등이다.

유엔사의 기본 역할은 정전협정의 집행기관이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신 새로운 평화협정 관리기구의 설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사 해체방식은 ①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해체 방안과, ②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유엔기·유엔휘장 반납으로 해체절차를 종료하는 방안 등 두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전체제가 존속되는 한 유엔사령부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평화보장 관리기구가 구성되면 발전적 해체의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정착될 때까지 유엔사 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유엔사 해체 시 주일 유엔후방 사령부와 기지 주둔의 법적 근거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한다.

(3)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미 국방당국의 합의에 따라서 2012년 4월 17일까지 한국 군에게 이양하기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법적으로는 한·미 군통수권자의 공동 지휘를 받아 행사)를 이유로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논거를 상실하게 된다.

향후 북한은 2012년 4월 이전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면서 한국군 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엔사의 한·미 연합사에 대한 작전통제권 재위임 행위의 효력 상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시 완료 시기 이전 유엔사 해체문제가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선·후의시기, 법적·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4) 평화보장관리 문제

정전협정 체제 아래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관리는 제도적으로는 군사정전위원회(MAC),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등 정전협정기구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구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5월 22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공식 활동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1994년 4월에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이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1996년 2월 28일 외교부 담화를 통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전에 양자 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잠정협정의 이행·감독 기구로서 '조미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제안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동 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잠정협정의 내용은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관리, 우발적 충돌발생시 해결수단, 군사공동기구 조직·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1998년 10월 북한군 유엔사령부 간 장성급회담 비공식 접촉 시 새로운 군사공동기구인 남북·미 3자 군사안전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기도 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4자회담 추진 시 4(한국·북한·미국·중국)-2(미국·중국)의 구상 아래 평화보장관리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남북평화협정을 주변국

(예: 미국·중국 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또는 유엔 등 국제기 구를 통해 보장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에 공고한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기까지는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추진 전략에 유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다음의 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에서 新패권국가의 등장을 예방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패권국가'로서 기능해왔으며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패권적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온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최근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역내 분쟁예방, 재해·재난구제, 대규모 난민발생시 인도주의 작전, 해상 교통로 보호, 마약거래·인신매매·무기 밀매·테러 등 방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실질 목표로 하거나 또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지금까 지와 마찬가지로 한·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변경 문제는 별개 문제로서 남북간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남북한은 「기본 IV

V

VII

VIII

IX

합의서」에서 상호 대외관계에 불간섭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남북관계의 안정화·제도화 수준에 따라서한·미 간 협의로 추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등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북·미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한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단계에서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른 접근이요구된다.

유엔사 해체 문제의 경우,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그 존속 논거와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점진적인 변화 및 최종적인 해체의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유엔사 해체 → 주한미군 철수 →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리를 경계 하면서, 유엔사의 실질적 기능 및 한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체 또는 전환의 방안을 마련·추진하는 것이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한반도 평화관리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며, 유엔사 또는 다국적군 주둔에 의한 평화관리방안은 국제적 개입의 명분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남북 평화협정을 동북아 평화·안보협의체 구성국들이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이 구성하는 관리기구(예: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양국의 국방당국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이행계획을 합의·발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미군기지 재배치 작업은 지속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단의 시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일정이 예정과는 달리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한·미간에는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의가 지속될 것이다. 그 기본 방향은 군사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역할, 미군 보조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북한 핵의 불능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핵시설 및 물질의 신고 이후 검증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은 지체될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전 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완료되는 시기와 같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한·미 간 미래 동맹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미·북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관하여 주한미군 추가 재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진전되는 수준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를 조정하고,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의 진전 및 북한 위협의 감소에 따라 점진적 감축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은 한·미동맹 발전과 연계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긴밀한 협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시기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와 더불어 한반도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다) 핵무기 폐기

북한 핵프로그램과 핵무기의 검증가능한 해체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 미·북관계의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것이다. 양자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가 모색될 수있다.

이 단계에서 한·미는 연합지휘체제의 변경을 추진한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서 병립형 지휘협조체제의 발전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위협관리를 주도하며, 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미·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가 추진될 것이다. 한반도에 남북 간 및 미국이 포함되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군의 참관을 통한 군사훈련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해상 안전, 긴급구조 등 상호 비적대적인 형태의 군사훈련이 모색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추가적으로 재조정되거나 감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한 군비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간 군비통제 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전력에 대한 한·미간 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북한의 핵 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료되면, 남북한 군 사적 신뢰구축도 어느 정도 진전된 단계로 상정되며 따라서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화될 것이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에서 동 북아지역안정 역할 위주로 변화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안정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가 이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철수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 안정자 및 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본격적인 군비감축 방안이 실행될 수있다.

I

IV

VI

VII

IX

동북아 협력체제

1. 안보협력

<추진목표>

냉전 종식이후 동북아에서는 역내질서의 다극화추세와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라는 긴장완화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 이 해대립, 분단국과 영토문제, 군비경쟁 및 북한과 중국체제의 불확 실성 등 잠재적 갈등요인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평화질서가 정착되 지 못하고 국가 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3~94년의 제1차 위기에 이어 2002년 10월 2차로 발발된 북핵 문제는 동북아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즉 21세기 초 의 동북아 질서는 안정 요인과 불안정 요인이 병존함으로써 이중적 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의 신질서가 역내 평화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의 평화체제인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란 역내국가들 간에 세력균형 원칙이 지배하고, 지역적 안보기구가 존재하며, 역 내국가들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결코 무력에 의한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이해충돌에 의한 분쟁의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개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 태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ш

V

V

771

VIII

IX

<추진전략>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을 기반으로 발전·형성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정부차원의유일한 다자간 안보협상체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동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핵심은 한반도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975년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1990년 독일통일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평가이다.

가. 실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구성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분쟁예방을 위한 대 화지속과 협의과정의 개설을 권장하고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다자간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태지역에서는 이러한 협력안보 의 성격을 갖는 다자안보대화가 참여국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신 뢰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 간 차원에서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민간차원에서「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민간·관료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남북한·미·중·일·러간의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13 북핵 합의'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이미 2차례(1차 3.16~18, 베이징; 2차 8.21~22, 모스크바) 개최되었다. 6개국은 동북아지역 평화안보체제 구축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나. 쟁점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기본입장은 차이가 있는 바, 한·미·러는 적극적이고 중국은 긍정적이나 일·북한은 소극적이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를 정식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장기적 차원의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국가로서 참여와 역할을 확보하는 차원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위해서는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해양국가로서 호주·인도 등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다자안보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군비경쟁이 계속되고있다는 점, 미·일과 아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동북아 협력체제 **_ 127** -

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에 소극적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6개국 간 입장차이가 있다. 한국은 실무그룹회의에서 동북아 국가들 간 안보관련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역내 합동 해상구조훈련을 제안했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매우 시급한 그룹'이 아닌 '매우 중요한 그룹'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관련 중요의제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다루고자 한다.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형성되더라도 중국은 인권문제, 대만이나 티벳 문제 등이 의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역내질서의 특징과 CSCE의 역사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중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도 6개국은 역내 평화안보체제 구축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 →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CPSNA: Conference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형성 → 동북아 평화안보기구(OPSNA: Organiz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설립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양자적 접근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접근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미와 북·일 간 정식 외교관계가 없고 역내 국가간

영토문제와 이념대립 등으로 불신이 지속되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개선 등 신뢰구축 노력이 있어 야 하며 이후에 협력안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중장기 동안 6개국의 다자간 협력안 보과정을 기초로 하여 구축될 수 있을 것인 바,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한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셋째, 6개국 협력안보 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정부차원의 6개국 다자간 협력안보 과정이 지역안보협력기구로 제도화됨으로써 공고히 구축될 수 있다. 제도화란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협의회들이 조직되어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경우를 말하는데, CSCE는 1995년 1월 1일부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제도화되었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자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문제는 당사국들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인사 교류, 경제·사회· 문화 관계의 확대, 군사관련 기본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군사훈련 시 상대국 참관단의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중·러 3국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5개 실무회의 중 시급한 실무회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u>П</u>

Ш

VI

7711

IX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의에서는 6개국 간에 공동의 안보인식 공유, 역내 합동 해상 수색·구조훈련 등 초보적(정치적) 신뢰구축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정기회의에서는 6개국 간 초보적(정치적) 신뢰구축 문제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협력안보대화인 동북아 평화안보회의가 조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의제, 의결방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 핵무기 폐기

6개국은 '동북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협력안보 과정의 일환으로 동북아 평화안보회의를 개최한다. '동북아 평화선언'에는 주권평등,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포기, 국경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6개국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반 원칙과 동북아 평화안보회의의 기본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법 등을 포함시킨다. 동북아 평화안보회의의 기본목표로는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안정 및 평화에 대한 기여, 상호불신 극복과 신뢰증진, 모든 참여국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경제·사회적 발전 및 복지증진,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전쟁방지, 유엔헌장의 준수 등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안보회의는 정치적 신뢰구축 → 군사적 신뢰구축 → 군비통제와 군축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역내에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국간 정치적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 증진과 대화관행의 축적, 경제, 과학·기술, 문화관계의 확대, 테러방

지, 난민대처, 환경보호, 해상안전 감시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참가국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 예산, 군사전략, 군사력 현황 등에 관한 정보와 군인사 교류, 군사 훈련 계획의 사전 통보 및 군사훈련 참관, 군비통제와 군축의 기반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와 군축을 위해 핵무기 확산금지, 비핵지대 창설, 무기이전 통제, 방어무기 공동개발, 공동 군사교육 및 군사·훈련기관 설치 등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안보회의를 동북아 평화안보기구로 제도화함으로써 OSCE처럼 유엔헌장제52조가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평화안보기구 창설을 위해서는 6개국 정상들간의 정례 회합, 안보인고관계 장관급회의 개최, 외교·안보 고위실무자 접촉, 사무국 설치, 분쟁방지센터 설치 등을 '동북아 6국간 기본관계 합의서'의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6개국 정상들 간의 회담을 2년 마다 1회씩 실시하고, 1년에 1회 이상 외교·안보관계 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지역안보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및 군축위원회 등을 6개국에 분산 배치하여 역내국가 간 안보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을 긴밀히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frac{1}{\Pi}$

П

. V

7/1

VII

IX

2. 경제협력

가. 핵시설 폐쇄·봉인

2·13합의에는 제1단계 핵시설 폐쇄 및 봉인 단계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에너지 지원 관련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2·13합의 30일 이내 6자회담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 중의 하나인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을 열어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문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2·13합의에 따라 60일 이내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초청하는 한편,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참가 5개국은 대북 긴급 에너지 지원용으로 중유 5만 톤 상당을 제공하고 60일 이내 최초 운송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7년 9월 초현재 중유 5만 톤의 수송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한편,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07.3.30)에서는 북핵 폐기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하되, 북한에 중유 등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핵시설 불능화시점까지 추가로 제공될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단계별로 나누어 제공하는 한편, 각 단계별로 제공될 분량은 다시 월단위로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초기이행조치 이후 단계에서 중유지원 입장을 천명한바 있으며, 2007년 9월 말 현재 약속한 중유 5만 톤을 제공·완료한바 있다.

미국도 초기 단계 60일 내 200만 달러 상당의 발전기 등을 비정부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발전소 개·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 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관계에서는 2·13합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던 대북 쌀 차관과 비료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2007년 4월 18일 개최된 남북경제추진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BDA 문제 해결 지연에 따른초기이행조치의 미실시로 지연이 된 남한 차원의 대북 지원은 예정대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BDA로부터의 자금 인출이 그 동안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핵시설의 폐쇄·봉인 (동결)과 함께 2007년 연내 핵불능화 단계에 들어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제2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해야한다. 이의 상응하는 조치로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하는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2·13합의에서 대북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자국의 우려사항이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되어 있어 '불능화' 단계에서 이행하기로 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었으나, 추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동북아 협력체제 **_ 133**

본 단계에서는 남북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내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북 전력 송전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의 남한 기업 진출활성화에 따르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기 도입, 수력발전설비의 현대화 등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다. 핵무기 폐기

2007년 말까지 북한 핵시설의 폐쇄·봉인·불능화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는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폐기'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폐기단계 이전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물질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 사찰이 진행된 다음, 궁극적으로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본 단계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은 9·19공동성명에 제시된 내용이 그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거 매년 중유 50만 톤과 200만kW 상당의 경수로 원전 건설을 보장받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후 제고된 위상을 십분 활용하여 핵 폐기와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단계에서 북한은 경수로 건설의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2·13합의에서는 경수로 문제가 빠져있으나, 9·19공동성명에서는 이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북한은 9·19공동성명을 십분 활용하여 경수로 건설문제를 제기하고 보장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남한을 비롯, 미국도 핵 폐기를 전제로 논

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의 긍정적 추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핵 폐기 단계에서 북한은 또한 남한을 상대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그 대상은 남측이 북한에 재안한 200만 kW 상당의 전력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제시한 안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면 송전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핵을 폐기할 경우 전력공급을 시작한다는 제안인 바, 북한은 개성공단 참여기업 사용 전력을 연계한 방법으로 대북 송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 내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북창화력, 동평양화력 등) 대형발전소의 정상 가동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여지도 크다.

그 밖에도 본 단계에서 북한 핵 폐기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남한 외 미국을 비롯한 EU, 유엔기구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에너지 및 경제기술협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대일청구권 자금의 에너지 분야 사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핵 폐기 이후 단계에서는 북한 에너지 분야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입지여건을 활용, 북한 내 정유센터 건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 건설에의 참여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 있다.

둘째,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공동 추진도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시베

리아 지역으로부터 중국-북한-남한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동북아 국가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에의 공동 참여도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안보협력의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는 동시에 낮은 분야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더 높은 분야로 이어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안보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석유·가스네트워크 및 전력망의 연결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당국자 간 실무 회담을 통해 정치 및 군사안보적 신뢰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개발 및 수송을 기존의 철도 및 물류망과 연결,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도록 동북아 협력 체를 통해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수송, 투자보호, 통상 및 에너지 효율, 환경 분쟁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역내 국가간 구속력 있는 에너지 조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공동 관리할 기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남북경협과 긴장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VI

남북관계 발전



1. 정치적 관계개선

가. 실태

15년 넘게 지연되던 북한 핵문제가 2·13합의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2·13합의에서 5개 실무그룹을 구성 운용하는 등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해법으로서 포괄적 접근법이 마련되었다. 대북 에너지 지원 부분은 한국이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5개실무그룹과 별도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화포럼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였고,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은 연내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 대하여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핵문제 진전 정도에 상응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들이 미비하다. 남북간의 상호불신이 여전하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극도의 경계도 여전하다.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제한된 지역의 특구형태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방북자들은 북한 주민을 개별 접촉하지 못하며, 북한 주민들은 남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 기합의된 1992년의 기본합의서는 유명무실하다. 장관급회담, 경추위, 적십자회담 등 당국간 회담이 열리기는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고 일회적으로 북한의 호응에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

극적인 구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의 남북관계 전환, 내부문제 불간섭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특히 평 화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현 정 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인식 을 같이함으로써 평화체제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남한에 대 한 북한의 경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 쟁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 쟁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가 모두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북한은 BDA 금융제재 해제와 중유 100만 톤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된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 북관계에서 남는 문제가 있다.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시 체제 단속을 위하여 남한과의 거리두기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핵문 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한 은 오히려 일본 및 미국 자본이 유입되면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북간에 추진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 상설 협의기구 설치 운용 문제가 중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간 헐적인 장관급회담이나 경추위보다 보다 정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과 화해협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과의 정치적 신뢰구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북한을 유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하다.

또한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체제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개혁파들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북한의 BDA 문제 해결 요구에 호응하여 미국이 BDA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북한은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남북 신뢰 증진을 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핵실험이후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 써 핵실험직전의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되었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 하였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종식 조치의 일환으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I

П

77

T 7TT

VIII

IX

적용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함에 호응하여 북한은 연내에 핵시설 불능화, 핵프로그램의 신고 조치를 완료하기고 합의하였다.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폐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경공업 자재 및 북한 광산 개발 교환 사업 등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07 남북정 상선언에서 새로 합의된 여러 남북경협 사업 추진 준비를 가속화해 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고무하고 적극적 으로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도 확대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외부정보유입을 꺼려하면서도 외화벌이 차원에서 대남기관별로 경쟁적 사업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핵무기 폐기

미국 부시대통령이 8월 31일 아태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임기내에 끝낼 수 있다"고 언명하였고 이에 앞서 8월 28일에는 버시바우 미대사가 올해안에 북핵문제의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터부를 넘는 빅뱅 수준의 대전환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의 과거핵 폐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유인동 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단계에서 필요한 경제적 유인동 기는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이익이 되는 경협방식이다. 나아가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단계의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로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에 남 북당국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 이 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유지하도록 경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남북관계의 관리를 잘못하게 될 경우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남북관계를 교착상태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본격적인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공동체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 ESCS → ECSC)에서 시작되었듯이 한반도에너지공동체, 한반도가스공동체, 한반도경제공동체 등의 개념이 향후 주된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간 분야별·단계별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관리할 상설협의기구를 구축한다. 최고협의기구로서 남북정상회담, 고위급 협의기구로서 장관급회담, 각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Ш

V

7

7/11

VIII

IX

2. 군사적 신뢰구축

가. 실태

남북한 군사대화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지원(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접촉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 및 장성급 군사회담이 그것이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실무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협력사업(철도. 도로연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군사실무 대표들의 긴밀한 군사적 협의가 진행 되었으며 이는 본격적인 남북·군사대화를 통한 남북한 군사적 신 뢰구축조치를 위한 주요한 기술과 경험축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 도 하다. 남북 군사실무접촉은 제한된 분야의 군사업무처리에 국한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군사대화 경험의 축적이 본격적 인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한차례의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수차례의 남북 장성급회담이 개최된 바 있으나 북한당국은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제한적 목적의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수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1차 국방장관회담의 경우, 남북한 도로 및 철도 연결에 필요한 군사적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남북 장성급회담 역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 등과 같은 제한적 내용의 현상에 국한되어 왔다. 북한은 서해해상경계선의 '정치적이슈'화와 '남한사조' 차단을 위한 DMZ에서의 선전활동 억제 및 선전수단 제거를 위하여 남북장성급 회담을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정치적 이슈화를 위하여 장성급회담을 개최하는 데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남북군사회담은 아직까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남북한의 입장은 첨예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로서 남북한이 직접적인 군사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그들에 대한 핵심적인 안보적 위협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한반도 군사문제는 남북군사대화가 아닌 북·미직접 군사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해결 관련,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을위한 북·미직접 군사대화를 쟁점화하고 있으나 남한은 이에 앞서남북한 당사자 간의 군사대화 요구로 맞서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1차 남북 국 방장관 제주회담)한다는 '선언적' 합의는 있었으나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의 군사회담 개최 자체가 원천적으 로 제한되어 있다. Ш

V

VI

VIII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먼저 한반도 군사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 차원의 긴밀한 사전협력 관계 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남북 군사회담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부정적 의도와 관련한 사전대비 태 세가 필요하다. 남북한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한 군사회담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하며 현 정전체제 하의 한반도 군사질서를 평화체제 하의 한반도 군사질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서해해상 관련 NLL 부정을 전제 한 군사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 리 측은 북측에 NLL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허점을 드러내서 는 안 될 것이다. 남북 군사관계 발전 관련, 상황판단 및 추진방법 에 대해 한 미 공감대 형성을 간과해서도 안되며, 남한이 남북 국방 장관 회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등을 배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 전협정, 유엔사(UNC) 조기파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빌미를 제 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과도기적으로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대화 차원에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기존의 틀 변경은 한 유엔사 협력이 필요하 며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군사정전위원회나 판 문점장성급회담(UNC-KPA 장성급회담)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의제로 한 남북군사회담 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문제는 미·북간 해결한다는 북한 의 기존의 입장에 근거 북한 당국이 남북간의 직접적인 군사회담 개최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를 감안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서 해해상수산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과정상 필요로 하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형태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과 같은 큰 틀의 대북 군사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선정·추진 → 관련 남북 군사실무회담 제기 → 각종 레벨의 실질적인 남북 군사회담(국방장관급, 장성급, 령관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발전방향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남북 군사대화 재개 추진(군사대화 예비) 남북장성급 회담 재개 → 군사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대화의 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해 나가도록 한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군사적 긴장완화 와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군사합의(유도단계)

남측 대통령의 대북 정치적 신뢰 구축 관련 일방적 공식선언 표명과 함께 실무적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 정례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 여기에서 남북이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군사문제들에

I П

ш

V

VI

VII

VIII

lΧ

대하여 남북한 양자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 삼자대화 용의를 표명하여 북측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이행하고, 동 회담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으로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군 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 통보 등을 관철시켜 나간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협의와 실천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 군사인물들의 교환방문을 선제의, 논의해 나갈 필요도 있다. 과거 북한 국방장관이 남측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군사분 야의 실질적인 논의와 긴장완화를 위해 군복을 입은 고위인사들의 교환방문(예, 양측 총참모장 교환방문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군 고위인사의 교환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의 정례화를 제의하여 북측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압박해 나가도록 한다. 군 인사의 교환방문은 그 자체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군인사 교환방문에 이어 △남북군사협상채널 정례화(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국방장관급 회담, 장성급, 실무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이행 △공세적 전력운용 우선 제한 등을 선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남북군사실무회 담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군 인물 교환방문, 군사회담 정례화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병력수 감축, 그리고 재래식무기 감축 등 본격적인 군비축소 논의를 우리측이 선제의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 핵무기 폐기: 운용적 군비통제(이행단계 I) 북한의 핵폐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반도 군비통제를 실시해 나 가는 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및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연결을 확대하여 운용토록 한다든가 군사정보 교환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및 참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추진하며, 남북간군비통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이행해나가도록 한다. 먼저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 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범위를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구조적 군비통제(이행단계 Ⅱ)

본격적인 군비축소는 '방어적 전력배치로의 전환 → 대량살상무기·공격용 무기 제거·감축 → 본격적 군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단계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감시단및 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및 공격용 무기를 감축하는 남북군사대화를 추진한다. 군비통제를이행·감시하기 위한 검증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3. 경제공동체 형성

가. 실태

민족경제의 공동번영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남북교역의 확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증가, 정부차원의 3대 경협사업추진 등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경협이 질적인 측

П

IV

 \vee

VII

VIII

면에서 바람직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비록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이루었지만 실제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대북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수 개에 불과하고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당수 기업은 초기 투자 후 사실상 대북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많은 업체들이 실제 대북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차원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한다면 매우 부진했던 것이 현실이다.

민간기업의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북투자가 부진한 것은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북한의 투자환경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높은 물류 비용, 생산제품의 판로 제한 등으로 외국투자가를 유치하기에는 매 우 불리하다. 북한체제의 경직성에 따른 기업경영에서의 제한 및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에 대한 우려 등도 투자 유치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 및 남북경협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남북경협에서 초기단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우선의 남북관계,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북한체제의 특수성 등 제반 환경상의 문제들은 남북경협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나. 쟁점

경제제도와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한의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경제회생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

한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발전과 시장화를 지향하는 변화를 수반해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체제로 수렴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상태의 구현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안보문제의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화와 경제는 따로 떼어놓고 접근할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축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이다.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경제적 유대 또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고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경제, 나아가 한반도 경제의 활로 개척과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북한 경제의 회복·발전, 남한 경제의 도약, 그리고 한반도 단일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이다. 남북경제 공동체 구축은 남북경협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신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의 경제분야 실천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다. 남북경협 확대와 북한경제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남북한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및 경제적 동질성이 제고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은 향후 경제통합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경제적인 면에서 한반도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와 실질적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Ш

V

VI

VII

VIII

IX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조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핵시설 폐쇄·봉인' 단계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북한에 제의하고, '핵시설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 '핵무기 폐기' 단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확대·발전시키고, '핵무기 폐기 이후' 단계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심화·완성한다.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단계에서 특구 중심의 북한 개방 확대, 남북한 신경협사업 추진, 남북경제협력연락사무소가 서울과 평양 에 설치된다. 남북경제공동체 확대·발전단계에서 북한은 개혁·개 방 확대 및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확산해 나갈 것이다. 대규모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을 비롯한 남북한 산업 및 경제의 상호 의존 및 연계성이 강화된다. 남북경제협력대 표부 설치 및 남북경제공동체 기구가 제도화된다. 남북경제공동체 심화·완성단계에서 북한은 전면적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된다.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 남북경제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 영, 남북한 시장의 점진적 통합과정을 거쳐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 어진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지속해 나가도록 한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쌀 차관 지원 및 비료 무상 지원을 중단 없이 계속한다.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 확대 및 남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들의 조기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가동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대 경협사업(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지속 및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시험운행을 통해 향후 정기운행에 대비한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현재 추진 중인 경협사업의 확대 및 이미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을 조기에 착수·시행한다. 먼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개성공단사업은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경의선·동해선의 시험운행을 거쳐 남북한 일정구간에서 정기 운행이 가능토록 한다. 남북경협의 북한 내 거점지역 배후 도로망 확충도 필요하다. 개성 이외의 지역으로 민간차원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다.

남북한은 5대 부문(농업·임업·수산업·제조업·광업)에서 신경협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에는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연계한 북한자원의 공동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남북한 산업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활동에 긴요한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에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한 물동량의 주된 물류거점인남포항의 하역시설 확장과 북한 철도의 주요 구간에 대한 개보수

I П

<u>II</u>

V

V / T

VII

VIII

IX

및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에서는 비료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협력과 임업부문에서는 묘목지원 및 양묘장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업부문에서는 북한 수산자원 공동조사 및 시험 조업, 서해양식단지 조성 지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협력을 들 수 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관련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 및 북한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협력한다. 광업부문에서는 북한 광산의 안정적조업 유도 및 대북 자원협력채널을 구축한다. 물류·유통 및 통신부문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 주요 항구간 선박 공동 운항, 북한 내 경협거점 지역에 물류단지 건설 및 통신망을 구축해남한과의 연결을 추진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해주, 남포 등을 추가로 개방하도록 유도해 특구 중심의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이와 함께 북한 지역에서 시장화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 교류와 대북 경제관료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남북한 사이에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 경제관계를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준비토록 한다.

(다) 핵무기 폐기

전 단계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은 북한경제개 발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착수·추진하는 것이다. 대규모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남북한 주요 철도·도로 연결 및 국토의 균형 개발을 추진해나간다. 이와 병행해

남북한 산업 및 경제의 상호 의존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과 지역협력을 적극 펼쳐나간다.

개성공단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수도권 산 업의 분업체계에 편입시켜 나간다.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해서는 주요 시설(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등)들의 개보수와 현대 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도 예상할 수 있다. 경의선 의 경우에는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정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해선의 경우에도 원산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 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해 남북한 사이에는 주요 철도와 도로를 통 해 인적·물적 자원이 대규모로 이동한다.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시범영농단지 조성, 특구내 농자재공급소 및 농산물센터 설치·운영, 대단위 농업종합개 발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 개발 추진 등이 있다. 임업부문과 관련해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확대, 황폐지 산림복구 및 대체연료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수산업부문에서는 북한 동해어장에서 남측의 본격 조업이 가능할 것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 업종의수출산업화 지원, 남한기업 전용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설치한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 및 전력, 광산 부자재의 공급 지원, 전략적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이 광업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이다. 핵개발 중단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 공급설비 지원, 석유정제설비 개보수 사업도 이루어지게 된다. 물류·유통부문에서는 북한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통신부문에서는 대북 사업장의 통신망이 확충될 것이다.

특구의 개방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북한의 모든 지역으로 개

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유도하고 북한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시장경제기구가 작동될 수 있 도록 한다.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확대·개편해 남북경제협력대표 부로 승격시키고 각종 남북경제공동체 기구를 설치하고 제도화해 나간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북한 지역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중화학공업과 지식기반 산업 등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게 되고 북한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다. 남북한은 강화된 산업의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을 기반으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또한 남북한은지역적·구조적 격차의 해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해·환경 등의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남북한 경제문제는 좁은 의미의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관련되어 나타나게 된다.

개성공단은 3단계 개발을 완료해 다국적 기업이 진출할 것이다. 농림부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개발과 산림녹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상업적 전업농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구조가 개편된다. 에너지부문에서는 다양한 신규설비의 확충과 신규 에너지원(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이 도입된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하자원의 체계적 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전략적인 수출상품으로 등장한다. 북한 전지역이 8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교통망체계가 구축되고, 남북한 간선 교통망과 국제복합운송망이 결합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의 국제화가 가속화되어 진행된다.

대규모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동참 하게 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은 국제 운송망과 연계되 어 동북아로 뻗어나가게 된다. 철도의 경우 한반도종단철도(TKR) 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어 러 시아,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달리게 된다.

북한은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루게 되고 계획경제에서 완전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남북한 시장은 점진적으로 단일시 장으로 통합된다. 한반도 경제통합을 전담할 남북경제통합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 남북한 경제의 전 부문에서 경제통합을 가속화 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의 단일화, 국토의 종합적 개 발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경제공동체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경제통합을 이루어 사실상의 통일을 맞게 된다.

4.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가. 실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등 각 분야별로 남북협력사업 및 공동행사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홍보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체육교류에 있어 적극적이었으며,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 안게임 등 대규모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종 교분야는 남한내 각 종단의 북한선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 역시 대북지원이 수반되는 종교교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활발한 <u>П</u>

-

7

7777

VIII

ΙX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분야는 남한측의 경우 상품성에 있어 유리하고, 북한은 대남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사업의 질적·내용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형식과 분야로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류분야가 한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공연, 학술행사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여성·농민·교육 등 과거 미진했던 민간차원의 직능·부문간 교류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왔다. 특히 지자체의 대북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서, 서울시와 강원도 등 시·도·군 지자체들이 대북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나. 쟁점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에 상존하는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기초위에서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정성의 근본적 원인 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실리추구 및 정치적 홍보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민 간교류에 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바,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민화협 등은 사실상 정 부기관이자 통일전선부의 지휘하에 대남민간교류사업을 담당하며,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측의 경우 대북민간교류의 주체와 분야에 있어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과 아울러 '대북사업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확산 및 다변화 보다는 몇몇 단체로 행사주체가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측은 남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거나, 단체의 개별적 접근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성사시키거나 과도한 대가 지불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남북민간교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여론의 양극화 및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남갈등 외에 남북민간교류에 수반되는 구체적·실무적 차원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술, 문화예술분야 등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왕래의 증가로 남북교류 및 북한지역체류 남한주민들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남북한 사회는 장기적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념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아울러 내면적 차원에서의 남북주민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남북 이질화해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남북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합의사안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

V

V

VII

VIII

IX

되어온 기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에 주력하며,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의 발전적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 및 주체에 집중된 사회문화교류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위해 국회·정당, 시민·사회단체, 보수단체 등 제 분야에서 연합 또는 개별단체간 북측 파트너 확보 및 지속사업 발굴을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관련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기본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개발을 연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사회개발지원형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논의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개발지원이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회개발지원은 전반적인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산업의 경제면의 개발인 경제개발의 진행과 병행하여 사회개발은 도시·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사회복지·교

육 등의 사회면의 개발이며, 목적은 직접 인간의 능력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해소와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개발지원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개발지원과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연계하는 발전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술교류의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하고 있으며, 남한의 관련 학술계의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별로 북한에 필요한 학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투자관련기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학술지원차원에서 학술서적과기타 교육기자재 등 관련 자료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장기적인 위기구조의 심화로 인한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가능성도 증대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 단계에서는 민족문화·역사 관련 공동조사 및 DB구축, 국제행사의 공동개최 등 사회문화교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다) 핵무기 폐기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제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 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V

V

VI

VIII

IX

Χ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조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관간의 협력관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동 단계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정(가칭)의 조인을 통해 남북사회 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 민족공동행사 를 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켜나가고, 비무장지대 체육·평화·생태 공원화 상징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 이를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거 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공 동체 공동 연구 등 사회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장기체류 형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동 단계에 있어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 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단계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문 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회문화공동체기구의 창설과 사회문화통합형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송·언론보도의 허용및 교환연구 등 자유왕래형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공동체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북한인권

가. 실태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전체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실태가 전체적으로 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열악한 북한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 유엔인권기구, 미국 등 개별국가, 국내외 인권NGO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다각 도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먼저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인도주의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치적 권리 증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공개적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북한경제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를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사회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정책

Ш

. \

VI

VII

TV

V

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오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등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왔다. 특히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의거하여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수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오고 있다. 일본도 2006년 6월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전략', '국가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인권존중을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대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병행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당국은 북한체제를 전 복하려는 '대북적대정책'의 수단으로 인권문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체제유지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주권의 원칙에 따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권이 상실되면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권이 곧 인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 원칙에 따라 서방식과 대비되는 우리식 인권론을 정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경제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형법 등 인권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인권관련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쟁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행위주체들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행위주체들 사이에 북한인 권에 대한 인식, 접근 전략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인권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실상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왜곡·과장 등 탈북자들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 북한인권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을 북한체제의 속성에서 찾 는 내인론적 시각이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경제제재, 적대관계 등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외인론적 시각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입법, 결의안 채택 등 도덕적 압박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과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

<u>Т</u>

П

- -

VI

VIII

IX

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생존권과 자유권의 어느 인권범주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이경이 노출되고 있다.

넷째,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외부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화와 인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무조건 지원, 조건부 지원 등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 해결정략

(1) 기본방향

첫째, 무엇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와의 조화 속에 병행하여 해결한다는 기조 아래 한반도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적으 로 작용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둘째, 생존권 보장, 개방의 유도를 통한 점진적 시민의식의 함양 등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하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

셋째, 인권개선의 주체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 변화,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함양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공개적 압박, 포용정책을 갈등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주체 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인권의 불가분리성 원리를 고려할 때 생존권과 자유권의 우선순위 논쟁을 지양하고 병행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주민의 시민의식이 함양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협과 인권개념의 통합, 빈곤퇴치 프로그램등 북한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연계성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첫째, 대북지원을 통해 생존권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한 인도주의 사안,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셋째, 북한주민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북한 내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자체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도록 한다.

(나) 핵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대북인권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도주의 사 안과 북한인권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개별국가, NGO 등 각 행위주체 I П

П

7

VI

VIII

IX

들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인권기구차원에서의 자유권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 시 문안 조율 등 유엔차원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에서 비공식·비공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인권우려 사항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객관적 실태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추진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독일사례를 원용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엔인권기구와 개별국가와의 협조 하에 인권분야 인프라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첫째,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규약에 저촉되는 법률을 분석하여 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둘째,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럽연합 등 개별국가와의 인권대화 및 인권분야 기술대화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선해나가야 한다. 셋째, 법 실행과정에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사법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대북지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배 분될 수 있도록 분배투명성 등 인도적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해나가 야 한다. 또한 영유아 뿐만 아니라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북한 내 소요 산정을 위해 북한당국의 통계작성 역량이 제고되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독일의 동독 정치범 석방방식을 원용하여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별도 채널을 구축하도록 해 야 한다.

동 단계에서 정부는 정부 내 조직을 정비하여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제적 권리 신장과 인도주의 사안 해 결을 위한 남북간 협상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다) 핵무기 폐기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체제를 붕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협조를 거부하여 왔다. 그런 데 평화체제 구상이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 단계에서는 북한이 체제 안보를 이유로 인권개선을 유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한다.

남북한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인 권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법률적 수요를 지원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북 한 내 법치 여건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권분야 기술협력 을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참여 등 인권과 민주 주의를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보상, 인도적 사안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남북관계 발전 _ 169

등을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서신교환 및 고향방문, 납북자·국군 포로 서신교환 및 송환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비핵화 실현, 북·미 관계정상화 등과 맞물려 남북연합단계로 접 어들 경우 남북간 인권대화 정례화 및 인권보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동 선언문에는 "남북한 당사자들 은 인권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 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체제 형성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위한 다자 틀의 형성이 어려운 만큼 인간안보 개념을 원용하여 '동북아 인간 안보센터' 구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안보, 환경안 보, 식량안보(빈곤퇴치) 등을 의제로 인권협력을 도모한다.

동 단계에서 정부는 통합의 미래상 차원에서 북한인권이 아닌 '한반도 인권', 즉 남북한 전체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남북한간 인권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6. 인도적 지원

가. 실태

1995년 8월 북한은 UN 인도지원국에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지원 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5년 쌀 15만 톤 지원을 시작으로 1999년 비료 지원, 2000년 쌀 차관 개시 등 대북지원을 정례화 하였고, 2004년 용천재해 지원,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2006년 수해복구 지원 등 계기발생시 긴급구호성 지원을 병행하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남북한 정부 간 직접지원과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간접지원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1995년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가 가능해졌다. 초기에는 단일창구인 대한적십자사가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1997년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와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한적을 단일창구로 한 남북 직접 전달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1999년 대북지원창구 다원화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성화조치의 결과 2001년에는 6개였던 대북지원사업자의 수가 2006년 12월에는 65개로 증가하였다. 2004년 9월부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상임운영단체와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2006년 말까지 정부 지원 11억 118만 달러, 민간 지원 5억 4,366만 달러, 총 16억 4,484만 달러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 이후 연도별 대북무상지원 현황은 다음의 <그림 VI-1>과 같다.

I П

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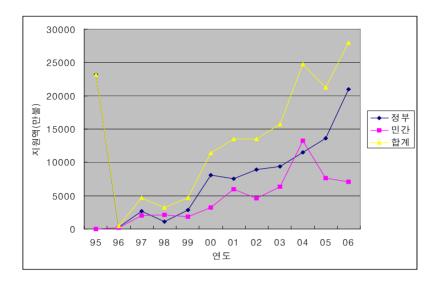
V

VI

VII

IX

<그림 VI-1> 연도별 대북 무상지원 현황



초기의 대북지원은 구호성 긴급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농업복구 및 보건의료시설 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 대북지원은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부문에서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⁴⁶과 개발지원의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의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⁴⁶⁻ 취약계층은 약 320만 명(임산부 98만 명, 5세 이하 아동 230만 명)으로 이중 중증 영양실조 상태인 아동만 7만 명에 달한다. 특히 UN FPA의 2006년 발표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 영아 사망률은 영아 1,000명 당 43명으로 남한의 14.3배에 이른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미래에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 쟁점

그간 대북지원의 효과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대북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보다 군사적 전용 등을 통해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북지원 초기에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분단으로 인한 불신과 지원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모니터링 제도 등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제도가 강화되면서 대북지원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공유가이루어지고 있다.

대북지원의 효과로는 우선 대북지원을 통해 식량문제가 완화되고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상태가 뚜렷이 호전되는 등 긴급한 인도적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동포애를전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남북화해 협력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에 호응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영향을 미쳤다.

향후 모니터링 방식 개선, 대북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자료 제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 의의에 관한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I П

<u>II</u>

. V

VI

VIII

ΙX

X

또한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는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상호 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핵문제 해결, 인권 개선 등과 연계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실지로 현재 대 규모 에너지지원과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향후 대북지원과 핵문제 등과의 연계 문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이 부분적으로 중복지원 및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47 대북지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필요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체계적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중·장기적인 설계도를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과 같이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지원사업을 주도하며,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민간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민간단체는 고유한 대북지원 경험과 북한측과의 연결망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지원 영역을 전문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 간의협의체제를 강화하고 단체들 스스로 대북지원의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⁴⁷⁻ 조한범,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북한 개발지원과 NGO』(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자료집, 2005).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추진한다. 첫째, 에너지지원,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은 2·13합의 이행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하되,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이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긴급구호형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지원체제로 대북지원의 성격을 전환한다. 이는 경제개발 뿐 아니라 사회개발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개발은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 다원적 시스템 내에서의 참여, 다양성, 동등한 경제적 기회, 사회적 불평등 극복 등을 제반 요소로 한다.48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핵시설 폐쇄·봉인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예년 수준의 지원(비료 30~40만 톤 약 1,400억원 상당, 쌀 40~50만 톤 약 2,000억원 상당)을 지속하되, 구호성 지원에서 농기자재 지원, 기술전수, 종자개량, 보건의료 기반시설 마련 등 개발성 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2007년 7월에는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긴급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중유 5만 톤 지원이 시작되었는 바, 향후 에너지지원

⁴⁸⁻ 이종무, "북한 개발지원 분야와 운선순위 선정,"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2005).

및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 등은 인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2·13합의 이행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본격적인 개발지원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 단위의 시범적 개발지원 및 민간 차원의 단체별 전문성을 살린 개발지원성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개발지원형 대북지원의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는 개발지원형 대북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북개발지원은 북한의 재생산구조로 연계되지 못하여 설비 및 원료 지원 중단 시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보여왔는 바, 개발지원 분야 선정시 자체적인 사업의 진행가능성이나 기술이전 및 설비투자 효과의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발성 지원은 농자재의 원활한 조달과 생산·관리·유통·농업생산기반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단위의 시범적 개발지원 및 민간 차원의 단체별 전문성을 살린 개발지원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당곡리 협 동농장 지원 사례와 같이 남측의 지역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북측 의 특정 지역과 협력하여 생산, 생활 기반시설, 위생, 보건·의료, 교 육 등을 포괄하는 소규모 지역단위에 대한 복합적 개발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의 개발지원에서는 농기계 지원, 종자 개량, 축산개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주거환경 개선, 모자보건위 생, 농업보건용수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된 협력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향후 도시 또는 군·도 단위의 지역 간 개발지원협력으로 확대 시 상호 의견교환, 주민 접촉, 사회문화 교류,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간 결연 합의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지원을 확대함과 함께 북한당국이 개발지원 수요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발지원은 "수혜자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그들 자신들이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참여적개발'⁴⁹을 원칙으로 하여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참여적개발지원을 통해서만이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폐단을 방지하고 북한 사회가 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력화할 수 있으며, 수혜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지원사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북측의 세부분야 실무부처가 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세부 분야의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지원의 본격적인 확대를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 확대 및 국 내 민간기업투자, 상업차관, 국제금융기구 자금, 국제상업자금 등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재난사태에 대하여 계기 발생시 구호성 지원을 반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남북간에 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공동방제 등 남북재난관리협력체계 수립을 의제화하고 협의해나가야 한다.

각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개발지원의 성과를 축적

⁴⁹- Deborah Eade & Suzanne Williams, *The Oxfam Handbook of Development and Relief* (Oxfam Publication, 1995), 이종무(2004)에서 재인용.

하고, 종합·분석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총체적 대북개발 지원계획의 수립과 대북개발지원의 전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이루 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 핵무기 폐기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지원과 연계하여 대북개 발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금융 및 재정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새 로운 노동시장 적응, 지도층의 개발계획 실행능력 육성, 재정 부문 의 정책,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북개발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한 합의하에 이를 추진할 남북공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지원종합계획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검토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거쳐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발지원종합계획은 빈곤 정도 및 개발 상황, 주요 발전과제, 개발 능력, 개발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벽 및 관련규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개발목표, 개발전략, 사업추진 우선순위, 자금(ODA/남북경협사업), 사업주체(양자협력/다자협력, 정부/NGO/국제기구), 조건(무상원조/유상원조, 공공투자/민간투자/교육), 협력형태(프로젝트 원조/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자금협력, NGO지원/긴급재난구호/양허성 차관/국제기구 지원/북한개발국제기금/남북경협 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미, 중, 일, 러 등 주요국가와

국제기구, 국내외 NGO 등을 포괄하여 중·장기 개발지원 과정을 총괄 조정하고 혐의할 수 있는 다자적 제도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북핵폐기 이후는 실질적인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북지원은 남북경협, 남북경제 공동체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구축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대북 개발지원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인 바,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관계 발전 _ 179

VII

대내조치



1. 남한

가. 실태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적 양상을 보여 왔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는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와 부동산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점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내성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과정과 아울러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남남갈등 혹은 보혁갈등이라 부르는 남한사회내부 갈등구조의 현재화이다.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송두율교수 사건, 강정구교수사건 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의 갈등은 상반된 성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한·미관계, FTA 협상, 심지어 호주제 문제 등에서도 거의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은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냉전문화구조에 기인한 대내적 갈등구조가 현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 갈등 구조는 정치지형에 반영되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민족문제의 정쟁화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양상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나. 잿점

2·13합의의 이행 및 향후의 남북관계발전은 과거와 양적·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북정책추진 기반의 강화는 남북 관계 개선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문제 정쟁화의 재생산 구조는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합의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민족문제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를통해 정쟁화의 소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보혁 갈등과 정치구조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세력도 추진력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하기 어렵다.

여론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북핵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발전, 예상가능한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은 바, 통일문제를 민족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의를 통한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치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아니며, 합의를 통한 생산적 정책추진기반의 확보문제가 대북정책및 통일로드맵 실현의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국민적 합의기반 및 국내조치의 중요성의 인지 및 대북정책 및 통 일정책의 일부로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 및 협력체 제의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로드맵의 구체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 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바,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통일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평화체제 홍보 강화>

동 단계의 단기적 특성 및 초기단계임을 감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우리의 입지확보를 위한 정 부차원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 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야 실질적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협력의지를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이를 국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국민선언을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구들을 설치, 운영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정책추진을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여야간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여·야간 정책적 협력구도를 정착, 활용함으로써

대내조치 _ 185

대북정책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간 신뢰 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추진 위원회 구성>

여론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북핵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 그 리고 예상가능한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통일문제 를 민족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의를 통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 련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치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며, 통일문제는 민족모두의 안위와 미래와 직결되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협약, 즉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의 참여주체는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사회지도층, 종교계, 노동계·재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야 할 것이 다. 통일국민협약체결과정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 우선 각 주체 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통잌국민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 협약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추진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경우 여야의 각 진영에서 통일국민협약체결을 추진하는 주체의 형성 및 세력화가 필요하며, 여야간의 합의 및 협의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통일메니페스토 체결 추진>

대선국면에서 민족문제의 정쟁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야 후보들에게 민족문제 정쟁화방지를 위한 메니페스토를 유도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문제의 정쟁화방지라는 명분을 공개적 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없을 것인바, 각 대선진영을 통일국민협약 체결과정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통일국민협약의 추진을 각 대선진영의 매니페스토(manifesto)와 연계하는 '2007 민족화해매니페스토' 운동을 시민사회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각 대선진영의 공약으로 민족문제의 정쟁화 방지와통일국민협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의지를표명하게 할 경우 대선과정에서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집권 이후의 통일정책추진 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있을 것이며, 통일국민협약의 체결의 기반이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핵무기 폐기

<통일국민협약 체결>

각 주체의 이해관계 및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민족 문제의 정쟁화 방지라는 최소주의적 합의의 형식을 통해 민족문제 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국민 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지향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불이용' 및 '민족 차원의 정책추진 원칙'을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이를 구 체화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초당적 대북정책추진기구 상설가동>

여야간 협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구들을 설치, 상시 운영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추진을 위한 여야 협의의 제도화

<u>Т</u>

Ш

. V

VI

VIII

IX

X

를 지향하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상시적·초당적 차원의 대북 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여야간 정책적 협력구도를 상설화, 대북 정책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당간 신뢰성을 확보함.

<평화교육 확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구조의 정착상황에 맞는 형태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을 평화교육 으로 전환하여 민족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지형을 확 대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제도 개선>

핵폐기 이후 남북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부응하여 냉전질서에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적 차원의 냉전구조와 분단의 유제 들을 해소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 북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의 대내체제가 대체로 호환 가능할 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으로 일반성을 갖는 가치 또는 지 향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추상적 원칙하에 국가마다 특색있는 구체적 국내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 겸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민주주의 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대체로 상식적이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하는 한, 북한의 내부 체제는 외부로부터 비판과 개혁을 요구받을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치명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국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기타억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는 주변국가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은 이 나라의 안보 군사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이 때문에 주변국가와 안보딜레마가 상존하며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의 현재와 같은 내부 경제 붕괴 상태는 대내외적으로 안보교 란요소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일차적 목표는 경제재건과 민생경제 의 향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 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야 한다. 북한은 경제정책을 군수중심에서 민생향상으로 바꾸어야 하 며, 점진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기능하는 시장경제형 제도체계로 바꾸 어야 한다. 북한은 시장경제 국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 부경제체제가 이와 호환성이 없는 한, 북한경제의 장래는 밝지 않다. 또한 북한 정부는 경재재건을 위해 상당한 량의 외부 지원을 바랄지 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외부 지원은 그 럴듯한 선언을 넘어서자마자, 이행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I П

V

ΛI

VII

VIII

IX

X

가. 실태

현재까지도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은 김정일 체제의 생존에 모아지고 있다. 내부 경제상태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에는 현실적이고 가시적 개선에 필요한 과감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불투명성과 능력의 불충분성, 정책 논리에서 구래의 이데올로기의 강한 영향력, 만연하는 권력성 부패, 행정능력 부재와 자의적 행정, 여전한 군수집중 경향성 등 부정적으로 특징지워질 요소가 압도적이다.

이와 같은 현황 때문에 설령 북한이 '평화체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그 진실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외부 국가는 여전히 북한 당국의 당장의 정책의도를 의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요구되는 내부적 정책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도충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나. 쟁점

현재 북한 핵 문제의 진전과 관련하여 낙관론(2007년 말까지 불능화 완료, 2008년 말까지 핵 문제 해결)이 우세하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낙관론도 우세하다. 또한 이와 같은 핵문제 해결의 낙관론에 편승하여, 예를 들어 한국의 북한에 대한 핵해결 단계별 대규모 지원안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이 진짜로 현실이 되자면,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 것은 북한이 2008년 말까지 다시 말해 부시 퇴임 이전에 대외안보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즉 핵물질을 포기하고, 한국 및 주 변 국가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안보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내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재건과 민생경제 향상의 방향으로 바꾸며, 가히 과감하다 할 수 있는 정책 및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대량의 외부 원조수혈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혁명적인 변화이다. 이와 같은 급진적 변화는 과거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바 있었다. 결국, 현재의 여러 낙관론이 현실화되자면, 김정일은 고르바쵸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2007년 말까지 핵시설의 불능화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내부 변화의 조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능화 이후, 다시 말해 북한의 대외 환경이 안보상으로 또한 외부 지원 및 투자 유입의 가능성 상에서 현저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자면, 북한은 보다 직접적으로 내부 체제의 지향과 목표, 그리고 의사결정 및 행정체계를 바꾸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직면했던 과제와 유사하다. 이러한 첫 번째시도는 유감스럽게도 2002년 2차 핵위기의 시발과 함께 흐지부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낙관론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와 같은 2008년 말까지의 핵 문제의 완전히 해결,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한반도 영구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기구 수립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성과를 내게하는 것이다.

대내조치 _ 191 -

주변 국가는 북한과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내 정책에 대해서 북한당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하 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능화 이후에, 대외 원조가 증가할 경우, 또는 해야할 경우, 이러한 원조의 사용에 대해 본격적 정책 대화가 개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자체로 정책과 제 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를 모색해갈 때, 주변국가들 이 이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북한 경제 재건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정책과 제도 개혁의 추진 의지 천명과 추진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에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조건없이 행해지는 경우, 그 지원이 오용되거나 효과없이 낭비될 가능성이 현저하다. 지난날의 60여 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구호 및 개발 원조의 경험에 따르자면, 상대국가가 정책과 제도 개혁에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이후에야, 대외원조는 그 개혁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북한은 이 시점을 이렇다 할 내부 변화없이 통과했다. 다만 '이제 핵무기를 갖추어서 대외안보 위협이 해소되었으니 경제재건에 매진한다'는 식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김정일이 경제현지지도에 자주나가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렇지만, 2005년 이후 북한은 경제 개혁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부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이렇다할 대외경협 확대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일의 동향은 실제 효과는 없더라도 선전목적에는 유효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일단 이 단계는 2007년 말까지 완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명단 삭제 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단계 과정에서 또는 이 단계 종료 직후에, 대내외적으로 평화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 및 자국민에 대해 정치적 화해와 무력사용 의사 포기를 의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적화 추진 부문의 삭제, 한국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적극적 추진, 한국 및 미국, 일본과 같은 서방국가에 대한 대내 악선전 중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서의 전향적 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화해 및 무력 사용 포기와 관련해서는, 자의적 구금및 추방의 금지, 강제수용소 해체 및 수감자 석방, 내부 정치경찰들의 해체, 권력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척결의지 표명 및 대대적 반부패 운동, 당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비롯 당운영의 정상화, 내부 검열의 완화 및 체제 개혁에 관한 토론 활성화 등이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민생경제 우선주의로 정책을 바꾸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과 제도의 내부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 개혁의 적극적 추진의사가 없이는, 설령 외부에서 원조가 대량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를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만한 능력이 부재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선의가 존재하더라도 북한의 수용능력이 부재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대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

I _

Ш

7

VI

VIII

IX

X

도 개선에 매진해야하며, 외부 지원은 이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북한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 화 대 경제'의 정책을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및 남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하고 확 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경제 협력의 조급한 확대는 실패할 가 능성이 많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이 직접적으로 남북 정부 간 협상의 의제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는 북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인권이 보장이 이루어 져야 이룩될 수 있다는 관점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발맞추어 추 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에야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궁극 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은 북 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신뢰와 협력 증진을 고려하면서, 남 북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비핵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설령 주 당사자가 남북한이더라도, 주변국과의 적 극적 협력과 지원없이는 공고하게 성취되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 로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생경제의 향상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긴요하다. 따라서 당장 이러 한 나라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책은 먼 미 래를 보면서 이러한 국가와의 협조와 신뢰관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다) 핵무기 폐기

핵 무기 폐기 시까지 북한 당국은 자국민과의 완전한 정치적 화해를 이루며, 경제적으로도 가시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조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 적응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이 과정은 북한을 내부적으로도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단순하게 과거 일인독재 겸 전체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가장 치명적 피해를 치유하는 과정을 지나서,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겸 기능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여러 권리들이 개인들에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정치 제도 수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북한의 세계경제에의 통합이 완료되며, 가능하다면 한국경제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경제가 기능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는 오랜 시간과 복잡한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I п

Ш

 \bigvee

VII

TX

X

<표 Ⅶ-1> 통일연구원 평화프로세스 로드맵

구성 요소	한반도	한반도 :	평화체제	동북아 협력체제		
평화체제 추진단계	비핵화	평화협정	한·미동맹	양자	다자	
1단계 (여건 조성)	●핵시설 폐쇄·봉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 남북평화 선언 발표	 한 미 미래 동맹 발전 혐의 지속 한국군 주도역할, 미군 보조 역할로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 지속 	 북미(북·일)관계정상화 실무회담 개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일부 해제 	● BDA문제 해결 ●대북 에너지지원 개시 (중유 5만 톤)	
2단계 (초기화)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4국(남·북·미·증) 정상회담 개최 - 종전선언 발표	● 한미신안보선언 ● 전시작선통제권 한국 환수 완료 ● 주한미군 추가 재조정 (감축) ● 한반도 위기관리에 중점	•라이스 방북 •일본 납치문제 해결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철폐(적성국 교역법 명 단제외 실시, 북·미 연 락사무소 설치)	●중유 95만 톤 제공	
3단계 (본격화)	●핵무기 폐기	•6국(남북미·중알·리) 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평화협정(1+3) 체결	한 미 연합지위체제 변경 병립형 지위협조체제 한국군 북한위협관리, 미군 동북아세력균형 주한미군 추가 재조정 (감축) 한 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다자간 군사훈련 중시	미국의 대북제재 완전 철폐 북미 관계정상화 (수교) 북일 배상 문제 및 미사 일 문제 및 연락사무소 설치협의	 국제기구 대북 금융지원 경수로 건설(200만 kW 전력공급) 동북아 평화안보 협의 	
4단계 (정착화)	•핵무기 폐기 이후	●한반도군축 시작	•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 동북아지역안정 역할 위주 • 주한미군 지위 변경과 일부 철수 - 동북아 안정자·균형자 역할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기구 창설	

남북관계정상화					대내	조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인권	대북지원	남한	북한
•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남북 군사대화 재 개 추진	• 남북경제공동체 준비단계 - 3대 경협시업 지속 및 민간차원의 경 협 사업 확대	●『남북사회문화 협력분과회의』 구성		• 예년 수준의 지원 지속 • 남북합력기금 확대 • 남북재난관리 협력체계 수립	● 평화체제 홍보 강화 ●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 김정일 경제현지 지도 강화
• 북측 답방 정상 회담 개최 - 남북 기본 합의서 및 10·4선언 이행	◈ 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단계 - 추가 개방 유도, 개 성공단 2, 3단계사 성공단 2, 3단계사 성공단 2, 3단계사 동해선 철도·도로 운행, 신경협사업 추진, 북한 자원 공 동개발, 남북경제 협력연락사무소 설치	• 「남북사회문화 협력분과회의」 가동 - 북한사회개발지 원형 남북사회문 화교류·협력	•국제적 공조 통한 자유권 제기 •인권분야 중재자 역합, 북한내부 인프라 지원	에너지지원 등은 합의이행과정과 연계, 인도적 지원사업은 별도로 지속 전행 단계적으로 개발 지원형체제로 대부지원 성격 전환 시범적 개발지원 발굴 시행 발굴 시행	• 통일메니페스토 체결 추진 • 통일국민협약추 진 위원회 구성	• 대내의 평화의지 표명 • 대내조치: 감시 및 역압체제 개선, 인권 개선 - 경제·행정 개혁 추진
● 정상회담 정례화, -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 운용적 군비통제	•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 시장경제체제 도 입 유도, 대규모 북한 SOC 개발협 력 프로젝트 추진 주요 철도·도의 연결 및 착주진, 당 북한 산업의 연계 성 강화, 남북 경 제공동체 기구의 제도화	● 남북사회문화협 정(가칭) 체결	●남북 인권대화	• 대북개발지원 전 면 확대 • '대북개발지원중 합계획' 수립, 남 북공동기구 설치	●통일국민협약체결 - 초당적 대북정책 - 추간/구·상찰가동 ● 평화교육확대	• 대외조치: 노동당 규약 개정
● 남북 연합기구 설치	●구조적 군비통제	 남북경제공동체 완성단계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남북한 시장 의 점진적 통합 및 산업구조 조정 남 북경제통합위원 회 설치 및 운영 	• 사회문화공동체 기구의 창설과 사 회문화통합형 교 류·협력 추진	●인권조항 명문화 선언문 채택	•남북경협. 남북경 제공동체 및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구축의 큰 등 속에 서 대북지원 추진	•국가보안법 등 냉 전적 제도개선	• '정상국가'(민주 주의와 시장경제 수립) 도정 시작

V

VI

VII

TX

Χ

VIII

상황별 시나리오

북한의 생존전략,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북전략이 상호작용하여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의 궤적이 결정될 것이지만, 우 리정부의 조정역할이 북한 및 미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추진과정이 전면개선, 선 부분타결 후 지지부진, 북한의 급변사태의 세 가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관련국들의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첫 번째의 전면개선의 시나리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에 주력해야 한다.

1. 전면개선

북한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불능화에 이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아가서 북·미수교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 축되기까지 진전되는 경우이다.

2·13합의의 포괄적 접근법은 한·미동맹의 재편과정이 완료되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것 인 만큼 미국의 탈냉전기 한반도 정책 변화와 병행하여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13합의에서 미국의 포괄적 접근법이 의미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핵을 포기함으로써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제의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지, 북·미수교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V

VI

VIII

IX

북한은 세단계에 걸친 핵폐기 과정을 거치며 북·미수교와 평화 체제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 1단계: BDA 북한계좌 해결 대가로 핵시설 폐쇄·봉인. 그에 대한 대가로 중유 5만 톤 지원
- 2단계: 불능화, 모든 핵시설, 핵프로그램, 핵물질, 핵무기의 신고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서 중유 95만 톤 지원과 더불어 북·미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조건 조성으로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중단 등을 얻어내는 단계.
- 3단계: 핵무기 및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전력문 제를 해결할 경수로 지원과 북·미수교의 실현 및 평화체제의 구축에 호응하는 단계

북한은 이미 BDA 금융제재 해제를 얻어내고 핵시설 폐쇄·봉인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이 북·미수교를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지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북한은 연내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아가서 북한은 경제난 해소, 외교적 고립, 안보불안에서 벗어 남으로써 체제보장의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고 핵을 포기하는 결단 을 내리게 될 것이다.

6자회담 2·13합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이어서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서 북·미수교 및 한반도 평화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임박하였다.

2. 선 부분타결, 후 지지부진

북한이 2·13합의에 규정된 폐쇄·봉인 및 불능화까지는 이행하지만, 완전 핵폐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연하고 요구조건을 높이는 상황으로서 이후의 각종 회담의 정체, 관계개선 정체로 특징지어지는 경우이다. 부시 대통령이 2007년 9월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선택을 하였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선택사항으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 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파들의 반대에 부딪 치거나 그 과정에서 부시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

2·13합의 이행에서 이미 몇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북한이 핵시설, 핵프로그램, 핵물질 및 핵무기의 신고 시에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북·미 양측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물질 또는 플류토늄의 신고량이 국제사회에서 추정한 양보다 현저히 적거나, HEU 신고에서 불성실성이 나타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불능화 단계에서 불능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갈등과 논쟁이 가열되어 6자회담이 몇 차례씩 결렬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6자회담내에서도 북·미간에 책임소재를 상대방에 게 떠넘기면서 회담이 지연되거나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측이 이행해야 할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단계에 이르겠지만 북한측의 불능화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호의 각종 한당이 전체되고 미·부과계 및 임·부과계의 전상한

이후의 각종 회담이 정체되고, 미·북관계 및 일·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이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2008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중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차기정부로 협상 파트너를이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교착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시행정부의 임기내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조치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핵시설 신고 수준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

북한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 미국에서 강경파가 급부상하여 핵 문제가 다시 교착국면으로 변화될 수 있다.

3. 급변사태 발생

2·13합의 이후 해빙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및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추출한 50Kg 상당의 플루토늄과 기 개발한 핵무기 폐기 문제는 향후 북·미간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은 기존 핵무기를 보유한 채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체체 구축 등을 시도하는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핵비확산 체제유지와 일본·한국·대만 등 동북아 핵개발 경쟁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북한에게 50kg 상당의 무기급 플루토늄 및 핵무기를 북·미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김정일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군부 강경파들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내적으로 체제붕괴, 외적으로 안보불안을 촉발할 것으로 간주,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군부 강경파들은 체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온건파들의 한반도해빙분위기에 반발할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가져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상당 규모의 교류·협력 증진 등 엄청난 개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체제 내구력이 고갈되고 있는 북한은 개방으로 남한 및 서구의 고도 발전 산업사회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민중봉기, 사회적 일탈행위, 지배엘리트 분열 등으로 체제붕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강경 군부세력은 절대열위의 경제력에 기초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대남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추론하고 핵무기 포기의 대미 온건정책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경 군부세력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안보위기가 불식되면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등으로 북한 사회에서 누려왔던 특권적 위상이 사라질 것을 우려, 대외 온건노선에 반발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불균형을 평화체제 형태로 대체한다고 할

지라도 동북아안보 상황이 급변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기능할 수 없고, 자국 안보는 핵무기를 포함한 자국의 군사력에 일차적으 로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할 수 있다.

따라서 강경 군부세력이 개방에 따른 체제위기와 핵 포기에 따른 안보위기를 문제삼아 김정일 및 온건파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 할 경우 군부 분열 및 상호물리력 행사, 핵무기 통제 약화, 대량난 민 발생 등으로 체제붕괴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계문제와 어울려져서 급부상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혼란사태가 조성되면 동북아 안보균형에 심 각한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 주변 4강은 해양세력 미국과 일본, 대 륙세력 중국과 러시아로 나누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 개입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관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식 정치 질서를 갖춘 정권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 및 두만강까지 미치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군사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북한군부 분열로 인한 내전, 대량살상무기로 주변국 공격, 대량살상무기(WMD) 밀반출, 북한주민 집단 저항, 대량난민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 군사적 대응계획, 즉 「개념계획 5029」50의 발동을

^{50-「}개념계획 5029」는 북한정권 붕괴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서 북한내부의 ① 쿠테타, 주민 무장 폭동으로 인한 내전사태, ② 북한정권이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③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 ④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한국인 인질사태, ⑤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경우 등 크게 다섯가지 급변 상황을 상정했으나, 한·미간 이견이 커 현재 개념계획 상태로 머물러 있다.

시도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에 맞서서 북한 급변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동에서 이란 핵개발문제가 악화될 경우 이스라엘 및 미국의 군사개입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미연합사에 의해 작계 5029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소속 7함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 조약인 조·중(朝中) 상호우호조약에 의거하여 북한의 요청으로 군사력을 북한에 파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급변사태 상황 시 한국정부는 북한내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현상유지적 차원 보다는 주변 4강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북한 급변사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현상타파전략을 취해야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완충지대로서 한반도 등 통일된 한반도의 주변4강과의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민족문제나 인권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여, 무력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다국적군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군사적 차원의 대응에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팽팽한 이해관계나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주변 4강으로 구성된 다국적군 구성이 실패할 경우 중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역할로서 긴밀한 한·미공조가 요구된다.

Π

V ___

VII

VIII

IX

IX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

1. 양자협상

가. 상하이공동코뮤니케(1972.2.21)와 미·중국 수교

(1) 상하이 공동커뮤니케

(가) 배경

미국과 중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닉슨 미대통령의 방중(1972.2.21~2.28)기간에 중국과 합의하여 나온 성명이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구소련을 제압하고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국역시 지속되고 있는 중·소 분쟁에서 자국의 전략적 비대칭성을 타개하고 경제난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1950년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나) 내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명에서 중·미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한 점이다. 중·미 양국은 사회체제, 외교정책상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영토보존, 다른 국가에 대한 불가침, 동등 호혜, 평화공존차원에서 양국관계가 진전될 것임을 표방한 것이다. 둘째, 대만의 지위에 대해 미·중 양국이 일면합의하고 일면 합의하지 않은 점이다. 미국은 대만의 지위를 중국의 일부(하나의 중국)로 인정하여 대만문제는 중국의 국내문제로 양보하는 대신에 중국이 대만과 평화적인협상에 의해 양안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_211

셋째, 미·중 상하이공동성명에서 중·미 양국은 국제정세의 큰 변화를 검토하고 각국의 입장을 서로 달리 피력한 점이다. 양국은 구소련을 억제할 필요성과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합의를 보았으며 그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고 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북 대화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방한 데 대해, 중국은 1971년 4월 12일에 북한이 제안한 평화통일 8원칙과 유엔사 폐지안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중국은 또한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며 일본 국민의 염원인 자주, 민주, 평화, 중립적인 국가 실현을 지지하여 우회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비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초강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패권주의나 대 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표방하고 모든 국가들의 독립, 해방 추구 노 력은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과 모든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통일원칙을 지지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자주평화 결의도 강력히 지 지하였다.

(다) 특징

미·중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비공식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 접촉,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으로 양국의 문 제를 해결하려 한 점이 특징이었다. 미의회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 여 중국의 대대만 위협을 견제하고 양안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려 한 점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였음에도 관계개선 협상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미·중 양국이 국제적인 무력갈등 위험을 축소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여타 국가(러시아)나 국가집단(한·미, 미·일, 중·북동맹)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표방하였다.

(2) 미·중국 수교 공동성명(1979.1.1)

(가) 배경

1972년 2월 미·중 상하이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수교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방하였음에도 수교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다. 중국 군부는 미국과의 수교는 결국 중국의 자주권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당시 보수파의 득세가 있어 진전이 없었다. 아울러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낮고 미·중수교에 대한 시급성이 크지 않아 수교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중국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의 변경에 따른 정책 전환과 구소련의 동남아 무력 진출 억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 대두로 인해 양국 수교 협상이 급진전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중반 등소평이 집권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하여 대서방 협력외교를 확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지미 카터가 미대통령에 취임 이후 구소련이 베트남의 캄보디아 무력 진출을 지지하였음에도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미군 철군 전략을 표방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카터 미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브레진스키가 북경을 방문하여 미국은 중국과의 조속한 수교를 원한다는 내용을 중국에 통보하였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_213

으며 그 후 6개월간 양국은 수교 협상을 긴밀히 급진전시켰으며 중국 최고지도자인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여 1979년 1월 1일에 수교하 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주요 안건은 미국과 대만의 수교단절이었다.

(나) 내용

미·중 양국은 1972년 상하이공동성명 정신을 바탕으로 함축적으로 수교에 관련된 기본 입장을 표방하였다.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안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하였다.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표출된 한국, 일본, 기타 국가에 대해 미·중 양국의 입장이 표명되지 않아 양국이 이견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견인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문제, 중국의 북한지지, 일본의 군국주의화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수교 성명에 없었다.

양국이 합의를 본 것은 미국이 중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것이다. 또한 미·중 양국은 1979년 3월 1일 부로 양국 수도에 대사관 설립과 대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과 비공식적인 사회, 경제, 문화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표방하였다.

(다) 특징

실질적인 수교 협상은 대통령 특사의 방중으로 시작하여 반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미·중 수교 공동성명은 1972년 2월의 상하이공동성명 보다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다. 수교 이후 미·중 양국은 군사 전략관계 (군 인사 교환, 정보 교환, 정책 조정 등을 포함)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중국이 원하는 미국의 대중 무기 수출은 없었다.

미·중 양국수교 전에 미의회가 기존의 대만관계법에 지속적인 미국의 대대만 군사무기 판매와 평화적인 대만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방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미국의 대대만 안보 보장을 법적으로 강구하였다. 이에 대해 등소평은 미·중 수교를 무효화 하게 될 것이라고 카터 미대통령을 위협하였으나, 카터 대통령이 대만의 보복적인 대중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서 결국은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를 묵인하였다.

대만의 지위에 대해 미·중 양국이 동의하였음에도 미국의 대대만 군사무기 판매를 중국이 허용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수교를통해 전략적 연합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발생으로 미국과의 관계가소원해지기까지 근 10년간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일본과 수교를 성사시켰으며 미국을 위시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나. 베트남 평화협정(1973.1.27)과 미·베트남 수교

(1) 베트남 평화협정

(가) 배경 및 경과

1968년 3월 베트남전 개입으로 고전하던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기 위하여 공산측에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그 결과 5월에 제 1차 평화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상 당자자 간의 의견 차이로 공개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의 키신저는 1969년 8월 비밀협상으로 전환했고 비밀협상과정 에서 미국은 당시 티우 정권인 월남정부를 배제했다.

3년여의 협상을 거쳐 미국과 월맹은 1972년 10월 평화협정 초안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 $_215$

에 합의, 이를 바탕으로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협상기간 동안 월맹은 베트남 민족의 자결권(독립, 주권, 통일, 영토보존)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이미지 부각을 통해 협상의 주도 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려 노력했다. 월맹은 민족주의적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줄기차게 공세적인 정치선전과 군사 공세를 병행하면서 정치문제 우선 해결, 선 원칙 합의 후 세부사항합의를 요구하는 한편, 근본문제의 우선 해결을 계속 요구했다.

(나) 형식 및 내용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월남, 월맹,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고 모두 9개장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 존중, 제2장은 적대행위의 종식과 철군, 제3장은 외국 민간인과 전쟁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제4장은 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제5장은 베트남통일과 남북베트남 관계 규정, 제6장은 공동군사위원회의 설치, 국제감시위원단 구성 및 후속 국제회의 개최, 제7장은 캄보디 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 금지, 제8장은 미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와의 관계 규정, 제9장은 기타이다.

(다) 의미와 교훈

베트남 평화협정은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떼고 월남문제의 월남 화를 선언한 것이다. 평화협정 이전에는 미국이 월남전의 교전당사 자로 월맹과 군사적으로 대결했지만 평화협정으로 월남전이 '월남 민족 내전'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즉 베트남 평화협정으로 베 트남 전쟁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민족내부의 문제로 변화하여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참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체결 2년여 후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외세의간섭없는 무력통일을 달성했다.

이로써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고, 평화는 군사 적 균형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또한 평화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의 이행과 준수를 담보하는 국제적 보장이나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 다는 교훈도 던져 주었다.

(2) 미·베트남 수교

(가) 추진방식

파리평화협정의 초안은 비밀협상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은 민간인 특사나 의회 지도자 등 정부 외 의 중개자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지만 파리평화협정이나 미국 의 대중국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밀주의는 없었다.

(나) 주요 동기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동기는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이익의 일치에 있었다. 미·베트남 관계를 정상화에 이르게 한 데는미국의 대중국정책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했다.즉 냉전 종식후 미국은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빈번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인도차이나반도의 군사강국인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생각했다. 또한 사사건건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베트남도 미국과의협력관계 구축이 대중국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데

평화협정 국제시례 분석**_217** -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전략적 요인 외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미·베트남 관계정상화에 기여했다. 경제부흥을 모색하고 있었던 미국은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미국기업들은 '도이모이'의 시행으로 연평균 8~10%의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산유 잠재력과 경제 개혁 및 구조조정을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기업들은 부시정부때부터 베트남과의 경제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 지위 및 경제원 조의 획득과 차관도입 등이 절실했을 뿐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국가 들의 경제협력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대미 관계정상화가 필요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전략 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다) 의제

미·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에서 다루어진 의제들은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원조, 미군실종자 유해 송환,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및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인권문제등이었고, 이것들은 그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카터정부 동안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은 베트남의 전쟁배상 요구와 캄보디아 침공, 미군실종자 문제의 해결, 미국의 대중 관계정상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통일 직후 베트남은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미국의 양보를 낙관하여 1977년까지 미국에 대하여지나칠 만큼 고집스럽게 전쟁배상과 전후복구 원조를 요구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 역시 베트남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베트남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중국과의 수교에 더욱 큰관심을 보였다.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한 베트남은 입지를 만회하기위해 1978년 11월 3일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했고 이로써 양국간 관계개선은 한 동안 냉각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 초 레이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베트남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고, 그 결과 1987년 이후 베트남의 전례없는 협조로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수차례의 미·베트남 합동조사 진행, 수십구의 유해 미국 송환, 미국에 연고를 가진 베트남인들의 미국이민 허용 등 인도적 문제에서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레이건 정부는 대베트남 관계개선에 대해 국내여론과 중국과의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베트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정치·전략적 문제로서 골치거리였던 캄보디아문제가 1980년대 말 국제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자국군대를 철수시키면서부터이다.

베트남이 이러한 결정을 한 원인은 캄보디아내 반게릴라전 수행의 어려움, 식량기근 및 서구국가들의 원조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 난의 심화, 중국과 화해를 추구한 소련의 압력, 범세계적 탈냉전 추세 및 사회주의권의 개혁적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때문이었다.

세계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베트남 지도부는 대미 관계개선으로 집약되는 대외정책의 수정을 꾀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제반 개

혁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경제난의 타개가 시급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구 선진산업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의 해제가 필요했다. 따라서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경제제재의 완화가 캄보디아문제 및 미군실종자 문제의 해결과 맞물려 미·베트남 간 현안의 초점이 되었다.

(라) 의제해결 방식

미국의 대 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미국정부가 관계개선의 원칙을 세워놓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려 했고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협상카드의 핵심은 경제제재의 완화였고 원칙의 핵심은 캄보디 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트남의 협조와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 해결이었다. 특히 미국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의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고,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뒤에는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 및 캄보디아 중립정부 수립을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고집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미국계 혼혈 베트남인들의 미국이민 문제와 월남정부에 협조했던 정치범들의 석방문제 등을 인도적 문제로서 제기했다.

미·베트남관계는 1991년 4월에 유해송환을 위한 임시사무소가 설치되고 10월 23일 파리에서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급 진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정부는 하나하나 해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캄보디아문제가 반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베트남에 대한 압력수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경제제재의 완화를 통하여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려 했다.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일 필요 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평화구축과 실종자 문제 해결에 대한 베트남의 확실한 태도와 성실한 노력을 보장받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미국은 각각의 현안에 대한 베트남의 단계별 약속을 받아내고 그 이행을 확인한 후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각 단계별 약속을 베트남이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미·베트남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했다.

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1979.3.26)

(1) 배경

이집트는 4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전 분위기와 경제 피폐로 인해서 전쟁의 종식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으며, 4차 중동전쟁에서 선전함으로써 중동에서의 이집트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도 중동문제 해결에 있 어서 UN 등에 의한 포괄적 접근보다는 개별 양자협상이 자국에 유 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석유수출기구의 석유무기화 전략에 따른 유가상승은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중재 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게 되었다.

(2) 내용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평화지대 설정문제와 평화관리기구 및 유엔감시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평화지대 는 양국의 합의하에 각각 영토내 부대배치 제한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며, 시나이 반도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집트 본토와 가까운 순으로 A지역에는 1개 보병사단, B지역에는 국경수비대 4개 대대, C지역에는 유엔군 및 이집트 경찰 주둔, D지역에는 이스라엘 보병 4개 대대와 유엔감시단을 주둔하는 것이었다. 둘째, 평화관리기구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완료될 때 공동위원회 기능을 양국간의 연락사무소 체계에 이임하는 것이었다. 공동위원회는 조약비준서 교환 즉시 구성되어 이스라엘군의 시나이 반도 철수가 완료될 때 해체하기로 하며, 양국의 상위 공직자를 대표로 하는 대표부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셋째, 유엔 감시기능은 조약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방지를 위한 유엔군 및 감시단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써, 유엔군 및 감시단은 상임이사국 이외에서 충원하며, 양국은 유엔에게 유엔군 및 감시단의 지휘권을 일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이스라엘의 수에즈 운하 항해를 보장하고 양국연안 공해상의 자유항해를 상호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연안 공해상의 자유항해를 상호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며, 미국은 증인 자격으로 하기서명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시사점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평화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정 일방의 주도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집트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보다 극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정적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평화협상을 제의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평화협정의 합의·이행에 결정적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캠프데이비드 별장에 양국 정 상을 초청, 쟁점사항에 대한 문안 조정 및 평화협정 본문에 증인자 격으로 하기서명하였으며, 평화협정 체결 당시 이집트, 이스라엘 양국에 연간 22~25억불의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시나이반도 완충 지대 운영비용, 정찰활동 지원 및 경비병력 파견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의 조정노력은 협상추진에 나선 양국 지도자의 국내 정치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원용,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반환 및 이집트의 이스라엘국가인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무마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유엔은 3차 중동전쟁(6일전쟁) 직후인 1967년 11월 안보리결의 242호를 통해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 금지 및 이스라엘의 생존권 인정 등을 권고한 것이다.

넷째, 평화협정 체결은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동 협정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정치·군사적 현안해결에 치중하면서 교류·협력 등 실질관계 개선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며, 이는 이스라엘·요르단이 평화협정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 양국 평화를 증진시킨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I II

Ш

V

VI

VIII

IX

X

2. 다자협상

가. 보스니아 평화협정(1995.12.14) : 보스니아 내전과 데이튼 평화협정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마케도니아의 6공화국과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2개의 자 치주로 구성되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각 공화 국내 반세르비아 민족주의로 인해 해체되면서 인종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즉각 군사 공격을 감행하였다. 민족적 동질 성이 갓하 슬로베니아보다는 세르비아 민족이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는 보다 격렬히 대응 하였으나, 이들 두 나라는 비교적 용이하게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51 한편, 보스니아와 자치주의 지위를 상실한 코소보 지역에서 인종 갈등은 내전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하였다. 보스니아 는 4백 4십만 명의 인구 중,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보다는 민족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회교도들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세르비아인이 31%, 크로아티아인이 17%를 차지하였다. 1991년 3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에 보스니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1992년 4월 7일 미국과 유럽이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유고연방의 밀로셰비치 (Slobodan Milosevic) 대통령의 무기 제공 등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는 회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함으로써 내

⁵¹⁻ 슬로베니아는 인구의 91%가 슬로베니아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세르비아가 영토를 주장할 근거도 없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1981년 인구센 서스에서 4백 6십만명 중 5십만명이 세르비아민족이었다.

전으로 발전하였다. 내전초기 세르비아계는 보스니아 영토의 70%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회교도들을 몰아내고 신유고연방과 대(大)세르비아를 이루고자 하였다. 유혈사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후 1995년 5월 마침내 나토군은 세르비아 군사거점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으며 11월 21일 데이튼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데이튼 평화협정(Peace Agreements between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Dayton, November 21, 1995)의 주요 내용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나토군이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로 들어갔다. 아울러 유엔임시행정청(UNMIBH)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보스니아 재건을 위해서 들어갔다. 52

데이튼 평화협정에서는 2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에 집중한 나머지 코소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로 인한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된다.⁵³ 더욱이 코소보 사태의 핵심인물인 밀로세비치는 데이튼 평화협정의 성공적 이행에 중심적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신유고연방은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빠르게 이루었다.

코소보는 200만 주민의 90%가 알바니아인으로 1974년부터 자치를 인정받았으나,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 다수민족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불평이 고조되면서 인종갈등이

⁵²⁻ 데이튼 평화협정 이행감시(고위대표부, 약칭 OHR), 법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정비(UNMIBH), 선거 등을 통한 민주화제도 정착(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난민 처우개선(UNHCR), 평화유지활동(SFOR)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⁵³- Alex J. Bellamy,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ian, 2002), p. 38.

시작되었다. 1987년 4월 코소보를 방문한 밀로세비치는 세르비아 민족 앞에서 "아무도 때리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감정적 연설을 통해 세르비아민족의 수호자로 평판을 쌓았다. 1989년 밀로셰비치는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코소보 알바니아인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였고 1992년 마침내 코소보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내전에 몰두하면서 잠잠하던 코소보사태는 1998년 세르비아가 코소보내 알바니아 게릴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과 '인종청소'로 인해 코소보 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54

나토군은 코소보의 자치정부 인정과 코소보내 평화유지군의 주문을 골자로 하는 랑부예 평화협정(Kosovo Peace Agreement, Rambouillet, 1999.2.23)을 세르비아가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밀로세비치가 이를 거부하자 나토군은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1999년 3월 24일 세르비아에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는 나토 창설 이후 최초의 직접적인 대규모 무력개입으로써 코소보 사태는 지역분쟁에서 국제문제로 비화하게되었다. 또한 1999년 5월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밀로셰비치를 전쟁범죄, 집단학살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하였다.

1999년 6월 9일 세르비아는 나토군의 공습에 굴복하여 군사협정문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54- 1999}년 6월까지 세르비아계의 인종청소로 인해 85만명의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코소보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만 명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June 9, 1999)에 합의하였다. 군사협정문은 코소보로부터 세르비아 군의 즉각 철수와 유엔평화유지군의 코소보 주둔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전협정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루 뒤엔 유엔안보리결의 1244에 따라 나토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어 코소보에 주둔하게 된다. 평화유지군은 난민의 무사귀환, 코소보의 치안유지, 자치정부 수립, 기간시설 복구 등을 관장하는 군사정부의 역할을 하였다.

밀로세비치는 2000년 대선 후 민중봉기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난 후 2001년 4월 세르비아경찰에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 치된 유고문제를 위한 임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former Yugoslavia, ICTY)에서 전범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3월 11일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발칸사태는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개입한 사례라고할 수 있다. 세르비아 내전이나 코소보 사태 모두 나토군의 공습에의해 종식될 수 있었다. 또한 1999년의 군사협정문은 일종의 정전협정이나 이후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평화협정이 반드시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발칸사태는 현실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회가 코소보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데이튼 협정 다음해인 1996년 초로서, 주관심은 인권문제 보다는 코소보 난민이 서유럽으로 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소보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규모에 비하면 서방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⁵⁶ 1995년 발칸반도 안정에 주

⁵⁵- Bellamy,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p. 56.

⁵⁶- Howard Clark, *Civil Resistance in Kosovo* (London: Pluto Press, 2000), p. 158.

요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던 밀로세비치가 4년 후 전범으로 몰린 것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정치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헤이그 전쟁법정은 2차 세계대전 후 세워진 전쟁법정 후 최 초의 전쟁법정으로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논의를 자극하게 되었다.

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헬싱키의정서

(1) CSCE/OSCE

- (가) CSCE의 형성배경
 - 1) 추진과정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간에 극심했던 냉전의 탈출구로 모색되었다. 전쟁의 산물로 재편된 유럽의 국경선과 동서독의 분할을 확정하고, 동구와서방 상호간에 위협을 경감시켜 대립적 공존 속에서 유럽의 현상유지를 인정하며, 더 이상 적대적 대결상황의 지속이 무용함을 인식한 결과로 태동한 동·서간 화해의 산물이었다.

유럽내 지역안보에 관한 최초의 발상은 1954년 소련 외무장관 몰로트(V. M. Molotov)가 "전 유럽안보체제(Pan-European Security System)"의 구성을 염두에 둔 「유럽안전보장에 관한 전유럽회의」의 제안이며, 이후 소련은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전 유럽안보회의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어서 1966년 브레즈네프는 「전 유럽의 정치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All-European Meeting

on Political Detènte and Economic Cooperation)」를, 소련이 중심이 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자문위원회(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는 1966년 7월 미국을 제외한 유럽인들만의 '유럽 안보협력문제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Question of European Security and Cooperation)의 개최를 서방측에 제의하였다. 소련의의도는 ① 전후 유럽에서 획득한 소련의 기득권, 즉 동구권 장악을인정받고,② 궁극적으로 중립화를 염두에 둔 동·서독으로 나누어진 2개의 독일현실을 서방으로부터 승인받으며,③ 유럽에서 미국을 배제시키려는 것이었다.

1969년 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측 제안에 대해 유럽안보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물론 캐나다의 포함, 동·서독간의 관계개선, 베를린문제의 해결, 동·서간 사람과 정보 및 이념의 자유로운이동, 주요 군사활동의 사전통보, 군사기동훈련에 참관인 참석, 관측소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70년 5월에는 무력 불사용,경제·기술·과학·문화·인권·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국가간의 관계 규범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969년부터 시작된 서독 빌리 브란트(Willy Brant) 수상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유럽내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독이 전후에 형성된 국경선을 인정하는 「독·소 불가침조약」(1970.8), 「독·폴 불가침조약」(1970.12)에 이어 「동·서독 기본조약」(1972.12)을 체결함으로써 동·서간의 상호접근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서방의 반응에 대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70년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참가를 허용하는 「유럽주둔 외국군 감축위원회 및 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교류위원회」의 창설을 주

· V

VI

T/III

IX

X

장하면서, 유럽의 현상인정, 평화관계 촉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위협 및 무력행사 포기, 경제문제 등 제 분야의 협력강화를 천명하였다. NATO는 이에 화답하여 1971년 유럽안보협력의 조기 개최 입장을 확인하고, 4개의 의제 - 안보문제, 인적 이동 및 정보교류와 문화관계, 경제·과학·기술 및 학술분야의 협력, 인도적 분야의개선 -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한 CSCE 대사급 실무준비회의가 1973년 7월 3일 헬싱키에서 공식 개막되었다. 이후 외무장관회의(1973.7. 3~7), 대사급회의(1973.9.18~1975.7.21)를 거쳐 그 결과가 1975년 8월 1일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 정상회담에서「헬싱키 최종합의서」 (Helsinki Final Act)로 채택됨으로서 CSCSE → CSCE가 출범하게 되었다.

2) 출범배경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서 CSCE가 형성된 배경에는 데탕트라는 긍정적인 국제환경, 미·소간의 전략적 선택, 동서 양진영 뿐만 아니라 중립국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동의와 지지, 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 크게 4가지가 작용하였다.

가) 데탕트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동서간 진영대립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세계를 양대진영으로 분할하였으며, 미·소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공포의 균형상태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는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국에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여 군사력

감축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긴장완화의 필요성과 미·소간 세력균형이 없었다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제안 으로 시작된 CSCE 형성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선택

① 소련

1962년 쿠바사태, 동유럽에서 나타난 헝가리(1956)와 체코슬로 바키아(1968)의 자유화운동과 같은 일련의 사건은 소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결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60년대에 지속된 중·소간의 이념분쟁은 무력갈등으로 비화·장기화되면서 소련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대립해야하는, 2개의 전선을 갖게 되는 부담을 가졌다. 또한 소련은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 유지에 국내자원을 대거 동원하면서 경제적 피폐가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국내외적 상황은 미국과의 접촉 및 유럽지역에서의 안정을 강제하였고, 결국 소련은 평화공존노선을 전개하여 국내경제의 회복과 전후 국제질서의 안정을 통해 국제정치현실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② 미국

미국이 1950년대와 달리 60년대 말부터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제 안한 CSCE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다음의 사정에서 기인하 였다. 우선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베트남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내 외적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쳤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지 출, 서유럽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기축통 화로서 달러의 위상 약화 등 경제문제에도 직면하였다. 한편 유럽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_231

에서는 프랑스가 데탕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독자성의 기치아래 NATO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정치·경제 및 군사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닉슨의 '괌 독트린」(1969)과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71, 1973), 그리고 미·중 관계개선 및 미·소간 대화 움직임은 이런 분위기에서 추진되었다.

③ 서유럽

서독의 경우 브란트 수상이 집권하면서 이전 정권의 국경변경 및 동독과의 관계단절 입장에서 기존 국경선의 유지 및 동독과의 관계 개선으로 선회하였다.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해 오래 전부터 경쟁관계에 있던 프랑스는 물론, 서독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소련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영국 역시 유럽내 현상유지 속의 변화를 다자안보기구를 통해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CSCE에 동참하게 되었다.

다)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경험

유럽국가들은 2차 대전까지 유럽대륙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갈등으로 유럽인들이 겪은 참상과 피해를 상기하며 비록 냉전체제 하에서 유럽이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전후 유럽질서의 안정을 통해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들 중 어느 한 나라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현상타파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미·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유럽의 질서에 대한 현상유지는 미국과 소련 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선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유럽인들의 이

러한 안정희구는 미·소간의 세력균형과 맞물려 양진영이 대립 속에 대화하는 모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은 CSCE의 형성뿐만 아니라, CSCE가 견고한 냉전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탈냉전이란 국제환경의 부침을 거치는 약 30년 동안 제도화·발전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회의체 성격으로 출발한 CSCE가 1995년에는 "OSCE(유럽 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란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었다. CSCE의 합의서가 비록조약 또는 협정서의 형식이 아니라 단순한 공동정책 표명 (Statement of Common Policy)의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뼈저리게 불행했던 역사를 체험한 참여국들이 C(S)BM 및 기타 합의사항들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냉전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유럽에서의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였고, CSCE/OSCE는 유럽 안보의 제도적 장치로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라) 중립국의 역할

CSCE 제도화에 중립국들이 촉매적인 역할을 하였다. CSCE 구도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적 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참여국들 간의 관계가 평등하다. 이 점은 CSCE 형성·제도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대립이 빚어낼 최악의 사태를 막는데, 양진영 또는 두 강대국 간의 소모적인 대결을 중재·완화하여 CSCE/OSCE가 유명무실화되는 사태를 막고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립국들과 비동맹국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실제로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양측이 CSCE의 필요성과 개최에 대하여의 견대립을 보이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핀란드는 이 회의를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_233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CSCE 형성을 위한 준비회의 성사에 기폭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CSCE 형성뿐 아니라 전개과정 속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 중립 및 비동맹국가들은 이견이 많았던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양진영으로 하여금 타협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념과 대안을 제시하여 협상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CSCE/OSCE의 발전과정

1) 헬싱키 최종의정서

1975년 8월 1일 채택된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유럽 33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은 동서화해의 평화조약이며, CSCE의 기본정신과 제 원칙을 담고 있다. 최종의정서는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의성격을 가졌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로 출범한 CSCE는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진영이 포괄되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적 안보협력회의라는 의의를 가졌다. CSCE는 1995년부터 명칭을 OSCE로 개칭하여 오늘날 전 유럽국가를 포함하여 56개국(2007년 9월 현재)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헬싱키최종의정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인권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포괄하는 세 개의 범주(Basket)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범주는 유럽의 안전보장에 관한 제 문제를 규정하였고, 두 번째 범주는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세 번째 범주는 인도주의적 접촉,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 교육·문화의 교류 등을

다루었다.

특히 첫 번째 범주에서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10대 원칙으로 ① 주권평등 및 상호존중, ② 무력위협 및 사용 억제, ③ 국경불가침, ④ 영토보전, 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 내정불간섭, ⑦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 ⑧ 모든 민족의 평등권과 자율권 존중, ⑨ 국가간 협력증진, ⑩ 국제법상 모든 의무 이행 등을 채택하였다. 이들 원칙은 소련이 1954년 이래 추구해온 전후 국경선의 인정과 현상유지정책을 서방측이 승인한 대신, 서방측이 요구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국가 간의 협력 등을 소련이 수용한 타협의 결과였다.

특히 첫 번째 범주인 유럽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무력분쟁의 위험이나 오해·오판의 위험을 감소하고, 긴장의 원인제거와 세계평화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의 제 측면에 관한 문서」는 군비통제 가운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를 포함한 것이었다. 이는 군사력의 감축과 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군축(Disarmament)인 "구조적 군비통제"와는 다른 "운용적 군비통제"의 선구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발전과정

CSCE 프로세스는 그 자체가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긴장완화정책의 지속과 이행의 과정이었고 참여국들에 의해 유럽적 평화질서를 위한 초석으로 여겨졌다. CSCE의 과정과 모든 군축을 위한 협상들은 당시 지배적 국제질서였던 양극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CSCE 과정은 국제관계를 문명화, 계몽화, 안정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П

7

VΙ

VIII

IX

X

가장 중요했던 성과는 양 적대적 진영에 속했던 참여국들 간의 지속적, 점진적인 접근 그리고 갈등의 축소였다.

이와 같이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CSCE가 제도화된 국제협력의 모델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CSCE는 냉전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가간 상호 정보교류의 중개자, 촉매자로 역할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의 도래에 따른 불안정에 대한 국가들의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

CSCE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의와 전문가 회동을 통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들, 규범들, 행동양식 및 결정도출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참여국들이 지키는 가운데 하나의 "규정집합체"(Regelwerk)로 성장하였다. 참여국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 과정에서 상호적 차원에서 예견되어 참여국간의 관계가 안정화되었고, 실제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CSCE는 하나의 제도, 잘 규정화된 지속적인 협력체로서 국제관계상 독자적인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

CSCE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강점은 안보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이른바 "범주"(Basket)라 불리는 각 분야로 묶어 논의를 진행한데 있었다. 이들 분야별 범주협상에는 국제정치상의 다차원성과 상호의존성이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어느 한 국가도 이탈하지 않았다. 국제레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CSCE가 이룩한가장 큰 성과는 동서 간의 대립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화에 기여한군비통제, 그리고 동구사회주의 사회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군비통제

「헬싱키최종의정서」(1975년)에서 합의된 자발적인 CBM들은 NATO를 한편으로 그리고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군사적 활동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후 1986년 「스톡홀름합의」에 의해 "신뢰구축조치"(CBM)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신뢰안보구축조치"(CSBM)란 개념으로 정립되어지게 되었고, 1989년 「빈합의」에서 CSBM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CSCE는 군비통제분야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헬싱키 CBM체제로부터 스톡홀름 CSBM체제를 거쳐 빈 CSBM체제에 이르는 발전을 개관하면 <표 IX-1>과 같다. 예를 들어 군비통제의 대상 영역이 "참여국 영토" → "대서양 우랄서부"까지 확장되었고,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의 경우, "병력 25,000이상일 경우 21일전" → "병력 9,000이상일 경우 42일전"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V

V ____

VII

VIII

IX

X

<표 IX-1> CBM/CSBM 체제의 발전

구 분	헬싱키 CBM체제(1975)	스톡홀름 CSBM체제(1986)	빈 CSBM체제(1989)
의무정도 (Degree of Obligation)	선언적 (자발적)	정치적 구속력 (의무적)	정치적 구속력 (의무적)
적용지역 (Area of Application)	참여국 영토 (해상, 공중포함)	전유럽 지역 (대서양에서 우랄 서부까지)	전유럽 지역 (대서양에서 우랄 서부까지)
주요내용 (Subject of Measures)	● 군사적 기동 - 지상군 - 해병부대 - 공수부대	● 야전군사 활동- 지상군의 연습이동, 집결- 상륙작전- 공습작전	 군대 구조 국방예산 의사소통, 접촉, 협력 협의
조치형태 (Type of Measures)	 사전통보 25,000 이상 21일전 참관단 교환 주요군사이동의 사전통보 	 사전통보 - 13,000 이상 - 42일전 연간 훈련예정표 교환 참관 강제사찰 제한조항 	 사전통보 9,000 이상 42일전 연례정보교환/평가 방문 스톡홀름 협정의 향상 협조조치 우발적 군사활동 대비 장치

나) 인권 개선

1975년의 「헬싱키최종의정서」에 인권관련 합의를 규정함으로써 당시 공산주의사회였던 동부유럽은 물론 소련 내에 민주화의 운동이 몰아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CSCE는 그 발전 과정에서 특히 소수민족의 권리 신장, 이산가족의 재결합, 자유로운 여행 등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즉 CSCE가 처음부터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서 혹은 블럭간 대결을 극복하려는 수단으로서 발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태동부터 공산주의세계를 근본부터 뒤흔들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헬싱키최종의정서」의 인권관련 규정이 명문화되고 이후 전개된 CSCE 협상과정을 통해 서구 자유민주주의사회와 맑스주의 사회주의사회가 주장한 인권개념에 대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존중"이라는 입장이 관철되었다. 57 이로써 인권은 양 체제 공히 기본적인 가치로 이해되어 특정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로서 규정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해석은 서구자유주의의 입장과 합치하는 것이었다.

인권적 측면에서 CSCE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성과는 어느 한 국가내 인권침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공개적인 논의가 내정간섭, 즉「헬싱키최종의정서」10대 원칙 가운데 "⑥ 내정불간섭"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타국의 인권문제, 즉 국내적 상황에 관한 공개적인 언급이 CSCE의 전통이 되었다.

(다) CSCE/OSCE의 특징

1) 협력안보

지역다자안보협력체로 성장한 CSCE/OSCE는 안보문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으로 볼 때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예방 안보(Preventive Cooperation)의 특징을 보여준다. 협력안보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다수 국가 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에 초점을 두며, 이 점에서 집단안보체제와는 달리 침

⁵⁷⁻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인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리로 받아들인 반면, 맑스주의자들은 체제집단적으로 계급의 철폐를 통해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고, 양쪽은 모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회체제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략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배제된다. 협력안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국간 "대화의 습관"(Habit of Dialogue)의 축적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상호 신뢰구축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는 데 중점을 둔다.

냉전시대에 출발한 CSCE/OSCE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인 "집 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크 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집단안보,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는 개념적으로 협력안보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집단안보는 침략국에 대한 집단적 대응수단을 강구하며, 침략행위 발생전까지 적과 우방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어떤 가상 적을 상정하지 않고 침략국이 발생할 경우에 침략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후 창설되었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엔, 즉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다.

집단방위는 군사동맹체를 위주로 하여 가상적국을 전제로 하며, 평시에도 적과 우방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NATO, 바르샤바조 약기구, 한·미동맹 등이 그 예이다. 즉 동맹에 속해 있는 어느 1국에 대한 침략에 대해 동맹국 전체가 응징하는 것이다.

<그림 IX-1>은 협력안보, 집단방위, 집단안보의 개념적 구분을 보여준다. 왼편의 집단방위로부터 집단안보 그리고 협력안보로 전이됨에 따라 사선의 위쪽에 위치하는 대결(Confrontation) 영역은 점점 감소하고 사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협력(Cooperation) 영역은 점점 증가된다. 반대로 오른편의 협력안보로부터 집단안보 그리고 집단방위로 이동시는 협력영역이 점점 감소하고 대결영역은 점점 커진다.

<그림 IX-1> 안보협력의 구분

대결(Confrontation) 협력(Cooperation)						
집단방위	← 집단안보 →	협력안보				
$\leftarrow \text{(NATO)} \rightarrow $	(UN)	\leftarrow $\begin{array}{c} \text{CSCS} \\ \text{(OSCE)} \end{array}$ \rightarrow				
군비통제 평화적해결 (Arms/Force Control) (Peaceful Settlement)						

출처: Heinz Vetschera, Instrument of Cooperative Security in the CSCE Framework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Emergency Mechanisms and Conflict Prevention (Vienna: CSCE Secretariat, 1994), pp. 2~3: 이원 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23집 (2001), p. 163에서 재인용.

2) 의제의 포괄성

CSCE/OSCE는 처음부터 냉전체제하에서 대립하는 두 체제에 속한 국가들 간에 군사안보는 물론 기타 분야에서도 공동협력을 논 의하는,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포괄적인 협의기구를 형성하고 자 하였다. 의제의 포괄성은 동서 양진영의 이념적 대결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각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후 특정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참여국들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협상의제의 연계성

CSCE/OSCE에서는 각 진영이 중점을 두고 관철하고자 했던 의제들을 상호 연계시켜 상호 "Win-Win"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의제의 연계는 일방의 주장 관철과 상대방의 반발을 억제하고, 상호간의 부분 양보를 통한 공동 이익의 추구에 적합한 협상 방법이

었다. CSCE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은 적대적 진영이 참여하는 협상의 무대가 "Zero-Sum"적 양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주고 받기 방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CSCE라는 무대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SCE가 중도하차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4) 점진적 발전·제도화

CSCE/OSCE는 협력안보 및 공동안보의 시각에서 포괄적인 의제를 장기적·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1954년 소련이 최초로 제의한 이래 21년 만에 최종의정서(Final Act)가 합의되었고, 최종의정서 체결 후 15년 만에 진정한 동·서화합과 재래군비감축, CSBM 등이 이루어졌으며, 출범 20년인 1995년에 OSCE로 국제기구화 되었다.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과 제도화의 과정은 앞서 살펴본 군비통제분야와 인권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5) 전원일치제

CSCE/OSCE는 결정방식으로 참여국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입장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원일치제"(Consensus)를 채택하여 어느 한 국가도 반대하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과거 동서간 냉전시체제경쟁의 산물로 정착된 만장일치의 원칙이 오늘날 OSCE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OSCE의 결정과정에서러시아, 프랑스, 독일 또는 영국 같은 나라가 자국의 의지에 반하는결의가 채택될 경우 과연 여기에 따를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OSCE의 역할은 크게 훼손당할 것

이기 때문에 전원일치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라) 지역안보협력체제로서 OSCE

CSCE를 제도화한 국제기구인 OSCE는 유엔헌장 7조에 의거하여 지역국가들이 이룩한 "합의"이며, 지역안보와 세계안보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의 평화유지는 유엔이란 "세계적 관리구조"(Global Governance Structure)와 더불어OSCE의 안보정책적 지역통합계획에 의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유엔과 OSCE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분업적 역할분담의 진전은지역적 안보제도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는 유엔의 재정적 역량에 대한 고려의 결과임과 동시에, 역외의 외부적 이해관계에 의한 역내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자는데 유럽국가들이 동의한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측면에서 참여국들의 동의에 의해 행사되는 지역적 갈등해소기제(Konfliktlösungsmechanismus)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종국에는 공동의 가치체계를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부수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어떠한 공동의 가치기준이 NATO나 EU 회원국들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OSCE 참여국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으며, 두 적대적 동맹간의 관계에서 태동한 CSCE가 유럽국가들간 공동의 가치체계에 기초한 지역다자안보체제로 자리잡았다.

제도화된 OSCE는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정치상황, 특히 유럽에서의 변화된 정치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목표를 정립하였다. OSCE의 새로운 역할은 П

V

VI

VIII

ΙX

X

① 갈등예방, 위기관리, 갈등이후 재건, ② 안보문제 관련 기구들과 다양한 협력, ③ 협력적 안보의 틀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대(Plattform) 등으로 부여되었다.

NATO의 동진(東進), 많은 중부 및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다시 강화된 러시아와 유럽간의 관계는 OSCE의 임무영역을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2) 동북아안보협력: CSCE/OSCE가 주는 의미와 추진방향 (가) CSCE/OSCE가 주는 의미

CSCE/OSCE는 냉전이 준엄했던 시기에 동서 양 진영에 속했던 35개의 국가들이 유럽에서의 지역평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채택한 '헬싱키최종의정서 로 출범하였고,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국제레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유럽대륙에는 기독교와 같은 동일한 문화적 기반이 존재했고,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현상유지(status quo)가 당시에 자의든 타의든 받아들여 졌으며, 국가들이 육지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등과 같은 동북아지역과의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국들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을 심화시켰으며, 인권의 개선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음미한다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바람직한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의 성장을 지향한다면 CSCE/OSCE는 매우유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6자회담의2·13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

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평화·안보·협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인식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제거된 구조적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안보라는 개념을 오늘날 군사안보와 더불어 경제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에 관한 작금의 논의는 정치·군사·경제·인권·과학기술·환경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상생의 공존을 위해 형성해야 할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를 위한 디딤돌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CSCE/OSCE의 공과가 창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안보협력의 가능성

1) 역내 국가들의 관심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탈냉전 시기에 북한 핵문제, 군비 경쟁 등 동북아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지역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적 안보협력접근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 하여 경제안보, 테러, 환경보호, 난민, 마약밀매 등 범세계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비군사적 또는 비전략적 안보문 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즉 기존 군사위주의 양 자간 안보관계의 유지만으로 이러한 광역화되고 있는 포괄적 안보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CSCE/OSCE가 공존공영의 평화적 지역질서의 구축이라는 "지역공동선"(Regional Collective Good)을 창출하였다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는 이러한 고려에서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선택의 출발점이라 평가될 수 있다.

2) 한국의 관심

한국이 동북아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는 이상의 고려 외에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지역협력에 북 하을 동참시키는데 있다.

첫째, 남북한 간의 대화채널이 막힐 경우 다자간 틀을 활용하여 북한이 외부 세계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방·개혁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다자적 차원에서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포함하는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안보증진과 평화정착을 이룩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에서의 돌발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에 동북아 안보협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통일과정에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안보체제 정립과 발전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 동북아안보협력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첫째, 북한핵문제, 테러문제, 환경문제 등 동북아 역내 초국가적 안보이슈를 감안하여 「동북아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한다. 둘째, 동북아역내 국가들이 상생의 공존을 위해 군사안보, 경제 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등 포괄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한다.

셋째, 2·13합의에 따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관한 작금의 논 의를 동북아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되, 동북아 안보현안 전반에 걸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 담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추진한다.

2) 세부추진방향

첫째, 참가 모든 국가들의 이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제를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다자주의의 경험이 일천하고 쌍무적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북아에서 어느 특정 국가에게 민감한 의제 또는 양자차원에서 분쟁 및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의제를 주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다자협력의 성공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다. CSCE/OSCE와 같이 군비통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경제·과학기술·인권 등에 관한 포괄적인 지역협력문제를 다름으로써 총체적 지역협의체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논의되는 어떠한 의제에 관해서도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결정사항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의견이라도 존중한다는 "전원일치제"를 운영한다. 영토문제, 환경문제 등모든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되, 참여국 모두가 합의하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만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준수를 요구한다.

셋째, 한국이 동북아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촉매국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 냉전시대에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동맹 속에서도 소련 및 동구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한 서독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이 미·일·중·러 등 동북아 강대세력들 간의 상호 의혹과 의구심, 견제의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의 공동선인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의 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넷째,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동북아 최대의 화두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북아안보협력의 형태를 초기에는 대화 형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다자간 협력레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 는 점진주의 접근전략을 취한다.

다섯째, 한반도문제가 동북아안보협력의 중심의제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 동북아안보협력의 주요 의제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안정과 발전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한반도문제 해 결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한 반도문제는 의제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만을 위한 회담의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기존의 아시아지역 다자안보논의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현재 ARF에서 한반도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 보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문제로 특정한 보다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즉 동북아안보협력이 AR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출발 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현재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 에서의 안보협력대화의 무대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맺음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이뤄야할 시대적 요청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화가 우려된다. 국내에서도 핵무장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할 때, 남북한과 미·일·중·러 6국체제는 전통적 이중삼각대립구도를 지속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 군사력 경쟁과 더불어 다시 해양 일본·미국 세력 대 대륙 중국·러시아 세력의 각축이 심화될 경우, 동아시아 평화는 더욱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주변 4국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쉽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비록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남·북·미·일·중·러 모두 동의하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에 따라 상이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발표한 당장의 통일보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구현하는 평화·점진적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활용하여 체제안보를 최대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화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강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체제변환을 목표로 하면서 대북 대화·압박 병행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역내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북핵문제의 최소비용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 당사자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북아 지

역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익을 담당하려는 모습이다. 일본은 아베정권에서 후쿠다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다소 전 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문제와 납치문제의 선행적 해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북방한계선 (NLL) 협의문제와 종전선언 추진문제가 대선 정국 및 부처 주도권 경쟁(통일부 대 국방부, 외교통상부 대 국가안전보장회의)과 겹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 정략적 대립과 정부 부처 간 마찰이 일어나는 어려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운이 분명 다가오고 있다. 북핵불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10·3합의'와 남북관계를 도약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2007 남북정상선언'(10·4선언) 때문이다. 이 같은 국제 및 남북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적 문제이자, 동시에 미·일·중·러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원의 수레바퀴와 국제적 차원의 수레바퀴가 함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세번의 남북정상회담 가운데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1994년 불발의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제네바 합의(10월)로 국제적 수레바퀴는 잘 돌아갔으나, 김일성 사망(7월)으로 민족적 수레바퀴가 돌지 못했다. 2000년 정상회담에 서는 6·15공동선언이 도출되어 민족적 수레바퀴는 잘 돌아갔으나, 2001년 1월 네오콘 중심의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적 수레바퀴가 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서는 두 바퀴가 잘 돌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다. 북핵 불능화를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10·3합의')로 국제 수레바퀴가 잘 돌기 시작했고, '10·4선언'으로 민족 수레바퀴가 더욱 잘 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도 실기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북·미 협상 실패,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 이행 실패, 2000년 클린턴정부와의 관계정상화 실패를 2007~8년 관계개선 이행과정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은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시기가 완전히 무르익은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시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비록더디지만, 6자회담과 더불어 다양한 남북회담과 북·미 관계개선 회담과 같은 작은 걸음을 계속 내디뎌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가려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준비한후, 많은 난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끈기 있게 실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아직까지 이룩하지못함은 국내·외적으로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끈기 있게 실천을 못하고있기 때문인지 좀 더 차분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단순히 선·후 관계로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 목표로 분명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정상화·동북아 협력체제 구축·국내조치(국내통일기반 공고화 및 북한의 변화) 등 5대 목표를 균형·병행·창의·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을

I П

П

Ţ

V I

VIII

Χ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내용도 각각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대화·압박 병행전략을, 남북관계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선도분야 집중 추진을 통해 타 분야견인을 이끌어 내는 상징전략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유인전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접근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통일기반 공고화를 위해서는 남남화합을 목표로 제 사회정치적 세력간에 합의도출 및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최소 합의전략을 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온정책을 병행해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상응(Tit for Tat)전략과 북한이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이를 철저하게무시하는 무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세부 실천방안들을 북핵문제 진전을 기준으로 4단계(핵 동결 및 봉인단계, 핵 불능화 단계, 핵 폐기 단계, 핵 폐기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여건조성 단계로서, 핵 시 설 폐쇄 및 재가동을 막기 위한 봉인장치를 설치하고 감시와 검증 을 실시한다. 이 시기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한·미간에는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북· 미간에는 상호 특사를 교환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 중 일 부를 해제하도록 하며, 국제사회는 BDA문제를 풀고 대북에너지 지 원을 개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대 화를 재개할 것과 3대경협사업 지속 및 민간차원의 경협사업 확대 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노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남북한 내부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남한에게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북한에게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분야 현지지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7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제2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초기화 단계로서, 2·13합의 및 10·3합 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실시를 의미하며, 6자회담 참가국 합의하에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목록 결정 및 신고 그리고 신고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다. 이 시기 남·북·미·중 4국은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 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또는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한 미 간에는 신안보선언을 발표하며, 북·미간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 고, 북·일간에는 일본인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6국 다자간 에는 평화안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는 10·4 공동선언 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 2·3단계 사업 추진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운행 그리고 신경협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단계에 들어서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가동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북한주민의 자유권 문제도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의 인도지원 차 원을 넘어서 개발협력 시범사업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남북한 내부에서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북한은 감시·억압체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본격화 단계로서 핵 폐기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에 따른 핵 폐기 이행과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 기간 남·북·미·중·일·리 6국은 2

(주도국: 남북)+2(보장국: 미·중)+2(협력국: 일·러)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1(한반도평화 기본협정)+3(남북/북·미/한·중 부속협정) 형식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 미간에는 한 미연합지휘체제 를 병립형 지휘협조체제로 변경하고, 북·미간에는 관계를 정상화하 며, 동북아에서는 평화안보협의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젓상회담 정례화와 더불어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군사분야에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경제분야 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대규모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 발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남북한 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남북경 제공동체 형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분야에서는 남북사회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사회문화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 며, 대북지원은 이제 대북개발지원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개발협 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한 각각의 경우 남한은 국 내적으로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기구를 가동하며 평화교육을 확대 하도록 하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한반도 공산화통일조 항을 삭제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4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화 단계로서 북한 핵폐기 이후, 북한의 비핵화 상태의 지속성 확인 및 화학무기·세균무기 및 중·장 거리 미사일 폐기 및 관련 국제규범 가입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군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한·미동맹은 주 한미군의 지위가 동북아지역 안정자로 변경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 되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며, 동북아에서는 평화안보기구가 창설 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연합기구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고, 군사분야에서는 구조 적 군비통제를 실시하여 군축을 확대하며,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남북한 시장의 점진적 통합 및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완성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사회문화공동체기구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남북한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대북지원은 경제공동체 틀 속에서 대규모로 개발협력을 본격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한은 각각 국내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고,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정상국가로의 길을 건도록적극 권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무튼 2008년에도 북핵 불능화와 신고 및 북핵 폐기를 위한 근 본적 노력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해서 풀어가려는 우리의 노력도 계속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통일연구원 평화프로세스 로드맵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그리고 국내 국민화합 및 북한의 변화 양태, 남북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과정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리·분석한 후,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좀 더 보완하여 적실성을 높여가도 록 할 것이다.

I П

V

VI

VIII

X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승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____.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2001.
- 송대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2000년대 초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평양: 평양출판사, 2006.
-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1998.
-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통권 제154호.
- 허문영 외. 『한반도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한반도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정책방향』. 연구총서 99-26. 서울: 통일연구워, 1999.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부, 2003.
- 『통일백서』. 통일부, 2007.
-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국가안전보장 회의, 2004.
- Bellamy, Alex J.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ian, 2002.
- Clark, Howard. *Civil Resistance in Kosovo*. London: Pluto Press, 2000.
- Eade, Deborah & Suzanne Williams. *The Oxfam Handbook of Development and Relief*. Oxfam Publication, 1995.
- Towle, Philip. *Democracy and Peacemaking: Negotiations and Debates 1815~1973.* London: Routledge, 2000.

2. 논문

- Ferencz, Benjamin. "Nuremberg: A Prosecutor's Perspective."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6, 1969.
- Leasffer, Randall. "Introduction."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Nye, Joseph Jr. "Nuclear and U.S. 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1987.

- 손기웅.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평화한국 세미나 발표문, 2007.
 _____. "KPP 진전구도와 CSCE/OSCE의 시사점." 통일연구원
 KPP 가담회 발표문, 2007.
- 이종무. "북한 개발지원 분야와 우선순위 선정."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2005.
- 전경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KPP 제6차 회의 발표문, 2007.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통일연구원 KPP 제5차 회의 발표무, 2007.
- 조한범.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북한 개발지원과 NGO』.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자료집, 2005.

3. 기타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북한 외교부 비망록, 1994.4.30.

한중 워크숍. 베이징, 2006.2.

한중 워크숍. 서울, 2007.5.

<부록 1>

북핵일지

1. 1989년 이전

1959. 11. 9.	북한과 구소련 원자력 협정 체결
1962. 11. 1.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구소련의 지원하 착공
1964. 11. 2.	영변 원자력연구소 설립
1965. 11. 6.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가동 (열출력 2MW), 임계시설 완공
1964. 11. 9.	북한 IAEA 가입
1977. 11. 9.	북한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체결 (IRT-2000)
1978. 11.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실시
1980. 11. 7.	5MWe 실험용 원자로 자체기술로 착공 ('86 완공)
1982. 11.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83. 11.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이후 70여회 실시)
1985. 11. 5.	50MWe 원자로(영변) 착공 ('95 완공목표)
1985. 11.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90 완공)
1985. 11.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 착공('89 가동)
1985. 12. 12.	북한 NPT 가입
1986. 11. 10.	5MWe 원자로 가동
1987. 11. 2.	북한 제2원자로 시험 가동 성공
1987. 6. 5.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한에 전달
1989. 11.	200MEw 원자로 착공(태천)
1989. 11. 9.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 영변핵시설 사진 촬영, 공개

2. 1990~1994년

1990. 3. 6.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0. 11. 16.	주UN 북한대사, IAEA 사찰 수락조건으로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9. 28.	부시 미 대통령, 핵전력 감축 선언
1991. 10. 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991. 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 12. 13.	남북한, '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1. 12. 18.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 12. 31.	제3차 남북판문점회담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1. 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1992. 3. 19.	남북 핵통제공동위(JNCC)발족
1992. 4. 10.	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 발효
1992. 5. 26.	제1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6.5까지)
1993. 1. 26.	한·미 93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발표
1993. 1. 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모든 남북대화 중단' 발표
1993. 2. 25.	IAEA 정기이사회, 대북한 특별시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
1993. 3.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1993. 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1993. 4. 1.	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의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NPT 기탁국(미, 영, 러) 공동성 명 발표-대북한 NPT 탈퇴 선언 철회 및 동 조약과 안전 조치 협정상 의무 이행 촉구
1993. 4. 8.	유엔 안보리, 북한 핵문제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NPT 및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1993. 5. 10~14.	IAEA 사찰단 방북, 안전조치 장비 교체 및 정비 실시
1993. 5. 11.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825호) 채택 - 북한에 NPT 탈 퇴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1993. 6.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제재조치시 '한국전쟁재발' 발언
1993. 6. 11.	6.11 북·미공동성명,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 등 원칙 확인
1993. 6. 12.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NPT 탈퇴유보
1993. 6. 14.	한국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1993. 8. 4.	IAEA 사찰단 방북. 북 영변핵 폐기시설 사찰 거부. 제한 적인 사찰
1993. 9. 13.	미 하원, 대북 무역·금융제재 결의안 채택
1993. 9. 23.	IAEA 이사회, 북핵 문제 총회상정 결의안 체택
1993. 10. 1.	IAEA 제37차 총회,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1993. 11. 11.	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 제의
1993. 12. 29.	북·미,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1994. 1. 7.	북-IAEA 사찰협상 시작
1994. 1. 21.	북한, IAEA 사찰조건 수용불가 선언
1994. 1. 25.	북한-IAEA 협상 결렬
1994. 2. 15.	IAEA, 북한 핵사찰 수용 발표
1994. 2. 25.	북한, 3월 1일 사찰 개시에 동의
1994. 3. 3.	미국, 팀스피리트 중단, 3단계회담 발표
1994. 3. 1~15.	IAEA 사찰단 북한 핵사찰
1994. 3. 19.	8차 남북실무접촉서 북대표 "전쟁땐 서울 불바다" 발언
1994. 3. 21.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합의, 북한 NPT 탈퇴 강행 경고
1994. 3. 31.	유엔안보리, 북한의 추가사찰 수락촉구 의장성명 채택
1994. 5. 17.	IAEA 새 사찰단 북한 도착
1994. 6. 2.	IAEA, "북핵 추후 계측 불가능" 안보리 보고.
1994. 6. 10.	IAEA,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1994. 6. 13.	북한 IAEA 공식탈퇴선언
1994. 6. 15.	미국, 유엔 안보리에 제시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
1994. 6. 16.	미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1단계 - 무기금수와 문화 기술 과학 교육교류금지 2단계 - 국 제 금융거래중단
1994. 6.15~18.	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 남북정상회담 제의 및 수락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10. 21.	제네바 합의문 체결
1994. 11. 1.	북한 핵동결 선언

3. 1995~2000년

1999. 5. 25~5. 28. 1999. 9. 15.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페리,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의회보고
1999. 5. 18~5. 24.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1998. 8. 31.	대포동 1호 시험발사
1998. 8. 10.	Time지,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제기
1997. 1. 24~25.	경수로사업비 확정 및 재원부담 협상
1997. 8. 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착공
1996. 4. 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5. 3. 9. 1995. 5. 19~6. 1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북·미 1천MW 경수로2기 제공합의

4. 2001~2004년

2001. 1.20.	부시 미대통령 취임
2001. 9. 11.	9·11 테러
2001. 9. 25.	제45차 IAEA 총회,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2002. 1. 29.	부시 미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악의 축' 발언
2002. 3. 9.	LA Times 등 미 주요 언론, 1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보도 (핵무기 사용 대상 국가에 북한등 7개국 포함)
2002. 3. 13.	북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반발, 미국과 의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2002. 9. 16.	도널드 럼스펠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
2002. 9. 17.	북·일 정상회담, 북·일 평양선언 발표
2002. 10. 17.	켈리 특사, '북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
2002. 10. 25.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2002. 11. 14.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지원 중단 결정
2002. 11. 21.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개 혹은 2개' 핵무기 외에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서 공개
2002. 11. 30.	IAEA 이사회, 북한 핵개발 포기·사찰 수용 결의안 채택
2002. 12. 10.	스페인, 인도양에서 미국 대신 북한 선적 나포
2002. 12. 12.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핵 동결 해제'선언
2002. 12. 22.	북한 영변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무력화

2002. 12. 25.	북한, 연료봉 재장전
2002. 12. 28.	북한 IAEA 사찰관 추방
2003. 1. 6.	IAEA, 북한 영변 원전시설 봉인 및 감시장치의 원상회 복과 사찰관 복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2003. 1. 7.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03. 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IAEA 안전조치 협정 탈퇴
2003. 2. 12.	IAEA, 북핵문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2003. 3. 20.	미국, 이라크 침공
2003. 4. 23.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
2003. 4. 25.	북한,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발표
2003. 5. 1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추가적 조치'(fither steps)의 검토 발표
2003. 7. 28.	미 하원, 경수 지원 중단 내용 '2004 회계연도 에너지부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
2003. 8. 18.	연례 한·미연합지휘소(CPX) 연습인 '2003년 을지포커 스렌즈(UFL) 실시
2003. 8. 27.	베이징 6자회담 개최
2003. 9. 3.	PSI 참가국, 내년까지 모두 10차례의 WMD 확산 차단을 위한 육해공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합의
2003. 9. 20.	제47차 IAEA 총회, 북한 핵폐기 촉구와 6자회담 중요 성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
2003. 10. 22.	부시 미 대통령, 다자간 대북안전보장 서명 용의 발언
2003. 10. 30.	북한 2차 6자회담 참가 동의
2003. 11. 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건설 중단 공식 결정
2003. 12. 9.	북한, 미국에 1단계 동시행동조치 합의 촉구
2004. 1. 6~10.	미국 학자, 전문가 영변 핵시설 방문
2004. 2. 2.	북한, 2월 25일 6자회담 개최 발표

2004. 2. 25~28.	제 2차 6자회담 개최
2004. 2. 28.	제 2차 6자회담 의장성명서 채택
2004. 4. 7~8.	한·미·일, 북핵정책협의회 발족
2004. 4. 19~21.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개최, 김정일-후진타오 북핵회담 지속합의
2004. 4. 23.	북한 룡천역 대규모 폭발 사고
2004. 4. 28.	미, "북핵 최소8개로 추정" 발표
2004. 4. 29.	북, 미, 한, 중, 러, 일, 5월 12일 북핵실무그룹회의 베이 징 개최 공동 발표
2004. 4. 30.	부시, 대북 직접대화 거부 의사 표명
2004. 5. 12~14.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2004. 5. 22.	북-일 정상회담
2004. 5. 22.	NYT, 북이 리비아에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을 제공했 다고 보도
2004. 5. 25.	미 3차 6자회담 진전 없을 땐 유엔 안보리 상정 검토 경고
2004. 5. 27.	북한, 리비아에 핵물질 판매했다는 NYT보도 사실아니라고 주장
2004. 6. 9.	G-8 정상회의, 북핵문제 우려 및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04. 6. 21~22.	6자회담 2차 실무그룹회의
2004. 6. 23~26.	3차 6자회담 개최, 미국 '북핵 5단계 해법' 제시, 북한 '미, 보상 수용시 핵동결 폐지' 발표, 의장성명 발표
2004. 8. 6.	6자회담 2차 실무그룹회의
2004. 6. 21~22.	한·미연합군사령부, 을지포커스렌즈(UFL) 계획(8.23~ 9.3) 발표
2004. 9. 2.	한국 과기부, 핵물질추출실험 관련 기자브리핑
2004. 9. 9.	양강도 김형직군서 대규모 폭발
2004. 9. 18.	한국 정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2004. 9. 28.	미 북한인권법 상원 통과

2004. 10. 6.	주한미군 2008년까지 3단계 감축 합의 발표
2004. 10. 19.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2004. 10. 22.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 조건제시
2004. 11. 2.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 대통령 재선
2004. 11. 12.	북 조평통, 핵억제력 강화 주장
2004. 11. 13.	노무현 대통령, 대북무력봉쇄 정책 버리고 대화로 북핵 문제 풀어야 한다고 발언
2004. 11. 13.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관련 입장표명
2004. 11. 26.	KEDO, 대북경수로사업 중단 1년 연장

5. 2005년

2005. 1. 19.	곤돌리자 라이스 인준 청문회,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2005. 2. 10.	북 외무성,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고 증대 선언
2005. 3. 2.	북한 외무성 비망록 발표
2005. 3. 20.	Washington Post, 미, 북한 핵물질 수출 정보 왜곡, 전달 보도
2005. 3. 31.	북한 외무성,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주장
2005. 4. 14.	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05. 5. 11.	북한 외무성,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
2005. 5. 16.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북한 6자회담 복귀시 '중요한 제안'의 사 발표
2005. 6. 6.	북한 북·미 뉴욕접촉 통해 6자회담 복귀 시사
2005. 6. 15.	남북공동행사 개최(평양)
2005. 6. 17.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7월 중 6자회담 복귀 시사
2005. 6. 21.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2005. 6. 22.	미, 북한에 식량 5만 톤 지원 결정

2005. 6. 23.	남북, 서울 장관급회담 개최
2005. 6. 26.	통일부, 북에 비료15만t 추가지원 결정
2005. 7. 9.	김계관–힐 베이징 접촉, 7월 마지막 주 6자회담 재개에 합의
2005. 7. 12.	남, "중대제안은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계획" 공개
2005. 7. 26.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
2005. 8. 7.	6자회담 휴회 결정
2005. 9. 9.	미인권특사, 북인권-식량지원 연계 가능성 시사
2005. 9. 13.	2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2005. 9. 13.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2005. 9. 15.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 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2005. 9. 19.	6개국 전체회의 개최,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
2005. 9. 20.	미 정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
2005. 10. 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
2005. 10. 25.	미, 8개 북한 기업 미국내 자산 동결
2005. 11. 9~11.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
2005. 11. 30.	KEDO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 기간 만료
2005. 12. 7.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북한은 범죄정권" 발언 파장
2005. 12. 16.	미 재무부,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 브리핑

6. 2006년

2006. 2. 16.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 대북거래 중단 선언(50여 북한 계좌 폐쇄)					
2006. 3. 8.	북, 위폐해결 비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2006. 5. 8.	미, 북한 선박제재 발동					
2006. 5. 16~18.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					
2006. 6. 1.	KEDO 이사회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선언					
2006. 7. 5.	북한 단·중·장거리 미사일 6발 발사					
2006. 7. 16.	유엔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안 1695호 채택					
2006. 7. 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중.러.일 등 6자 회담 참가 5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2006. 8.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 제사회의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2006. 9. 9.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2006. 10. 9.	북한 지하핵실험 단행					
2006. 10. 15.	유엔 안보리,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 를 담은 결의 1718호 채택					
2006. 10. 23.	북한 화물선 강남1호 홍콩에서 검문받은 뒤 억류					
2006. 10. 24.	중 외교부 대변인, 탕자쉬안-김정일 면담내용 공개 "김정일, 2차 핵실험 계획 없다", "북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2006. 10. 31.	북·미·중 3자회담,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2006. 11. 1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트남 하노이 회동, "9·19공 동성명 이행 실질적·즉각적 조치 북에 요구"					
2006. 11. 28~29.	북·미·중 수석대표 회동, 힐 차관보 북한에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 찰 허용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 4가지를 초기이행조치로 제시					
2006. 11. 30.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김계관 "일방적 핵 포기 있을 수 없다"					

2006. 12. 18~22.	2단계 제5차 6자회담 개최. 의장성명 채택
2006. 12. 19~20.	북-미간 1차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

7. 2007년

2007. 1. 16~18.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베를린 양자회담.
2007. 1. 30~31.	북-미간 2차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
2007. 2. 8~13.	3단계 제5차 6자회담 개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서 채택
2007. 2. 27~3. 2.	평양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2007. 3. 5~6.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개최
2007. 3. 7~8.	하노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2007. 3. 13~14.	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방문 초청 - IAEA사찰단의 입국시기 및 활동 범위 등에 대해 협의
2007. 3. 15~17.	2·13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연쇄 실무회의 개최 - 에너지· 경제협력 실무그룹 회의(15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제 실무그룹 회의(16일),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17일)
2007. 3. 19~22.	제6차 6자회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휴회 결정
2007. 4. 11.	미국,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
2007. 4. 8~11.	빌 리처드슨(미 뉴멕시코 주지사)과 빅터 차(미 국가안보 회의 보좌관), 북한 방문
2007. 5. 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판문점)
2007. 5. 17	경의선 철도시험운행
2007. 5. 22.	한국 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참여
2007. 6. 3.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북핵문제 및 동북아 정세 등 논의
2007. 6. 8~10.	남북 군사실무회담, 서해상 충돌 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 논의
2007. 6. 15.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 자금 송금 완료

2007. 6. 21.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방문
2007. 6. 28.	IAEA 실무단 영변 핵시설 방문
2007. 6. 29~30.	중유제공 남북 실무 협의
2007. 6. 30.	대북쌀차관 40만 톤 제공 시작
2007. 7. 14.	IAEA 북핵 감시검증단 14일 북한 입국
2007. 7. 18~19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 개최
2007. 7. 24~26	제6차 남북 장성급 회담
2007. 8. 16~18.	6자회담 제2차 비핵화실무그룹회의
2007. 9. 1~2.	제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 2007.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 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 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 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 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확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 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 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 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	민주	주의인	민공	화국
대	5	5	령	국	방	위	원	장
노	5	금	현	김		정		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10·3합의, 2007.10.3)

9 ·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 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 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 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하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 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 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 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 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 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기전달된 중유 10만 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3 October 2007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I.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II.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III.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IV.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2007.8.5)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김 만부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1 W

로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하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쌍방은 수뇌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1 NO NO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김 만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2007.2.13)

9 ·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 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 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 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 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 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 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 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 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 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 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 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 1. 한반도 비핵화
- 2. 미·북 관계정상화
- 3. 일·북 관계정상화
-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 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다.
-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중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 립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 W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화영하다.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Final)

13February 2007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8 to 13 Februar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 imed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 5.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Agreed Minuteon Burden Sharing

The United S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2005.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 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 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 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 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 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 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시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	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	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착	ļ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Ⅱ)-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10,000원
	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10,000원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공저	8,000원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8,500원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r	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동북이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	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	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인	연구총서			
II				
2005-01-	01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	02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	03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04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05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06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07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 종 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	08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09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	10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11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	12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	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000F 00 00나님의 토향이 이렇게 되지하는 트이저게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기그시 이	. 고리	10,000,91
	김국신 오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ᄟ줘ᇬ		10,000,01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오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오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오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오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기전략 총괄편	박종철 오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기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오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기전럑(II): 경제전략	박종철 오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오	공저	10,000원
2007-10-01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앤총괄보고서)	김국신 오	공저	6,000원
2007-10-02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오	공저	9,000원
2007-10-03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오	공저	7.500원
2007-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총괄보고서)	김국신 오	공저	10,000원
2007-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번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
활성화 방안	배정호 오	공저	6,500원
2007-11-04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너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오		6,000원
2007-11-05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오		6,500원
2007-11-06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오		8,000원
2007-11-07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오		10,000원
2007-11-08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111-7	0.1	10,000 12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오	공저	7,500원
· 시청사시간세 남국교규들 중심으로 2007-11-09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오		7,500원 8,500원
200/711708인진도 정확포폭 기미인으 설정확 정신	극당기 포	i 등시	0,300건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2006-03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 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 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1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2007-12 2007-13 2007-14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하반기(1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정책연구시리즈	정영태 배정호 여인곤 , 최수영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	년병곤, 곽
진오		
2005-03		,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 .
2006-01	남북한 관광시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기구리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시변형
2006-06 2006-07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보혁 고재홍
2006-08	국인군 최고사당관 취상 연구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고세종 이허근
2006-09	정와들 중만 국가 이미지 제고와 중결과장에서의 활용 정안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이언 는 전미영
2000-09	점광물 왕선의 왕세한국 전문 검은 문식을 상담으로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시승 전성훈
2007-0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700
2001 00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친추흐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시신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 07	아기고 그의 그 이번 한다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지되는	コレコ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전성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	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ŀ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	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I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	е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 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æ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	류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띤또레또(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